

연구보고서 2007-09

#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

(Die öffentliche Fahndung über Internet)

《研究陣》

---

연구위원 :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목 차

I. 총 설	5
1. 연구목적	5
2. 연구의 배경 및 연구범위	8
3. 연구방법	12
II. 인터넷 공개수배제도의 활용현황	14
1. 인터넷 공개수배현황의 비교분석	14
2. 한국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	14
3. 일본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	18
4. 미국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	22
5. 독일 등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	30
6. 소 결	32
III.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	34
1. 개 요	34
2. 국내법상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	35
3. 일본의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	36
4. 독일의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	40
IV.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법적 논점	58
1. 개인의 기본권과 인터넷 공개수배	59
2.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성격	79
3. 무죄추정의 법리와 공개수배의 관계	88
4. 인터넷 공개수배와 피의사실공표죄	92
5.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터넷 공개수배	96
6. 인터넷 공개수배와 수사의 밀행성원칙의 침해	99
7. 인터넷 공개수배의 대상에 따른 차이	101

8. 인터넷 공개수배의 새로운 경향 .....	102
9. 인터넷 공개수배와 국제사범공조·범죄인인도 등 .....	104
10. 소 결 .....	107
<b>V. 결어 :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허용성과 요건 .....</b>	<b>110</b>
1.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필요성 및 효과와 부작용 .....	110
2.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허용성 .....	114
3.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전제조건 .....	116
<b>참고문헌 .....</b>	<b>126</b>

## 그림 목 차

<그림 1> 사이버경찰청의 인터넷 공개수배 .....	15
<그림 2> 사이버경찰청의 종래의 인터넷 공개수배 안내문구 .....	17
<그림 3> 일본경찰청의 인터넷 공개수배 .....	20
<그림 4> 미연방수사국의 인터넷 공개수배 .....	23
<그림 5> 미연방보안국의 인터넷 공개수배 .....	25
<그림 6> 미국의 The America's Most Wanted Inc.가 운영하는 Web Site의 수배화면 .....	27
<그림 7> 독일연방범죄수사국의 인터넷 공개수배 .....	31
<그림 8> Steckbrief(지명수배장)의 예 .....	41
<그림 9> 독일검찰의 지명통보(지명통보입력요구서) .....	43
<그림 10>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 사회구현을 위한 개념도 .....	103

# I. 총 설

## 1. 연구목적

‘인터넷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the Internet changes everything)’<sup>1)</sup> 표현이 약간 과장된 떠벌림으로 여겨지더라도, ‘인터넷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편하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수궁해야할 것이다.<sup>2)</sup>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의 매체는 지금까지 대부분 수사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매체를 통해 항상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에 비해 수사기관이 더 많은 이익을 보아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사용하는 사람과 방법에 따라 기존의 매체들과 다를 바 없이 ‘수사기관의 활동을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인터넷은 변호인에게 그들의 고객을 보다 더 잘 방어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관건은 누가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이다.

특정국가·지역을 넘어서는 범세계적인 IT와 Network의 발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범죄자의 범행무대로 혹은 범죄기법의 다양화도구로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IT와 Network와 관련된 범죄수사와 증거확보에 있어서 수사기관에게 중대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의 매체가 소

1) Gaffney & Schaefer, *Your Side of the Story: Representing High-Profile Defendants Requires a Serious Strategy*, in: *Web-Site Recorder*, Feb. 25, 2004, at. 4.; Yampolsky, *Wanted Posters on Internet: United States v. Carmichael and New Criminal Defense Tools to Level the Playing Field*,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Summer, 2006, p. 279.

2) 수사기관의 비밀정보원의 제보로 마약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인터넷에 web site를 개설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원을 찾는다는 수배문구(Wanted)를 붉은 글씨로 화면의 상하에 표시하고, 이들 수사기관의 정보원 및 수사관들도 자신의 마약거래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의 증인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은 피의자에게 연방수정헌법 제1조, 제5조 및 제6조가 적용되어 정부가 패소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이에 대해서는 Yampolsky, *ibid*, pp. 279).

추기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의미에서 불균형(Imbalance)하였다면,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수사기관과 범죄인의 역학에서의 지렛대는 반대로 기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의 무대와 기법의 변화를 가져온 과학기술의 발달이 절대적으로 형사소추·수사기관에 불리한 요소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범죄해명활동과 증거확보노력에 광범위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 목적달성에 가장 효과적·합법적으로 접근하는가가 관건인 것이다. 그곳이 어느 곳이건 범죄의 무대를 수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업무이기도 하며, 수사처분의 헌법·형사소송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변화한 주변 환경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관점에 따라서는 수사기관도 IT와 Network의 발전을 헌법적·법치국가적 제한 아래에서 가능한 최대로 활용함으로써 범죄인의 무한한 행동의 자유에 대응해야하는 의무를 진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추기관의 종국적인 의무이자 존재이유는 범죄의 수사과 적정한 처벌의 확보를 통한 범죄의 예방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IT와 Network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수사활동의 한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범죄인이 IT와 Network를 범죄의 공간, 수단, 배경으로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도 이를 수사의 공간, 수단, 배경으로 적극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의에 있어서 ‘인터넷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데이터) 수사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와<sup>3)</sup> 실행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내사단계에서부터 형 집행 종료까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수사 활동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적인 관점에서부터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특히 최근 영미자료로 예를 들어 Casey,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Forensic Science, Computer and the Internet, 2. Ed., Academic Press, 2004; 정기간행물로는 예를 들어 Digital Investigation-the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Forensics&Incident Response, Elsevier; 독일문헌으로는 Seitz, Strafverfolgungsmaßnahmen im Internet, Carl Heymanns, 2004.

이러한 접근을 통해 획득된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사방법 중에서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유형의 수사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구현하는 것이 멀지 않은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의 수사기관에게 향해진 요구라고도 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인터넷(휴대폰, DMB 등 포함) 등의 정보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피의자, 변사자, 피해자·참고인·증인, 증거물, 도품·분실물 등의 수배방법의 적법성·가능성 및 그 요건 등에 대해 논구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지명수배·통보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논의는 특히 실무가 중심으로 아주 깊이 있게 논의되어왔다.<sup>5)</sup> 최근에는 마스크를 통한 지명수배제도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해서도 견해표명이 보이고 있다.<sup>6)</sup>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를 둘러싼 특수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룬 국내의 연구물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나아가 지명수배는 전형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배만을 전제로 하여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물론 참고인증지와 관련하여 참고인·증인에 대한 수배도 가능하고, 장물수배도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머물러 있던 피해자, 실종자, 변사자, 분실물, 미제사건의 목격자의 발견, 증거물 등에 대한 수배에 인터넷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도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인터넷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국가간의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범죄자가 인터넷을 누비며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일상이라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지명수배자가 우

4)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의 도착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인터넷을 통해 해당 업체의 web-site에 접속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주변에 흔한 모습이 되었다. 일본은 이미 경찰청의 수배사이트를 휴대폰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두고 있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기만 한다면 (어쩌면 원하지 않아도) 즉시 내 앞에 서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수배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닥칠 것이다.

5) 대표적으로 비교법적인 연구까지 아울러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는 글로는 조대환,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3, 72쪽 이하; 조대환,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4, 48쪽 이하 등 참조.

6) 특히 하태훈, 마스크를 이용한 피의자(내지 용의자) 공개수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암법학, 11호, 2000.8., 165쪽 이하. 특히 인터넷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없이 마스크일반(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중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이 가지는 마스크(대중매체)이라는 특징에서 고찰되어야 할 문제들은 거의 빠짐없이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중언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한 접근은 생략한다.

리 국민의 제보에 의해 체포될 수 있고, 그 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라면 어떠한 체포절차가 필요할 것인가도 인터넷이 던지는 하나의 문제인 것이다. 국가간의 사법공조 내지는 범죄인 인도 등의 가능성과 절차의 문제도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련 국내의 논의가 부재한 부분을 중심으로 특히 대표적인 몇몇 국가와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국내의 적용가능성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sup>7)</sup>

## 2. 연구의 배경 및 연구범위

주지하다시피 이미 미국에서는 1994년 이후 미연방수사국(FBI)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제도)를 활용하여 왔고, 1994년 중요지명피의자(Most Wanted)라는 사이트(Site)를 미연방수사국의 홈페이지에 개설한 이후 현재에는 구체적으로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피의자뿐만 아니라 실종자 등에 대한 인터넷 공개수배를 시행하고 있다.<sup>8)</sup> 물론 이러한 FBI의 공개수배유형 중 ‘Ten Most Wanted Fugitives Program’은 이미 1950년 3월 14일에 전국단위의 방송매체를 통해 시작된 후 현재까지 다양한 TV나 Radio 등의 매체를 통해 계속됨으로써<sup>9)</sup> 인터넷과 함께 공개수배의 가능한 모든 수단이

7) 인터넷을 통한 수배는 물론 국내에서는 TV나 라디오, 신문광고라거나 수배전단 등에 의한 공개수배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도, 몇 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깊이 있게 이루어진바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기초연구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이라 여겨진다. 나아가 특히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부의 국가계획에 따르면 유비쿼터스 대한민국은 이미 문지방까지 다가와 있다는 점이다. 모든 매체를 통합한 기능의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 공개수배의 모습은 어떤 형태·효과를 가질 것인가는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8) 미국인이 아닌 우사마 빈 라덴(Usama Bin Laden)은 현재 미연방수사국 수배화면에 최고의 현상금으로 게시되어있고, 어느 나라에서건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제보할 수 있다. 인터넷수배의 국제성 내지 국가와 국경을 초월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의 활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4년 부터로 소개되고 있다(Seitz, Strafverfolgungsmaßnahmen im Internet, 2004, S. 379).

9) 방송매체를 통한 공개적 수배에 대한 2002년까지의 현황에 대해서는 표창원, 경찰 인터넷 방송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8집, 2002, 특히 605쪽 이하 참조.



범죄수사와 증거확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에게도 이미 익히 알려진 미국 Fox 사의 AMW(America's Most Wanted) 프로그램은 매주 방영되는 TV 수배프로그램으로 이미 그 방송의 효율성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sup>10)</sup>

독일의 경우에도 1996년 이래, 독일연방수사국(Bundeskriminalamt), 함부르크주범죄수사국(Landeskriminalamt Hamburg), 바이에른 경찰청(Bayerische Polizei) 등은 인터넷을 이용해 피의자나 실종자 지명수배를 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수배도 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미국처럼 이미 컬러사진이나 기타 영상의 제공을 넘어서 약취·유인이나 테러범 등과 관련된 음성자료(聲紋)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 니더작센주 경찰청; Niedersächsische Polizei). 방송매체를 통한 공개 수배도 이미 1967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매월 1회 방송되고 있는 ZDF사의 'Aktenzeichen XY ... ungelöst' 프로그램은 첫 방송 6년 후 연방과 주에 의해 일정한 법적인 근거를 부여받음으로써 정당한 수배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sup>11)</sup>

이러한 경향은 일본도 예외가 아니며, 현재 일본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sup>12)</sup> 중요지명수배피의자들에 대한 음성자료 및 비디오자료 등도 함께 게시하여 각 현의 경찰청 홈페이지와 링크하여 수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경경시청은<sup>13)</sup> 지명수배뿐만 아니라 중요사건의 주요내용을 게시하고 목격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수배제도를 활용하는 등 미국과 독일의 수배현황과 같은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공개된 인터넷을 통한 수배는 특정 수사기관의 홈페이지에 국한하여 이

10)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 중 특히 Miles, Estimating the Effect of America's Most Wanted: A Duration Analysis of Wanted Fugitives, p. 281, 282, 특히 287페이지의 실험통계자료 분석을 참고할 것(AMW 방송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FBI의 Ten Most Wanted 나 Most Wanted의 대상이 되는 수배자를 방영하고 있다. 동부시간으로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의 시청자는 1991년 9월 경의 조사에 따를 때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11) <http://www.zdf.de/ZDFde/inhalt/3/0,1872,2000931,00.html>. (2006.10.5. 방문).

12) <http://www.npa.go.jp/wanted/index.htm>. 2006.8.1. 방문.

13) <http://www.keishicho.metro.tokyo.jp/jiken/submenu.htm> 2006.7.15. 방문.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03년 이후 스페인(통신업체인 Telefonica의 자매회사인 Terra Lycos가 무료로 수행해주었음)에서처럼, 일반인의 접근이 흔한 기타의 Website에 Banner형태로 제공된 수배정보를 이용하여 (마피아 보스로 추정되는) 피의자를 체포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이미 휴대폰을 통하여 경찰청의 지명피의자수배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길을 가다가도 수배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와 같은 현상은 결국 무선컴퓨터, 휴대폰, DMB폰, PDA 등 거의 모든 Network에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의 모토인 ‘도처에서’ 그리고 ‘언제나’ 수배자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국내의 상황은 오히려 시대의 흐름과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방송3사가 일정기간 동안 범죄자를 공개 수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시기가 있었으나<sup>15)</sup> 현재에는 모두 폐지되고, 사이버경찰청에서 ‘공개수배자조회/제보’ 사이트만이 운영되는 실정이다.<sup>16)</sup> 그 내용은 경찰서와 관공서의 벽면게시판을 채우고 있는 수배전단과 동일하다.

14) 이외에도 스위스[<http://www.swisspolice.ch/d/index.htm>(독일어); 피의자, 실종자, 범죄제보, 증거물 등에 대한 수배], 벨기에 등 유럽의 다양한 국가에서 인터넷 수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15) 이에 대해서는 하태훈, 매스컴을 통한 피의자(내지 용의자) 공개수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암법학, 11호, 165쪽 이하. 특히 KBS의 ‘공개수배 사건 25시’는 TV프로그램을 통해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를 공개, 피의자를 수배하는 경우 방송사는 피의사실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는데,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묘사, 공개수배하면서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범행수법 등을 과장하여 방영한 책임으로 항소심에서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www.lawangel.net, 2006.10.5.방문). 독일의 경우에도 1969년에 ZDF의 Aktenzeichen XY... ungelöst 방송에 대해 개인의 인격권과 범죄의 해명과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형량할 때, 방송을 통한 공개수배가 적법할 수 있다는 판례(OLG Frankfurt, NJW 1971, S. 47f.)와 검찰직원이 공개수배에서 지켜져야 할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과 지역방송을 통한 공개수배에 대해 위자료지급을 명한 판결이 있다(OLG Hamm, NSTz 1993, 139f.).

16) <http://www.police.go.kr/openpolice/opencriminal.do>(2006.10.10.방문). ‘공개수배 사건 25시’, ‘경찰청 사람들’, ‘다큐 사건파일’등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현재 상영되고 있지 않지만, TV 뉴스를 통해서 CC-TV에 찍힌 용의자·피의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방송하고 현상수배를 하는 경우는 지금도 흔히 볼 수 있고, 일반인의 제보 등을 통해서 최근에도 은행총기강도와 성폭행범이 체포되기도 하였다. 한편 인터넷의 포털사이트 등에는 피해자 등의 개인이 용의자의 동영상 등과 사건개요 등을 올려 놓고 ‘공개수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인터넷을 통한 수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외국의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인터넷 운영의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하나의 목적이다.

물론 기존의 수배전단계시·진열에 비추어 라디오·TV 등의 공중파를 통한 수배와 인터넷·정보망을 이용한 공개적인 수배를 통해 기대되는 수사의 효율성 이면에는 일반국민·피의자의 인권침해가능성이라는 중요한 헌법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있다. 특히 사생활의 비밀침해로 접근하곤 하는 공개적인 수배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정보적 자기결정권, 무죄추정의 권리, 익명권, 재사회화권, 명예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등의 침해가 대표적인 기본권침해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독일과 같이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의 깊은 관련 논의가 부재하며, 대법원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형사판결은 볼 수 없지만, 민사판결에서의 손해배상여부와 범위문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적지 않게 다루어 졌고, 대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문사나 방송사에 대한) 피의사실공표가 공익에 비추어 정당화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원칙적이거나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 것이며, 강제수사, 영장주의 등과 관련된 기존의 입장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행법상 이미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구속 등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은 무죄추정의 법리가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검찰수사관·사법경찰관 등은 소위 비례성의 원칙 하에서 수사방법형성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기본권은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없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공개수배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요구되는 요건과 실질적으로 채워져야 할 요건은 무엇이며, (인터넷을 통한 공개)지명수배를 위해서는 지명수배영장제도를 법적으로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용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개수배의 국내·외적인 현황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의 법상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 처분의 허용성 여부와 입법론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비교법적 검토는 필수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개된 수배를 통해 개인의 범죄관련정보가 공개된 이후,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종국적으로 무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떠한 형태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물론 수배정보자체의 위조나 변조, 권한없는 악의의 사용 등에 대한 대책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며, 피의자관련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된다는 점 및 인터넷 공개수배가 가지는 매체의 특성상 종래의 수배전단의 폐기나, 지명수배 내지 지명통보자료의 폐지와 다른 특성도 깊이 있게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헌법, 형사소송법·규칙, 기타 관련법령과 검찰·경찰의 지침·예규 등에 근거하여서도 인터넷을 통한 지명수배는 이미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진 적법한 수사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해보고, 허용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통해서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범죄·수사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의 입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1) 현황분석

아래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을 통한 수배의 현황은 World Wide Web을 통해 접근 가능한 비교대상 국가의 경찰청이나 수사국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리한다. 비교·분석의 주요 대상은 미국, 독일(스위스), 일본 및 한국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현황이다. 이러한 분석은 아래에서 살펴볼 각국의 법상태와 함께 고찰될 때 현재 우리의 법상태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허용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아가 이러한 분석은 인터넷을 통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공개수배의 효과적인 운용방법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법적 근거분석

인터넷 공개수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다. 무엇보다 국내의 형사소송절차 및 형사소송법의 구조와 많은 점에서 유사하며, 법제도적·실무적으로 중요한 착안점을 제공하고 있는 독일의 헌법·형사소송법적 논의에서 인터넷 공개수배에 대한 국내의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주요 수단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경찰청의 통달(通達; 예규) 형식으로 피의자의 공개수배, 특히 인터넷수배도 포함한 공개수배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함께 고찰해 보면서, 국내에서의 운용에 어떠한 참고가 될 수 있을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 3) 인터넷 공개수배의 허용성 및 공개수배요건의 구체화

위와 같은 각국의 법제현황과 인터넷수배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체계하에서 인터넷 공개수배의 가능성, 장래에 필요한 법적 규정, 인터넷 공개수배를 적극적으로 행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인터넷수배의 형식과 내용면에서의 개선점 등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일부는 현행법의 해석론의 의미일 수도 있으며, 일부는 입법론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가이다. 달리 말해 법관의 지명수배영장이 발부되는가가 관건이 아니라, 중국적으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 해결의 기준이며,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강제수사로 분류되는지, 임의수사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II. 인터넷 공개수배제도의 활용 현황

### 1. 인터넷 공개수배현황의 비교분석

아래에서는 현재(2006.6.1.-2006.10.28.) 국내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현황 및 인터넷을 통해 피의자(및 도주한 수형자) 및 참고인(증인) 뿐만 아니라 피해(실종)자, 물건(장물·도품, 증거·압수대상물 등)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배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일본, 미국, 독일(및 스위스) 등의 온라인 공개수배현황을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sup>17)</sup>

현황분석에서는 우선적으로 각국의 인터넷 수배의 내용, 중앙수사기관과 지방수사기관 간의 인터넷 공개수배의 유형과 내용, 상호연관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한국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

#### 1) 사이버경찰청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

최근까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범죄신고/제보’의 하위사이트로 ‘공개수배자 제보’라는 사이트를 두고 중요지명수배자 20명에 대해 최고 500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개적인 현상수배를 실시하였으나,<sup>18)</sup> 경찰청 홈페이지의 개선작업 이후로 현재는 ‘열린 경찰’의 하부메뉴로 ‘공개수배자 조회/제보’란을 두고 총 13명의 공개

17) 특히 일본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을 검토하는 것은 나중에 살펴 보겠지만, 일본의 법체계가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며, 미국의 공개수배현황을 검토하는 것은 인터넷 공개수배의 가장 앞서 있는 국가라는 의미에서이며, 독일을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재 공개수배가 법률에 명시된 국가라는 이유에서다.

18) 공개수배자제보외에 각종의 범죄 등에 대한 신고(제보)화면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배대상자를 게시하면서 보다 내용이 (다양성면에서) 축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19)</sup>

<그림 1> 사이버경찰청의 인터넷 공개수배

(수배목록전체리스트, ‘공개수배자 조회/제보’ 하위메뉴)

▶ 수배목록 전체리스트

▶ 목록외 수배자 제보



이름: 신oo(47)  
기간:2006/7~2006/12  
관서: 경찰청  
죄명: 살인



이름: 우oo(41)  
기간:2006/7~2006/12  
관서: 경찰청  
죄명: 살인



이름: 김oo(43)  
기간:2006/7~2006/12  
관서: 경찰청  
죄명: 살인미수



이름: 배oo(56)  
기간:2006/7~2006/12  
관서: 경찰청  
죄명: 살인미수



이름: 임oo(39)  
기간:2006/7~2006/12  
관서: 경찰청  
죄명: 사기



이름: 우oo(57)  
기간:2006/7~2006/12  
관서: 경찰청  
죄명: 사기



이름: 한oo(38)  
기간:2006/7~2006/12  
관서: 경찰청  
죄명: 특경법(사기)



이름: 양oo(49)  
기간:2006/7~2006/12  
관서: 경찰청  
죄명: 특경법(사기)

19) 현재 국내에는 법률·규칙은 물론 예규나 지침에서도 인터넷 공개수배·지명수배 등은 전혀 근거 없는 수사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 단지 ‘중요지명피의자종합수배’의 컬러사진전단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옮겨온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법률은 물론 훈령이나 예규에서도 이러한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때 공개수배프로그램이 일정기간 방영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TV의 뉴스프로그램에서 혹은 신문이나 잡지에서의 용의자·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이 등장하는 (현상)공개수배는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개수배자별 세부수배정보)



Q 확대

▶ 수배번호 /	1
▶ 죄명 /	살인
▶ 성명 /	신명호(47)
▶ 본적 /	강원 춘천 소양로2가
▶ 주소 /	부산 해운대 중동
▶ 특징 /	신장 167cm, 체격 통통한편, 서울.경상도 말씨
▶ 개요 /	
▶ 신고처 /	112
▶ 유효기간 /	2006년7월 ~ 2006년 12월

(출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공개수배자 조회/제보)

<그림 1>은 현재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경찰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공개수배자의 정보이다. 주요내용은 ① 수배번호, ② 죄명, ③ 성명, ④ 본적, ⑤ 주소, ⑥ 특징(주로 신장, 체격과 언어), ⑦ 개요(수배대상자 전체가 공란임), ⑧ 신고처(범죄신고대표전화 112로 통일되어있음), ⑨ 유효기간(6개월)안내로 이루어져 있으며, ⑩ 피의자의 최근(컬러·흑백)사진이 제공되고 있다. 개요란을 두고 있지만 죄명과 다른 내용의 사건개요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개수배의 대상은 웹(Web)상의 안내로는 ‘강력범죄 및 주요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자’라고 하며, 2006.6.28일 현재 공개수배중인 피의자의 죄명은 살인, 살인미수,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강도, 강간치상, 마약류관리법위반, 성폭력특별법, 특경법(사기, 횡령, 배임), 특가법(절도), 특수절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이었다.<sup>20)</sup>

전국의 각 지방청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수배자제보’란을 두고 사이버경찰청의 해당 사이트로 연결시키고 있다.<sup>21)</sup> 달리 말해 지방청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공개수배자정보는

20) <http://www.police.go.kr/index.jsp?page=12> (2006.6.27.방문).

21) 예를 들어 전남해남경찰서홈페이지(<http://hn.jnpolice.go.kr/> 2006.6.27.방문)에서는 빠른민원안내, 신고업무의 하위메뉴로 공개수배자제보란을 두고 사이버경찰청의 해당사이트를 링크해 두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홈페이지([http://www.dgpolice.go.kr/sub02/03\\_01.php](http://www.dgpolice.go.kr/sub02/03_01.php), 2006.6.27.



없는 상태이다. 인터넷수배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게시하고 있는 안내문구 및 수배화면의 내용은 종전에는 현재보다는 다음과 같이(현상금의 한도, 신고처의 다원화)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림 2> 사이버경찰청의 종래의 인터넷 공개수배 안내문구**

“경찰청에서는 범행 후 도피중인 강력, 주요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공개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신 분이나 알고 계신 분은 제보하여 주십시오. 수배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시는 분께는 현상금을 드립니다. 또한 범인을 신고한 목격자에 대하여는 신분과 비밀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수배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신 분에게는 현상금을 드립니다.  
 대상 : 중요 지명 피의자 20명  
 현상금 :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  
 공개수배 및 현상금유효기간 : 2006년 7월-2006년12월  
 신고처 : 국번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공개수배자 조회/제보)

제보방식에 있어서도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서 제보양식화면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제보절차) 실명인증절차 -> 제보양식화면이동].

예를 들어 대구지방경찰청은<sup>22)</sup>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신고/제보’의 하위메뉴로 ‘공개수배자제보’메뉴를 두고, 위에서 예시한 경찰청의 ‘공개수배자 조회/제보’ 사이트를 링크되도록 해두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의 경우도 역시 홈페이지에 ‘조회서비스’란의 하위메뉴로 ‘공개수배’를 두고 경찰청의 관련사이트로 연결시켜 두고 있다.<sup>23)</sup> 달리 말해 현재 국내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단지 경찰청의 사이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외의 단체·일반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현상)공개수배가 이루어지는 경우로는 TV의 뉴스 진행 중에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의 화면 등을 방영하면서 현상수배 등을 하는 경우, 신문 등에 유사한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를 들

방문)도 사이버경찰청과 해당 사이트를 링크해두고 있다.

22) <http://www.dgpolice.go.kr/index.php>

23) [http://jjs.jbpolice.go.kr/sub\\_06/e.htm\(2006.10.27.방문\)](http://jjs.jbpolice.go.kr/sub_06/e.htm(2006.10.27.방문)).

수 있고, 그리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의 포털 사이트 혹은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주로 피해자인 개인이 범인을 찾고자 공개적으로 게시문을 올리기도 한다.<sup>24)</sup>

## 2) 인터넷 공개수배의 특징

현재 국내에서는 경찰청이 유일하게 인터넷 공개수배를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가 관할하고 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의 ‘공개수배자 조회/제보’란의 특징은 6개월의 단위를 정하여 수배대상이 된 자의 성명과 죄명, 주소와 본적, 신체적 특징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규나 훈령의 형태로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분명히 언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공격적인 인터넷 공개수배가 행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지명수배·통보가 비록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공개·공유되는 자료이지만, 일반국민들은 접근불가능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사방법이 이미 강제처분법정주의의 위반이며, 영장주의의 일탈이라는 주장이 실무내에서도 주류를 이루는 비판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현황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일본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지명·공개수배의 명문규정을 갖고 있지 않지만, 警察法 제12조에 근거하여 국가공안위원회가 제정한 犯罪搜查規範 제31조와<sup>25)</sup> 犯罪搜查共助規則 제7조 이하에 근거(양 규칙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하여, 피의자공개수사에 관한 예규형태로 인터넷 공개수배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현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일본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

24) Daum 신지식 Q&A (<http://k.daum.net/qna/view.html?boardid=QEA001&qid=2eTfO&q=B0%F8%B0%B3%C%F6%9%E8>, 2006.10.27방문)

25) 長沼範良/田中 開/寺崎 嘉博(著), 刑事訴訟法, 第2版, 有斐閣ARMA, 2005, 61頁.

수배는 1998년에 기존에 경찰청예규(通達)형태로 운영되는 ‘지명수배취급에 관한 예규’가 폐지되고 ‘피의자공개수사에 관한 통달(예규)’이 시행되면서, (비록 예규에서지만)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sup>26)</sup>

### 1) 일본경찰청과 후쿠오카현(福岡県)경찰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

일본 경찰청에서는 ‘지명수배’ 사이트를 마련하고, 현재 ‘오무진리교관련사건피의자수배란’과 ‘중요지명수배피의자란’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지명수배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진과 이름, 체격(신장), 죄명을 간략하게 게시하고, 수배관할(요청)경찰서의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에 링크시켜 운영하고 있다. 수배관할경찰서의 수배화면에서는 해당 피의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일본경찰청의 인터넷 공개수배화면은 위와 같이 ① 컬러사진, ② 성명(가타가나와 히라가나), ③ 연령, ④ 신장(키), ⑤ 피의범죄명(죄명), ⑥ 수배의뢰수사관청의 기재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2006.10.27.) 총 24명의 피의자가 공개수배되고 있다. 또한 일본 경찰청은 개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경찰청지명수배화면을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이 대면한 자가 지명수배피의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이 원한다면 위와 같은 수배전단을 출력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6) 최근(2003년 11월)에 미성년자인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과연 적절한 처분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피의자공개수사에 관한 통달’에서는 공개수사는 원칙적으로 성년의 용의자·피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소년법 제61조의 기록들의 게재금지조항이 있음), 이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공개수사가 이루어짐으로서 처분의 적정성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이에 대해서는 [http://www.people.ne.jp/2003/12/11/jp20031211\\_34882.html](http://www.people.ne.jp/2003/12/11/jp20031211_34882.html)(2006. 10. 30.방문).

<그림 3> 일본경찰청의 인터넷 공개수배

(중요지명수배피의자 인터넷 공개수배화면)

**WANTED**

~警察廳指定重要指名手配被疑者~

☆☆ あなたの近くにはいませんか ☆☆

犯罪捜査にご協力を。どんな小さな情報でもお寄せ下さい。

(被疑者の年齢は、平成17年11月1日現在)



やまかわ けんいち  
山 川 賢 一(60歳)  
身長166cm位  
殺人(教唆)  
(警視廳手配)  
[福岡縣ホームページへ]



あおやま ゆきお  
青 山 幸 男(57歳)  
身長173cm位  
覚せい剤取締法違反  
(福岡縣警察手配)  
[警視廳ホームページへ]



ほかぞの えつお  
外 園 悦 夫(57歳)  
身長182cm位  
凶器準備集合等  
福岡縣警察手配  
[福岡縣ホームページへ]



はまさき かつじ  
濱 崎 勝 次(57歳)  
身長166cm位  
殺人  
(千葉縣警察手配)  
[千葉縣ホームページへ]



おおさか まさあき  
大 坂 正 明(55歳)  
身長178cm位  
殺人、放火等  
(警視廳手配)  
[警視廳ホームページへ]



またよし たけお  
又 吉 建 男 (55歳)  
身長172cm位  
殺人、殺人未遂、銃刀法違反  
(沖縄縣警察手配)  
[沖縄縣ホームページへ]

[\[警察廳ホームページへ\]](#)     [\[次のページへ\]](#)

(출처: 일본경찰청 홈페이지 지명수배사이트)

한편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청지정 중요지명수배피의자의 수배정보 말미에는 당해 피의자의 수배를 의뢰한 해당수사관청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예를 들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야마가와 겐이치(山川賢一)는 후쿠오카현((福岡縣)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있다. 동 현의 홈페이지에는 위 피의자를 비롯한 현 자체의 수배피의자들이 다수 게시되어있고, 이외에도 살인, 강도, 절도, 폭력단, 약물, 총기, 신원불명사자, 국제조직범죄관계 및 지명수배관계와 기타 현으로 링크할 수 있는 하위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에 게시된 수배사건의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미제사건의 목격자를 수배하는 경우나, 실종 내지 피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시문에는 아주 상세한 사건관련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한편 제보양식에는 우리와 달리 특별히 실명인정절차가 없으며, 결국 가명의 신고도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2) 동경경시청의 인터넷 공개수배

동경경시청은 사건파일(事件ファイル)이라는 홈페이지의 메뉴에서 ‘지명수배(경찰청지정)’, ‘특별수사본부사건’, ‘오우무진리교특별지명수배피의자’, ‘뺑소니사건(ひき逃げ事件)’, ‘중요사건’ 및 ‘일본인납치용의사건’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 관할 해당경찰관서를 링크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개수배의 대상과 공개되는 정보의 양은 국내의 현황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의자 수배를 위해 상세한 사건지도나, 동영상의 자료화면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혐의자의 유류품까지 게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인터넷 공개수배의 특징

이상과 같이 일본경찰청과 경시청 및 지역의 경찰은 중요지명수배피의자를 전국에 걸쳐 공통으로 수배하는 것과 함께, 각 지역 경찰 고유의 수배대상자들에 대한 공개수배를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요지명피의자 수배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본부의 수배나, 장물, 피해자, 실종자, 사건의 목격자 등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대상도 다양하다. 달리 말해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공개수배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배대상자 내지 수배사건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에 관련하여 예를 들면 ‘피의자의 공개수사에 관한 예규’ 제2조 제3항에서는 ‘피의자의 소행, 경력, 정신적 장애, 가족관계, 참고인 등’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sup>27)</sup>

#### 4. 미국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

미국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다양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미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연방보안국(U.S. Marshals Service; 법원경호국이라고 번역하기도 함), U.S. Postal Inspection,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the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그리고 Philadelphia High Intensity Drug Traffic Area (HIDTA) Fugitiv Tast Force 등이 웹상의 수배제도가 가장 잘 짜여진 경우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FBI의 ‘Most Wanted Fugitives Program’이 시행된 지 60년이 넘어간다는 것과 U.S. Marshals Service가 해마다 12,000명 이상의 수배자를 체포한다는 점에서<sup>28)</sup> 아래에서는 이 두 기관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을 간략하게 보기로 한다.<sup>29)</sup> 물론 미국은 ‘수배천국’이라할 정도로 공·사적인 단체나 개인을 불문하고 많은 Wanted-Site를 운영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을 링크시킨 소위 ‘범세계적인 공개수배사이트’가<sup>30)</sup> 운영되기도 한다. 우선 미연방수사국(FBI)의 인터넷 공개수배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7) [별첨 2] 참조.

28) Miles, Estimating the Effect of America’s Most Wanted: A Duration Analysis of Wanted Fugitiv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XLVIII, April 2005, pp. 281, 283. 미연방보안국의 현황에 대해서는 특히 법무부의 FY 2004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p. II-21; FY 2005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p. II-22. 참조.

29) USMS는 외국에서 요청된 수배자를 체포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법집행컴퓨터시스템(the central law enforcement computer system), 즉 독자적인 영장정보망(the Warrant Information Network; WIN)을 구축하고 있고,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he DEA,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Department of State와 이외의 다양한 주와 지역이 Task Force팀과 정보교환과 공조를 행하고 있다.

30) [www.mostwanted.org](http://www.mostwanted.org).

### 1) 미연방수사국의 인터넷 수배현황

미연방수사국의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수배목록은 10 Most Wanted를 제외하고도 10개의 하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물에 대한 수배도 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웹상에 올려진 사진을 쉽게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PDF 파일 등을 제공하고, 그 전단의 복사나 배포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어떠한 변경이나 조작을 가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에 따라 기소, 구속되어 유죄평결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sup>31)</sup>

<그림 4> 미연방수사국의 인터넷 공개수배

(Wanted By the FBI의 하부메뉴)

## Wanted by the FBI



Law enforcement officials are seeking information which will lead to the identification of this unknown suspect. On September 28, 2006, a federal grand jury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Florida, indicted this individual and charged him with knowingly distributing or aiding in the distribution of visual depictions, via interstate commerce, of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Images of this person abusing a young girl were found in a video on the Internet in May of 2005.









The individual is described as a White male, approximately 180 to 200 pounds, with brown hair. He has a dark circular mark on his right forearm.

CONTACT: If you have any information concerning this case, please contact your local FBI office.

LINK: [Unknown Suspect's Seeking Information Poster](#)

- [Ten Most Wanted](#)
- [Most Wanted Terrorists](#)
- [Seeking Information - War on Terrorism](#)
- [Crime Alerts](#)
- [Featured Fugitives](#)
- [Kidnappings and Missing Persons](#)
- [Parental Kidnappings](#)
- [Unknown Bank Robbers](#)
- [Seeking Information](#)
- [Recently Televised Sexual Predators](#)
- [Violent Criminal Apprehension Program \(VICAP\)](#)

31) Notice: The official FBI Ten Most Wanted Fugitives list is maintained on the FBI World Wide Web Site. This information may be copied and distributed, however, any unauthorized alteration of any portion of the FBI's Ten Most Wanted Fugitives posters is a violation of federal law (18 U.S.C., Section 709).<sup>1)</sup> Persons who make or reproduce these alterations are subject to prosecution and, if convicted, shall be fined or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oth.

	<b>TOP TEN FUGITIVE</b> <a href="#">James J. Bulger</a>		<b>MOST WANTED TERRORIST</b> <a href="#">Usama Bin Laden</a>
	<b>CRIME ALERT</b> <a href="#">John Raymond Woodring</a>		<b>FEATURED FUGITIVE</b> <a href="#">Craig John Oliver</a>
	<b>KIDNAP/MISSING PERSON</b> <a href="#">Stephanie Elizabeth Condon</a>		<b>PARENTAL KIDNAPPING</b> <a href="#">Victim - Edwin Sanchez-Gonzalez</a>
	<b>UNKNOWN BANK ROBBER</b> <a href="#">Bank Robbery</a>		<b>SEEKING INFORMATION</b> <a href="#">Thomas Crane Wales</a>

[Accessibility](#) | [eRulemaking](#) | [FirstGov](#)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Legal Notices](#) | [Links](#) | [Privacy Policy](#) | [White House](#)

FBI.gov is an official site of the U.S. Federal Government. [U.S. Department of Justice](#).

(출처 : 미연방수사국 홈페이지 Wanted by FBI 사이트)

수배자의 대상에 따라 국제적인 수배를 이미 예정하고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수배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폭넓은 수배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일본과 동일하게 수배자 관련정보로 동영상도 제공되고 있으며, PDF파일로 전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치자에 대한 수배에서도 아주 상세한 사건개요가 게시되어 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10개의 세부항목마다 다양한 하부 항목을 마련하여 폭넓은 범죄수배를 행하고 있다.<sup>32)</sup> 즉 주요 항목의 각각의 하부메뉴를 따라가 보면 사실상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수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내용의 공개수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수배대상(자)에 대해서는 상세한 특기사항(Remark) 기술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32) 예를 들어 Featured Fugitives의 하위메뉴는 ‘아동상대범죄’, ‘사이버범죄’, ‘폭력범죄(살인, 기타 범죄)’, ‘기업범죄’, ‘테러범죄’, ‘화이트칼러’ 범죄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미연방보안국[USMS(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등의 인터넷 수배현황

그 밖에 미국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미연방보안국(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의 1983년 이래로 운영된 “Apprehending Fugitives”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U.S. Marshals Service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Apprehending Fugitives의 하위메뉴로 ‘15 Most Wanted’, ‘Fugitiv Task Forces(102개의 팀)’, 1985년에 15 Most Wanted를 보충하는 기능으로 시작된 ‘Major Cases’ 및 기타 ‘international or local Investigation’ 등의 하위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주 단위의 수배 예로 메사추세츠주경찰의 홈페이지에서도 Most Wanted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히 관련 사이트로 America’s Most Wanted,<sup>33)</sup> FBI’s 10 Most Wanted Fugitives, Department of Corrections Most Wanted, Massachusetts Most Wanted,<sup>34)</sup> DEA Fugitives/Boston Field Division,<sup>35)</sup> U.S. Marshal’s Top 15 Most Wanted 등을 연결시켜두고 있다.

### <그림 5> 미연방보안국의 인터넷 공개수배

Wanted Poster에는 Web Version과 PDF Version으로 수배전단의 출력 등이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News Release 아주 상세한 내용의 피의사실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이 적시되어있다.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의 수배화면 예)



33) <http://www.amw.com/>.

34) <http://www.massmostwanted.org/index.cfm?ac=cases>.

35) <http://www.usdoj.gov/dea/fugitives/boston/bos-list.htm>.

U.S. Department of Justice

#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 FOR IMMEDIATE RELEASE

April 18, 2000

## CONTACT:

USMS Office of Public Affairs (202) 307-9065

### Robo-Cop Makes Marshals Service 15 Most Wanted List



Raymond Abbott-Baerga, who escaped from a maximum security detention facility in Puerto Rico while awaiting sentencing on federal firearms violations, was added today to the U.S. Marshals Service list of "15 Most Wanted" fugitives by Marshals Service Director John W. Marshall.

Baerga, 38, used the alias Robo-Cop while smuggling weapons, such as AR-15's and other automatic rifles, out of Orlando, Florida and selling them in Puerto Rico. The weapons ultimately were being distributed to local gangs and drug cartels in Puerto Rico that had strong ties to groups in Colombia.

Baerga was arrested in February 1992, by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agents who seized numerous firearms, ammunition, and firearm accessories while executing a search warrant on his suitcases as he traveled from Miami to Puerto Rico. He pled guilty to weapons smuggling in April 1992, and was scheduled to be sentenced in Federal court when he escaped, amid a hail of gunfire, from the maximum security penitentiary in Rio Piedras, Puerto Rico on July 3, 1992.

Director Marshall cautioned that "due to the violent nature of Baerga's criminal background, he should be considered armed and quite dangerous." It is believed that Baerga continues to be involved in the illegal trafficking of firearms.

Raymond Abbott Baerga is a white male, born April 7, 1961, in Miami, Florida. He is 5'10" tall and weighs approximately 160 lbs. He has brown eyes and black hair and has slash marks (scars) on both wrists.

Anyone with information relating to this dangerous fugitive is asked to contact the nearest U.S. Marshals Service office or the Marshals Service Headquarters at 800-336-0102 or 202- 307-9000.

The U.S. Marshals Service, established by Congress in 1789, is the nation's oldest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y. It continues to serve the nation through a variety of vital law enforcement activities including: protecting the federal judiciary, apprehending fugitives, prisoner custody and transportation, witness security, and asset forfeiture.

The Marshals service home page is located at [www.usmarshals.gov](http://www.usmarshals.gov)

Daniel HIERS – Recent Facts



Photos

Recent Facts

Members of the U.S. Marshals Service Fugitive Task Force, Operation Intercept, have been working with members of Electronic Surveillance Unit and FSU to try to narrow down Hiers location. So far none of the leads received have lead to the apprehension of Hiers.

Hiers was last seen on March 15th, 2005 leaving his residence sometime around mid- morning.

Hiers was driving a 2005 Red Chevy Aveo SC TAG 486DEH. Hiers last known whereabouts was on March 16th around 2:08PM in Walterboro, SC. Hiers was making a ATM withdrawal for \$440.00.

Hiers was featured on [America's Most Wanted](#) on March 26th, 2005. We received several leads from the show. None of the leads have lead to the arrest of Hiers.

(출처: 미연방보안국 홈페이지 수배사이트)

세부적인 수배항목에 있어서도 사건전체의 개요나, 다양한 유형의 사진게시 및 추적 내지 행정정보제공, 최근의 확인된 사실까지도 게시된다.

<그림 6> 미국의 The America's Most Wanted Inc.가 운영하는 Web Site의 수배화면



(출처: www.mostwanted.org)

### 3) 미국의 인터넷 공개수배의 특징 및 FBI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절차 등

미국은 가히 인터넷 수배의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배기관의 수도 다수이며, 각 주나 최소행정단위의 경찰조직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배활동을 인터넷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테러리스트를 수배하거나 외국의 요청에 의한 수배까지 가능한 모든 유형의 인터넷 공개수배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연방수사국(FBI)이 운영하는 Ten Most Wanted Fugitives Program의<sup>36)</sup> 목적은 전국적으로 피의자를 추적하는데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즉 다른 방식으로는 전국적인 주의 내지 관심을 끌기 어려운 경우에 특별히 위험스러운 피의자를 공개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소개되고 있다.<sup>37)</sup>

이 프로그램은 1950년 3월 14일 FBI가 전국단위의 방송매체와 연대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생성되게 된 배경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 후반에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뉴스정보제공업체[International News Service; UPI(United Press International)의 전신]가 FBI에 체포하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피의자들(toughest guys)의 이름과 특징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내용이 실린 신문기사가 일반시민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아주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되자, 후버(J. Edgar Hoover) 수사국장은 이를 계기로 소위 “Ten Most Wanted Fugitives”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sup>38)</sup>

중요지명수배자의 명단에 기재되는 것은, FBI Headquarter에 있는 범죄수사과(CID; Criminal Investigative Division)에서 56개의 지방 FBI 분소에 ‘Ten Most Wanted Fugitives’의 리스트에 올리고자 하는 후보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이렇게

36) Fugitives라는 용어 외에 1930년대 public enemy 라는 용어가 특히 시카고 범죄위원회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명칭의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도 1931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적이 있다. 이 용어는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사라진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Fugitives는 사전적으로는 도망자, 탈주자 등으로 fugitive warrant는 지명수배(영장)등으로 사용되므로, 아래에서는 지명수배자 또는 피의자로 옮긴다.

37) 아래의 간략한 연혁에 대한 출처는 : <http://www.fbi.gov/wanted/topten/tenfaq.htm> (2006. 9.30.방문).

38) Dempsey, Introduction to Investigation, 2. Ed., 2003, pp. 11. NCIC나 Most Wanted Program은 Hoover소장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제출된 후보자들을 CID와 the Office of Public Affairs의 특수요원들(Special Agents)이 수합하여 재검토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안된 후보자들 중에서 게시될 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CID의 차장(Assistant Director)의 권한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FBI의 부국장(Deputy Director)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Ten Most Wanted Fugitives에 명단을 올리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 피의자가 중요한 범죄를 범한 다수의 기록이 있거나 최근의 범죄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사회에 아주 위험한 인물로 판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 질 전국적인 공개가 피의자의 체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이유로 그 피의자가 위험하다는 것이 일반인에게 아직 주지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Ten Most Wanted Fugitives사이트에 수배된 자들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으며, 이 명단에서 삭제되는 경우는 체포된 경우, 형벌 등이 면제된 경우(물론 이러한 경우는 FBI의 소관은 아님) 및 더 이상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Ten Most Wanted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게 된 경우라고 한다. 지금까지 명단에서 도중에 삭제된 다섯 사례의 이유는 지명수배대상자가 더 이상 사회에 대해 특별히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명단에서 삭제되는 자가 발생하면 다른 지명수배 대상자들이 추가로 게시되게 된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Ten Most Wanted Fugitives에 게시된 피의자들의 범죄유형은 1950년대에는 은행강도, 차량절도, 강도 등이었고, 1960년대에는 재산범이나 사보타지 또는 납치범들이었다. 1970년대에 와서는 FBI가 조직범죄나 테러리즘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조직범죄나 테러그룹에 연결된 자들이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쇄살인범이라거나 약물관련범죄가 추가된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거의 56년에 가까운 역사동안(2006년 9월까지) 484명의 피의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명단에 올랐고, 그 중 체포된 454인 중 147명은 시민들이 도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Ten Most Wanted Fugitives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고, 단지 공중에게 피의자의 추적 내지 체포에 도움을 얻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서만 사용되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외에도 FBI는 중요지명피의자를 일반수배들과 함께 라디오나 TV를 이용하여 수배를 하기도 하는데, ABC 라디오의 “FBI, This Week”, TV방송으로 “FBI Fugitives”가

대표적이다. 1988년 초반에 FBI는 “America’s Most Wanted: America Fights Back”로 알려져 있는 TV프로그램을 Fox 방송사를 통해 방영한 적이 있는데, 방송의 결과 해당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의자의 사진과 실영상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많은 범죄가 해결되고, 피의자를 거리에서 몰아내는, 즉 더 이상 범죄를 범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도 나타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무료 핫라인(전화)을 통해서 시청자나 일반인이 수배자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수사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FBI에서 운영하는 연방차원의 수사정보제공센터인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는<sup>39)</sup> 1967년 1월에 개소된 이후, 가장 최근에는 1999-2000에 업그레이드되었는데, 이러한 소위 국가범죄정보센터는 모든 범죄정보를 권한당국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배의 효과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sup>40)</sup>

## 5. 독일 등의 인터넷 공개 수배현황

### 1) 연방범죄수사국 등의 인터넷 수배현황

독일은 1999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공개수배에 대한 수권규범을 동법에 두게 되었다.<sup>41)</sup> 법개정 당시 이미 인터넷 공개수배를 예상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고, 현재 독일은 앞에서 살펴본 일본이나 미국과 거의 유사하게 광범위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내무부(Innenministerium)에 속하는 독일연방범죄수사국(BKA; Bundeskriminalamt)에서는<sup>42)</sup> 홈페이지의 수배(Fahndung)란에 하부메뉴로 인적·물적 수배를 구분하고, 인적 수배의 유형으로는 실종자, 중요지명수배자, 미체모살사건,

39) 이에 대해서는 Bennett/Hess, Criminal Investigation, 7. Ed., 2004, pp. 129; <http://www.fas.org/irp/agency/doj/fbi/is/ncic.htm>(2006.9.10.방문).

40) FBI의 다양한 수사활동에 대한 근거규범으로는 Title 28, United States Code, Section 533;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 3052;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 3107; Title 28, Code of Federal Regulations, Section 0.85 등이 있다.

41) BT Drucksache 14/1484, S. 5, 21.

42) 내무부 산하의 독일연방경찰청(Bundespolizei)이 별도로 존재함.

강도사레, 기타 인적수배(목격자·참고인·증인수배), 익명변사자, 미제사건 등 7개의 하위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적 수배도 압수·압류대상물이나 기타 장물 등의 수배와 특히 문화재나 예술품에 대한 수배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림 7> 독일연방범죄수사국(BKA; Bundeskriminalamt)의 인터넷 공개수배

(중요지명피의자수배화면예)

■ Meistgesuchte Personen



[mehr](#)

Familienname: KÜTÜK  
 Vorname: Kenan  
 Alter: 40 Jahre  
 Staatsangehörigkeit: türkisch  
 Sachverhalt

Im Zusammenhang mit der Tötung fahnden die Ermittlungsbehörden mit internationalem Haftbefehl nach dem 40-jährigen türkischen Staatsangehörigen Kenan KÜTÜK. Kütük war in der Zeit vom Juli bis September 2003 Untermieter im Haus der Familie Thom. Einige Tage vor der Tat wurde er in der Nähe des Hauses gesehen. Als die Ermittlungsbehörden nach der Tat mit ihm Kontakt aufnehmen wollten, war er nicht mehr erreichbar. Nachdem zunächst angenommen wurde, er habe sich möglicherweise in die Türkei abgesetzt, gibt es nunmehr aufgrund polizeilicher Ermittlungen konkrete Anhaltspunkte dafür, dass er sich in Frankreich aufhält.

Die Staatsanwaltschaft hat für die Ergreifung des Tatverdächtigen eine Belohnung in Höhe von 5000 Euro (fünftausend) ausgesetzt.



Über deren Zuerkennung und Verteilung wird unter Ausschluss des Rechtsweges entschieden. Sie ist ausschließlich für Privatpersonen bestimmt und nicht für Beamte, zu deren Berufspflicht die Verfolgung von Straftaten gehört. Aus ermittlungstaktischen Gründen können weitere Einzelheiten gegenwärtig nicht genannt werden.

Sachbearbeitende Dienststelle  
 Kriminalpolizei Mainz  
 Tel.: 06131/ 65 36 33

Hinweise bitte an:  
 Kriminalpolizei Mainz oder Bundeskriminalamt Wiesbaden  
 Kriminaldauerdienst  
 Tel. 0611/55 - 13101 Fax. 0611/55 - 12141  
[info@bka.de](mailto:info@bka.de) oder jede andere Polizeidienststelle

© 2006 Bundeskriminalamt Wiesbaden | [Impressum](#)

Sämtliche Daten sowie alle Teile der Dokumentation unterliegen dem Urheberrecht. Alle Rechte sind geschützt. Jegliche Vervielfältigung oder Verbreitung, ganz oder teilweise, bedarf der vorherigen Zustimmung. Der Nachdruck von Pressemitteilungen ist mit Quellenangabe gestattet. Herausgeber: Bundeskriminalamt, 65173 Wiesbaden

(출처: 독일연방범죄수사국 홈페이지 수배사이트)

특징적인 것은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건의 개요(범죄사실)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진단형태의 프린트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고문에서는 모든 데이터와 문서의 내용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수배전단이나 내용을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부분적이건 또는 전체적이건 사전의 연방범죄수사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대한 복제는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도 다양한 수배유형에 몽타주사진이나 동영상 등 수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고, 특히 이메일 전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타인에게 수배내용을 이메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바이에른 주나 스위스의 경찰도 독일연방범죄수사국과 비견한 인터넷 수배활동을 벌이고 있다.

## 2) 독일 · 스위스 등 유럽국가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특징

독일 등 유럽국가의 인터넷을 통한 수배의 내용적인 특징은 이미 살펴본 일본이나 미국에서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세부 수배항목을 구분하고, 아주 상세한 사건개요를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수배자·물건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보자의 제보를 기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 6. 소 결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 및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인터넷 공개수배현황은 사실상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를 법률에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단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위한 하나의 허용된 수사기법으로 받아들여는지, 혹은 수사기관의 예규나 지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중앙의 수사기관과 지방의 수사기관은 일부 공통적인 수배활동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 지역의 수사기관이 독자적인 수배활동



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의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공개수배자조회/제보 프로그램은 비교법적으로 볼 때 거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러한 인터넷 공개수배 현황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나 학문적인 접근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국내의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그 해답을 찾는 방법은 결국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공개수배관련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단지 경찰청의 예규형태로 인터넷 수배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법현황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 Ⅲ.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

#### 1. 개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일정한 경향을 넘어서 범세계적으로 핵심적인 범죄수사와 피의자체포의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터넷 공개수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인 근거규범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수의 국가가 영장이 발부된 중요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체포절차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도움을 통해 보다 쉽고 빨리 범죄를 해결하고 국민들을 제2차적인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처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3)</sup> 이러한 국가에서는 당연히 수사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이 가장 핵심적인 잣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공개수배에 대해 법률·지침 등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도 인터넷이 일반화된 시점을 고려할 때 그리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체적으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활발한 인터넷 공개수배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공개수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국내의 형사절차와 구조적인 유사성을 띄고 있고, 법률 혹은 지침형식의 규정방식이 비교가치가 있는 일본과 독일의 법제를 살펴보면, 어떠한 근거로 인터넷 공개수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43) 지명수배가 피수배자의 신체의 자유, 명예를 침해하는 요소가 많은 점을 중시하여 형사소송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독일, 중국, 대만 등)와 형사소송법 등 법률적 근거없이 실무상 관습적으로 지명수배를 운영하는 국가(미국, 영국 등)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구별은 형식적인 것으로 전자의 국가들은 영장에 의해서만 체포가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는 영장없는 체포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있으므로 지명수배법의 검거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일본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이 엄격한 영장주의 및 철저한 소재수사의 전제하에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구분하는 것과 달리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영장없는 체포와 구금이 예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검찰자체의 분석도 있다(이상대, 체포제도시행에 따른 지명수배 개선방안, 검사세미나 연수자료집, 제22기 -개정형사소송법상의 신명확보절차-, 1997, 법무연수원, 137쪽 이하; 조대환, 대만의 통집제도, 해외과건검사연구논문집, 제10집, 법무부 1994, 619-620쪽; 오경식,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배제도에 관한 일고찰, 치안정책연구 제8호, 1997, 10쪽 이하 등 참조).

## 2. 국내법상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

현행 국내법상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로 가장 직접적인 규정은 사이버경찰청이 중요지명피의자종합수배의 근거규정으로 삼고 있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제29조)<sup>44)</sup> 및 경찰청예규인<sup>45)</sup> ‘지명수배취급규칙’(제4조 및 제9조)이다. 범죄수사규칙 제29조 제3항에서는 ‘공개수배는 사진·현상·전단,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공개수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2항에서는 ‘종합공개수배서를 작성하여 전국에 공개수배한다’라고 하여 ‘공개수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엄밀하게 인터넷 수배의 근거조항을 찾았다면, ‘기타의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TV나 라디오 등의 매스컴을 통한 수배도 결국은 기타의 방법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개수배’라는 용어는 이러한 경찰청 예규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의 ‘공개수배자 조회/제보’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물론 공개수배에 인터넷을 통한 수배나 TV나 Radio 등의 매스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은 예규나 지침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인터넷이나 TV 혹은 Radio를 통한 수배가 사진, 현상 등의 방법보다 기본권침해성이 더 높다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기타의 방법’으로 분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개수배를 수배의 일종으로 볼 때, 지명수배·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법적 근거로는 검찰사건사무규칙,<sup>46)</sup> 사법경찰관집무규칙,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sup>47)</sup>,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sup>48)</sup> 등의 부령이나 경찰훈령 또는 예규들이 있으나 공개수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공개수배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은 주지하다시피 수배라는 수사처분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개수배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필요한 수사처분이라면 현행 형

44) 2005.10.6. 훈령 제462호.

45) 2005.12.20 예규 제74호(제347호로 제명이 변경) 지명수배취급규칙.

46) 일부개정 2005.8.26. 법무부령 제576호.

47) 대검예규 기획 제389호(2006.1.25. 현재).

48) 대검예규 기획 제369호(2005.3.18. 현재).

사소송법도 법적인 근거로 고려되기는 어렵다. 달리 말해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9조의 수사의 일반조항이 공개수사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하면, 동 조항들을 인터넷 공개수배의 근거조항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현재 지명수배·통보 자체가 강제수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여하튼 분명한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 국내의 법상태 하에서 공개수배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과 지명수배취급규칙이며, 동 규칙들의 의미에서의 공개수배는 중요지명피의자의 전단 배포 내지 게시를 통한 방법뿐이라고 할 수 있다.

### 3. 일본의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소송법·규칙에서는 수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이하의 체포와<sup>49)</sup> 제204조 내지 206조 및 207조의 구류(勾留; 구속)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고,<sup>50)</sup> 피의자의 지명수배의 근거가 되는 것은 체포장(逮捕狀)이다. 즉 警察廳法에 근거하여 국가공안위원회가 1955년(昭和33년) 7월에 제정하고, 최근 2006년 5월 23일에 개정된 ‘犯罪搜查規範’ 제31조에서는 체포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체포를 의뢰하면서, 체포 후 신병을 인

49) 통상체포는 제199조 이하, 긴급체포는 제210조 이하, 현행법체포는 제212조 이하에서 규정하여 3유형의 체포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제199조 제1항의 통상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판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며, 30만엔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상당한 이유없이 전조의 규정에 따른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체포규정은 형사소송법 第200條의2 (逮捕) 제1항에서 被疑者が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正當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官廳 地方法院判事の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다만, 多額 50萬圓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正當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과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의 내용적인 차이는 보인다.

50) 長沼範良/田中 開/寺崎 嘉博(著),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5, 66頁; 山口 裕/後藤 昭/安富 潔/渡辺 修(著), 刑事訴訟法, 第3版, 有斐閣, 2005, 72頁 以下; 福井 厚, 刑事訴訟法, 第4版, 2005, 93頁 以下; 渥美東洋, 刑事訴訟法, 新版補訂, 有斐閣, 2005, 23頁 以下; 東條伸一郎, 註釋 刑事訴訟法, 新版, 第3卷, 立花書房, 1996, 92頁 以下 등 참조.

도할 것을 요구하는 수배를 지명수배라고 하며, 이러한 지명수배에 근거하여 경찰청의 예규로 운영되던 ‘지명수배취급에 관한 예규(指名手配被疑者の公開捜査について)<sup>51)</sup>’ 있었으나, 지난 1998년 개정을 통해 ‘피의자공개수사에 관한 예규(被疑者の公開捜査について)<sup>52)</sup>’로 제명변경과 함께 개정이 있었다.<sup>53)</sup> 즉 종래와는 달리 지명수배피의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개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개정된 것이다. 공개수사의 범위가 변화하는 범죄추세에 맞게 확장되었다는 의미이다.

범죄수사규범(犯罪捜査規範)<sup>54)</sup> 제27조 내지 제28조에서는 일반적인 협조의무, 즉 경찰관은 상호 협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28조에서는 타 경찰에 대해 공조의뢰(피의자체포, 도품, 증거물수배, 압수, 수색, 검증, 참고인 호출시 조서작성 직원의 파견 기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피공조의뢰 경찰은 성실하고 신속하게 공조요청에 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범죄수사공조규정(犯罪捜査共助規則)<sup>55)</sup> 都道府縣警察 사이의 수사공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공조의뢰절차 등을 규정하고 피공조요청 지방경찰의 업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조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범죄수사규범 제29조 이하에서는 긴급사건수배, 사건수배, 지명수배, 지명수배의 종별, 지명수배의 계속, 지명통보, 도품 등 수배, 수배 등 정정·해제, 신병인조시의 원칙, 피의자인도서, 유지의뢰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공조규정 제5조 이하에서도 규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조문이지만 긴급사건수배, 사건수배, 지명수배, 지명수배의 종별, 신병인도서의 원칙, 체포의 통고, 지명통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51) 昭和37年 2月 1日 시행된 예규(通達)를 昭和 9월 12일 폐지하고 새로이 시행한 通達이다.

52) 警察廳丁刑企發第136號(平成 10年 10月 1日).

53) 경찰청법 제5조의 임무 내지 소관사무규정과 제12조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범죄수사규범과 범죄수사공조규범을 국가공안위원회가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長沼範良/田中 開/寺崎 嘉博(著),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5, 61頁): 제1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第十二條 國家公安委員會は、その所掌事務について、法律、政令又は内閣府令の特別の委任に基づいて、國家公安委員會規則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る)。

54) 2004(平成16년) 4월 1일 國家公安委員會 規則 제8호로 개정된 것임.

55) 2004년 4월 1일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8호로 개정된 것임.

위의 규범 및 규정에서는 지명수배를 체포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체포를 의뢰할 때, 체포 후에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수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범죄수사규범 제37조에서는 지명수배 등의 처분은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때 범죄의 종류, 경중, 긴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배의 범위나 종류 내지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을 기초로 종전에 운영되던 지명수배취급에 관한 예규에서는 지명수배의 방법으로 경찰내부의 조회센터의 전자계산조직(전산망)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현재 우리의 지명수배 내지 통보의 전산기록방식과 같은 유형을 규정하고 있었다.<sup>56)</sup>

1998년 범죄정세의 변화에 따라 종전의 예규를 운용하여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새로운 지명수배기법을 도입한 것이 현재 시행중인 피의자공개수사에 관한 예규(被疑者の公開捜査について)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제1항에서 공개수사의 범위를 정하면서 피의자의 공개수사라는 것은 피의자를 발견, 검거 및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이름과 성명 등을 공공연하게 일반에 공표·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적극적인 국민의 협력을 요청하는 수사처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항의 공개수사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서는 흉악범죄,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아주 큰 중요한 범죄(유괴, 체포, 감금, 도주, 총포도검류, 화약류, 마약류, 경제범죄, 하이테크범죄, 교통범죄 등), 재산범죄 중에서는 악질적이고 중요한 범죄(절도범도 범행수법이나 방법이 악질적이고 피해액도 상당히 다액인 경우에는 이에 속함), 극좌파의 폭력집단 등 반사회성이 아주 강한 집단의 범죄를 조기에 검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극히 경미한 범죄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범죄의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지명수배된 경우(물론 사후지명수배도 인정함)를 원칙으로 하고, 일본 소년법 제61조에 상응하게 원칙적으로 성년에 대해서만 수배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sup>57)</sup>

56) 指名手配被疑者の公開捜査について 제2조 및 제4조 1항 참조.

57) 물론 이러한 성인수배의 원칙에는 예외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결국 2003년 11월 일본경찰청에 의해 미성년자에 대한 매스미디어 공개수배가 이루어짐으로써, 적지 않는 논란이 있었다.  
<http://www.people.ne.jp:http://news5.2ch.net/test/read.cgi/newsplus/107111526/15>

이러한 공개수사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도 우선 공개수사는 피의자의 추적수사상황, 범죄의 반복가능성, 수사상의 장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개의 사안의 구체적인 특징에 맞게 효과적인 시기를 선정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sup>58)</sup> 피의자에 대한 공개수사의 내용, 즉 공개되는 정보에는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피의자의 성명, 연령, 사진, 신체적 특징, 직업, 출생지, 범죄사실의 개요 등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범죄사실의 개요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의 피해자 등 관련자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의 소행, 경력, 정신적 장애, 가족관계, 참고인 등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수사비례의 원칙으로 접근하기에는 침해되는 법익이 우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공개수사시 피의자의 성명공개,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상응한 사진 등의 화상기록, 일러스트, 몽타주, 음성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보도기관, 인터넷, 포스트, 전단지 등 각종의 공공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의 명예 등 공개수사의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공개수사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 피의자인지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이를 행하도록 하여, 혼동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개수사의 관할·관리부분으로, 공개수사를 하고자 할 때는 경시청이나 지방경찰의 수배주무과장이 공개수배의 대상, 필요성,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위에서 언급한 극좌폭력집단 등의 반사회성이 강한 집단에 의한 범죄나 다른 3가지 유형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 범죄를 수배하고자 할 때는 경찰청·관구의 경찰국(형사과)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배주무과장은 공개수사의 경과 등을 기록·정리·보관하고 공개수사의 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공개수사로 인해 이루어지는 민간의 제보(통보)에 대한 조치, 공개수사의 해제 등 공개수사관련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수배담당 사법경찰관이 수배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0(2006.10.15.방문).

58) 피의자의 공개수사에 관한 通達 제3조 1항 참조.

나아가 공개수사의 적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 이 예규(通達)의 의미는 위에서 언급한 공개수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의무적으로 공개수사를 하라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공개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잘못된 수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계자의 명예 등에 아주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항상 오수배의 가능성에 대해 지명수배사실의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여, 절대로 그러한 수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있다. 물론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실질적이고 효과를 기대·보장할 수 있는 시기, 방법을 재차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공개수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9)</sup>

이상과 같은 일본에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는 수사당국의 예규 내지는 지침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 4. 독일의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

### 1) 용어의 정의

우선 간략하게 독일형사소송법상 수배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기로 한다. 제도나 문화 및 언어관용의 차이로 독일에서 사용되는 수배 관련 법률용어가 국내의 전문용어로의 바로 전용하기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원래의 의미가 제대로 옮겨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의 용어사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59) 특히 고물상 등 특별한 제보자들에 대해 협력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등의 명예 등을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아주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그림 8> Steckbrief(지명수배장)의 예

(Femegericht)



(현대의 Steckbrief의 예)



(출처: <http://de.wikipedia.org/wiki/Hauptseite>)

(Femegericht의 1489년의 Steckbrief)



수배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용어만도 ‘örtliche Fahndung’, ‘Ausschreibung(zur Festnahme, zur Aufenthaltsermittlung)’, ‘Fahndung’, ‘Steckbrief’, ‘öffentliche Fahndung’ 혹은 ‘Fahndungsausschreibung’ 등으로 다양하다.

<그림 8>의 Femegericht의 Feme란 13세기 이후, 특히 14-15세기에 독일의 베스트팔렌(Westfalen)과 북독(특히 네덜란드)에서 특히 무거운 범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특별재판(소)을 의미하는데, 다수의 동등한 국가간에 만들어진 연합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적이거나 배반자의 암살을 결정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동 개념은 이후 이 법원으로부터 부과된 형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Steckbrief란 이러한 Femegericht로부터 범죄인에게 보내지는 소환장(Ladebrief)의 의미를 가졌으나 사후에는 구속영장(Haftbefehl)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stecken’(처박다) 동사의 뜻처럼 결국은 이러한 소환장을 받은 자가 결국은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stecken)’되기 때문이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지명수배장, 즉 경찰 등에 대해 일정한 자의 수배를 요구하는 서류(구체적으로는 검사에 의한 지명수배통보서)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지명수배(장·전단)’ 등으로도 옮길 수 있다.<sup>60)</sup> 수배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지명 ‘수배’라는 단어(‘널리 배치한다’)가 가지는 일본어적인 색채를 버리고 ‘통보’라는 말로 통일하여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어 왔다.<sup>61)</sup> Die örtliche Fahndung은 ‘소재수사·연고지수사’ 등의 의미로 옮길 수 있다. 지역에 한정된, 즉 특정 관할지역의 경찰관서에 수배 의뢰하는 것으로 몇 주안에 효과가 없으면 ‘전국적 소재수배’(überörtliche Fahndung)가 행해진다. 내국에 한정된 광역수사 내지 전국적인 수사(national beschränkte Fahndung: überörtliche Fahndung의 한 유형)는 ‘지명수배’(Ausschreibung zur Festnahme)와 ‘지명통보’(Ausschreibung zur Aufenthaltsermittlung)로 이루어진다. 즉 Ausschreibung이 국내의 지명수배·통보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62)</sup> 왜냐하면 Ausschreibung이란 ‘내용을 상세히 적어 공고 내지 공모한다’(현상광고·공모의 의미도 있음)는 것으로 지명수배·통보라고 옮기는 것이 경찰 내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내부수배라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상 검사가 작성하는 지명수배(통보)입력 요구(서)라고 볼 수 있다.

60) 상세한 내용은 <http://de.wikipedia.org/wiki/Steckbrief> 참조(2006.7.1. 방문).

61) 조대환,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4. 100쪽.

62) 이에 대해서는 Heghmanns, Das Arbeitsgebiet des Staatsanwalt, 3. Aufl., 2003, S. 198ff.

<그림 9> 독일 검찰의 지명통보(Ausschreibung zur Aufenthaltsermittlung:지명통보입력요구서)]63)

StA Dresden 45 Js 6633/02	23.5.2002
Verfügu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Vorläufige Verfahrenseinstellung entsprechend § 250 StPO, da der Aufenthalt des Beschuldigten Piotr Olczewski (Bl 3) zur Zeit nicht bekannt ist.</li> <li>2. Olczewski(Bl 3) zur Aufenthaltsermittlung (nur national, das Aufenthalt mit großer Wahrscheinlichkeit im Inland) ausschreiben.</li> <li>3. Suchvermerk im BZR niederlegen.</li> <li>4. Suchvermerk im AZR niederlegen.</li> <li>5. BZR-Auszug für Olczewski (Bl 3) erfordern.</li> <li>6. Schreiben an AE Sundermann (höflich/formlos): Ihre Strafanzeige vom 2.3.2002 gegen Piot Olczewski wegen Betruges. Da der Aufenthalt des Beschuldigten zur Zeit unbekannt ist, habe ich das Ermittlungsverfahren vorläufig eingestellt. Die notwendigen Fahndungsmaßnahmen sind ergriffen worden.</li> <li>7. Fristen notieren zum: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10.5.2004 (Suchvermerk AZR verlängern)</li> <li>b) 10.5.2005 (Suchvermerk BZR und Ausschreibunb verlängern),</li> <li>c) 20.2.2006 (Strafverfolgungsverjährung)</li> </ol> </li> <li>8. zu den notierten Fristen. Herzog, StAin</li> </ol>	

Ausschreibung zur Aufenthaltsermittlung이란 신원이 확인된 범인의 소재지를 찾고자 하는 수배수사, 즉 '소재수사를 위한 지명수배'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지명통보와 유사하다. 피의자의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를 Ausschreibung zur Festnahme, 즉 우리의 '지명수배'로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을 행할 경우에는 독일관청의 다양한

63) 독일검사의 지명통보서에는 현재 피의자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절차가 중지(피의자중지)되었고, 이로 인해 소재지수사를 위한 지명통보를 행하며(1),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국내수배만을 행한다(2)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지명통보사실을 입력한 전산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3-6). 수배기간을 또한 명시하고 있다(7).

정보통신망(INPOL-System, AZR, Suchvermecken im Bundeszentralregister)에 그 사실이 입력되고, 사후에 해제하는 절차를 행하게 된다. Ausschreibung zur Fahndung이라는 용어는 직역하자면 수배를 위하여 상세한 내용을 적어 공고(전산에 입력)하는 것이 되므로 국내용어로는 지명수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Zielfahndung이라는 용어도 사용되는데 이는 표적수배로 옮길 수 있다. 특정의 범죄영역, 즉 경제범죄라거나 중형의 범죄를 범한 자에게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 외에 주 경찰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집중적인 수사활동, 즉 다수의 경찰관이 수배대상자, 그의 일상생활, 가족관계 및 사회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수사의 대상으로 하는 유형의 수배를 말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아래에서는 Ausschreibung zur Festnahme는 ‘지명수배’, Ausschreibung zur Aufenthalt는 ‘지명통보’, Ausschreibung과 Fahndung은 일반적으로는 ‘수배’라고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의 [그림 8]의 Steckbrief는 국내에서는 수배장,<sup>64)65)</sup> 지명수배<sup>66)</sup>(장)등으로 옮기고 있다. 경찰에게 주어지는 문서로 된 체포 및 인도요청서를 말하는 것으로 간단히 지명수배라고 옮길 수 있겠다. 전단을 만들어 벽보로 게시하는 등의 형태를 öffentliche Steckbrief라고 하며 ‘공개지명수배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Fahndung, Ausschreibung 및 Steckbrief는 편의상 동일하게 ‘지명수배(장)·(전단)’로 옮기고 언어사용의 문맥과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기로 한다.

## 2) 독일의 현행법규정

### (1)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

현행<sup>67)</sup> 독일형사소송법 제131조 제1항(§ 131 Abs. 1 StPO)에서는 구속영장<sup>68)</sup> 또

64) 하태훈, “패스컴을 이용한 피의자(내지 용의자) 공개수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암법학, 189쪽; 오경식, 앞의 논문, 24쪽; 김준규, 앞의 논문, 1243쪽.

65) 하태훈, 앞의 논문, 안암법학, 189쪽; 오경식, 앞의 논문, 24쪽; 김준규, 앞의 논문, 1243쪽.

66) 조대환,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3, 73쪽.

67) 1987년 4월 7일 공포되고, 2005년 8월 12일 현재 83회의 개정을 거친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였다(최종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BGBl. I S. 2360 참조: 법의 DNA분석에 관한 개정임).

68) 영장이라는 단어가 함유하고 있는 뜻이 법원의 명령이라는 의미라면, 독일어의 Befehl도 명령이

는 감정유치장<sup>69)</sup>·시설수용영장 등을 근거로 하여 법관 또는 검사는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를 명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찰수사관·사법경찰관(법원조직법 제152조)이<sup>70)</sup> 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명수배자에 대해 법관의 체포영장·구속영장의 발부된 것을 전제로 하여,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명령(Ausschreibung zur Festnahme)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구속영장 또는 시설수용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존재하지만 그 영장발부가 수배목적에 위협하게 할 경우, 즉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수배의 목적달성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검사와 수사관은 지명수배가 피의자의 체포를 위해 필요(필수)하다면 제1항에 따른 처분(Verfügung)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구속·체포영장의 발부를 전제하지 않은 지명수배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수배에 대해서는 늦어도 1주일 안에 법관에 의해 구속 내지 시설수용영장<sup>71)</sup>의 발부여부를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eine Straftat von erheblicher Bedeutung)’<sup>72)</sup> 즉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를 할 경우에, 피의자의 체류지·소재지수사가 다른 유형의 수배방법으로는 효과를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지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이를 소위 보충성조항 내지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klausel)이라고도 한다], 법관과 검사는 공개수배(Öffentlichkeitsfahndung)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으므로 Haftbefehl을 구속영장이라고 옮기는 것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69) 이 용어에 대해서도 시설수용영장(하태훈, 마스크를 이용한 피의자(내지 용의자) 공개수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90쪽), 강제수용영장(오경식, 우리 나라와 외국의 수배제도에 관한 일고찰, 25쪽) 등으로 옮기고 있다.

70) 검찰수사관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검사의 관할구역내의 수사담당경찰관, 즉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검사의 수사를 도우는 자(Hilfsbeamte; Ermittlungspersonen)를 말한다.

71) 독일에서의 의미에 따르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처분을 명하는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편의상 적당하게 시설수용영장, 감정유치장, 치료감호시설수용영장 등으로 옮긴다.

72) 무엇이 ‘중요한 범죄’인지에 대해 독일의 입법자는 침묵하고 있다. 즉 예를 들어 통신감청의 대상 범죄목록과 같은 범죄예시(Katalog)를 들고 있지 않다. 그 외중에 2004년 지방법원에서는 컴퓨터사용사기죄(Computerbetrug, 독일 형법 제263조의a)는 공개수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이에 대해서는 LG Saarbrücken, wistra 2004, 279).

같은 동일한 전제조건하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임에도 법관이나 검사가 적시에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관(검찰수사관 및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는 의미)에게 이러한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이러한 긴급처분은 24시간 이내에 검사에 의해 추인되지 아니하면 그 공개수배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사진도 이러한 필요성이 있으면 첨부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범죄지, 시간 및 체포를 위하여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범죄관련 기타 상황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동조 제5항에서는 이러한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공개지명수배처분에 의해 체포된 자를 지체없이 법관의 신문[원칙적으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판사에게 인치함;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장 인근의 구법원(Amtgericht)의 판사에게 인치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결국 독일형사소송법은 공개수배를 명문으로 인정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사전의 구속·시설수용영장을 전제하고, 법관 또는 검사에 의한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의 영장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관(사법경찰관)에 의한 긴급수배명령권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찰에 의한 공개수배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실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2) 소재지수사를 위한 지명통보

제131조의a에서는 소재지 수사를 위한 지명통보명령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31조의 체포를 위한 수배와는 대상에서 차이가 난다. 동조 제1항에서 소재지가 알려지지 않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Zeuge)의<sup>73)</sup> 소재(체류)지 수사를 위한 지명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소재지수사를 위한 지명통보는 피의자의 면허의 압수, 감식작업, DNA분석을 위해서 또는 신분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허용

73) 국내의 용어로는 참고인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이러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지명통보를 근거로 하여 중요한 범죄의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지명수배에서와 같이, 피의자에 대해 확실한 혐의가 있고, 소재지수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거의 결과가 없을 것이 예상되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수배·공개지명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도 보충성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조 제4항에서는 제131조의 4항을 준용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진도 이러한 필요성이 있으면 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범죄지, 시간 및 소재지수사를 위하여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범죄관련 모든 상황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4항 제2문에서는 특히 참고인에 대한 소재지수사를 위한 지명통보·공개지명통보에서는 수배의 대상이 되는 참고인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인의 우월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익이 지명통보를 통해 실현하려는 이익과 충돌한다면, 공개지명통보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고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는 지명통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동조 제5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수사기관에게 허용되어있는 소위 ‘체포의 보조수단들’(Fahndungshilfsmitteln)만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소위 ‘체포의 보조수단’은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질서위반금 부과절차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RiStBV; Richtlinien für das Strafverfahren und das Bußgeldverfahren) 제40조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있으며, 그곳에서는 공개수사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수배보조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74)</sup> 수사기관이나 다른 관공서의 관련정보, 독일연방범죄기록국(Bundeszentralregister),<sup>75)</sup> 교통범죄기록국(Verkehrszentralregister), 영업관련처

74) 물론 이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모든 유형의 수배방법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이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 중 Meyer-Göbner, StPO., 48. Aufl., 2005, § 131a Rn. 5. 참조).

75) 연방대법원에 대응하는 연방검찰(Generalbundesanwalt)청에서 관리하는 기록으로 연방중앙기록국법에 의해서 ‘형사판결로 유죄를 받은 자의 정보와 유죄판결정보, 법원의 위치와 소송서류, 최종범죄일, 기관력발생일 등의 정보, 보안천분관련기록, 소년범죄등의 기록, 행정청의 결정기록, 책임무능력자 정보, 마약중독자관련 정보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등의 기록 및 수배정보 등’ 다양한

분기록국(Gewerbezentralregister), 외국인등록국(Ausländerzentralregister)의 정보, 경찰의 EDV(전자정보처리)-수배시스템(INPOL), 형사소송법 제48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검찰·교도소 등의 형사소송관련기록정보 중 수배에 의미 있는 정보, 연방 범죄수사국의 관보(Bundeskriminalblatt)나 지방경찰관보(Landeskriminalblätter)<sup>76)</sup> 및 쉥엔시스템(Schengeners Informationssystem)<sup>77)</sup>의 이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제2항에서는 공개수배를 위하여 출판물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투입되어야 할 경우나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과 같은 전자매체(elektronische Medien wie Internet)가 이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별첨 B(Anlage B)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수배에 관한 ‘형사소추에 있어서 수배를 위한 출판기구의 이용에 관한 별도 지침 B’(Anlage B; Richtlinien über die Inanspruchnahme von Publikationsorganen zur Fahndung nach Personen bei der Strafverfolgung)에서는<sup>78)</sup> 신문 등의 출판물, 라디오, TV를 통칭하여 출판기관(Publikationsorgane)이라고 칭하고, 이러한 출판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sup>79)</sup>

### (3) 사진 등의 공개

제131조의b 제1항에서 중요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사진 등에 대한 공개가 허용되는 조건은, 범죄를 밝히기 위해, 특히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거의 어렵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워질 것임이 예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참고인(증인)의 사진공개 및 이러한 사진공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형사절차의 내용공개는 단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의 해명, 특히 참고인의 신원확인이 다른 방법으로는 가망성이 없거나 또는 본질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사건관련 기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기록이다.

76) 수사기관들 사이의 내부에서만 공개되는 범죄나 수배에 관한 관보를 말한다.

77) 룩셈부르크의 쉥엔(Schengen)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루어진 유럽연합국가간의 협약에 기초하여 유럽지역전체의 수배를 위해 인적·물적인 수배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15개 국가가 이에 가입하고 있다.

78) 연방과 16개주 전체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79) 내용은 아래의 ‘3) 형사절차와 질서위반금부과절차에 관한 연방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



로 제한하고 있다. 사진이 공개된 자가 피의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제3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131조 제4항 제1문의 전단과 제2문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세한 범죄사실이나 기타 정황의 게시를 요구하는 것이 수배대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 (4) 수배처분의 명령과 사후추인(Anordnung und Bestätigung)

제131조의c 제1항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제131조의a 제3항과 제131조의b의 수배는 단지 법관만이 명령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단지 긴급을 요하는 경우(bei Gefahr im Verzug; 지체할 경우 위험한 상황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검사와 수사관의 명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제131조의a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의 명령을 필요로 하고, 지체할 경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관(Ermittlungspersonen)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sup>80)</sup>

제2항에서는 전자매체(elektronische Medien)에 지속적인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 및 텔레비전에 반복적으로 방영·수배하는 것 또는 일정기간이 정해진 인쇄물에 지속적인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수배명령 또는 수사관의 수배명령은 그 명령이 1주일 이내에 법관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하면 제1항 제1문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수사관의 수배명령은 그것이 일주일 내에 검사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131조의c 제2항에서는 명문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검사 혹은 수사관에 의해 (공개)지명수배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법관에 의하여 명령이 심사되어, 결국은 법관에 의한 수배명령이라는

80)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GVG) 제152조 제1항에서는 종래의 Hilfsbeamten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Ermittlungsbeamt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관은 관할구역의 검사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 검사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항에서는 지방정부의 관련 공무원임명권을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Hilfsbeamte와 현재의 Ermittlungsbeamte는 결과적으로 국내의 사법경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독자적인 지명수배가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특히 Ranft, Fahndung nach Beschuldigten und Zeugen gemäß dem StVÄG 1999, StV, 2002, S. 38ff, 39, 43).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한 공개수배의 경우에 법관의 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형사절차와 질서위반금부과절차에 관한 연방의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1) 지침 · 가이드라인(Richtlinie)의 성격

독일연방과 주에 적용되는 지침 ·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보면, “본 지침은 무엇보다 검사에 향해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몇몇의 규정들은 법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본 규정의 내용이 공적인 권한행사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고려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관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이 지침은 법관에게 의미 있을 수 있는 기본원칙을 함유하고 있다. 본 지침은 삶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단지 일반적인 · 규정적인 사례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검사는 따라서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독자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책임 하에 어떠한 조치가 요구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에 특성에 비추어 본 가이드라인(지침)에서 벗어나는 결정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81)</sup> 달리 말해 본 지침은 법관과 검사의 합리적인 재량을 전제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각주에 공통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82)</sup>

#### (2) 인터넷 공개수배관련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 제39조는<sup>83)</sup> 일반조항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신원이 알려

81) Meyer-Goßner, StPO., RiStBV Anh 12, S. 1891(Einführung für Richtlinien für das Strafverfahren).

82) 본 지침은 1977년에 제정되었고, 1997년2월1일부터 독일연방전체에 일원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2006.10월 현재 최근 개정은 2006년 8월 1일이다. 크게 사전절차, 기소, 공판절차, 상소절차, 재심절차, 피해자의 절차참여, 특별절차 등에 대한 총론규정과, 형법, 부수형법 그리고 질서위반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각론으로 구성되어 총 300개의 조항으로 되어있다. 국내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연방에 통일된 하나의 형사소송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83) Nummer 39이므로 39번 내지 39호 옮기는 것이 적절한 것이나, 하위 항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편리하게 ‘조’로 옮긴다.

진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증인, Zeuge)의 소재·체류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1조의c에 따른 수배처분을 명한다고 하고, 필요하다면 검사는 수배의 이유가 사라진 후 지체없이 모든 수배처분의 해제·철회(Rücknahme)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수배를 검사의 명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0조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수배목적에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보조수단들을 열거하고 제2항에서 공개수배를 위하여 출판이 필요하거나 인터넷과 같은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매체가 이용되어야 만하는 경우에는 별첨 B(Anlage B)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sup>84)</sup>

### (3) 가이드라인 별첨 B의 주요내용

Anlage B는 연방과 16개주 모두에 적용되는 지침으로<sup>85)</sup>,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출판기관(물)의 투입을 위한 기본원칙

형사소추기관들은 범죄를 해명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법적으로 허용된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신문, 출판, 라디오, TV와 같이 많은 경우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아주 가치있게 수배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체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신원이 알려진 피의자뿐만 아니라 익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배 및 참

84) 제41조에서는 특히 피의자에 대한 수배를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제1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들에 있어서는 우선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명령을 하고 독일연방중앙(범죄)기록국(Bundeszentralregister)에 그에 따른 수배표식(Suchvermerk)을 날인할 것을 명한다(제1항). 이러한 명령은 만약 목적수배를 행하기 위한 구속(시설유치)영장이 수배대상자의 (추정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에게 송부된 경우에는, 경찰의 정보망(INPOL)에 수배정보를 입력하는 권한이 있는 경찰관청 및 경우에 따라서는 쉐엔시스템(SIS)에 수배자료를 입력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관청에게도 수배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료입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청에는 구속관련서류의 사본이 송부되어야 한다. 증인에 대한 수배의 경우에도 INPOL이나 Schengener Informationssystem의 입력을 관할하는 경찰관청에 수배사항의 입력을 명령한다. 국제적인 수배에 대해서는 4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85) Publikationsorgane는 신문·잡지·출판, 라디오, TV등의 매체를 총칭하는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출판기관지·출판매체 등으로 옮길 수 있고, Internet을 통한 수배의 경우도 동 별첨지침을 준용하고 있는 점에서 넓게는 공개적인 수배매체로 이해할 수 있다.

고인(증인)과 같은 기타의 인적수배에 활용가능하다. 출판기관(물)등을 통해 수배활동을 보충하는 경우에 주의할 것은 너무 자주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것이 범죄의 해명에 대해 기여하려는 일반 공중의 관심이나 자세를 무관심하게 바꿔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 나. 비례성의 원칙

출판기관(물)·공개매체를 수배에 투입하는 경우에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개별사례에 있어서 효과적인 형사소추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을 한편으로 하고, 피의자 또는 다른 해당 당사자들의 보호필요성이 있는 이해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상호 주의 깊게 이익형량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 다음과 같은 관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배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적인 수단(출판기관-인쇄물, 라디오, TV 등)을 투입하는 것은 범행을 아주 신속하게 밝힐 수 있고, 범죄인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한다. 범행을 신속하게 밝히고, 범인에게 유죄판결을 받아낸다는 것은, 그 범죄인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형사소추는 나아가 아주 의미 있는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효과적인 형사소추는 나아가 시민의 안전과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범죄투쟁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출판물 등에서 피의자의 이름이 거명된 채 수사절차가 알려짐을 통해 당사자의 명성에 아주 중요한 명예손상의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추후의 범인의 재사회화는 소송이전에 사안이 불필요하게 공개된다면 아주 어렵게 되어버릴 수 있다. 나아가 범죄에 연루된 기타 사람들 혹은 피의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들은 이러한 공개성을 통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범죄인이나 다른 관계인들을 노출시키고 손상을 주는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이해(존재가치나 기능)라는 관점에서도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수단, 즉 당사자에 대한 침해를 보다 최소화하는 수배수단이 충분한 효과를 약속할 수 없어 보이고, 보조적인 수배수단이 예상되는 범죄의 형벌이나 그 사안의 중요성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룰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출판기관지 등이 수배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다 파급효과가 적은 매체를 사용하는 것 또는 수배방법을 장소적으로 또는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수배대상자의

사진을 배포하는 것은 생략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제한함을 통해 피의자나 기타 관계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범죄에 조우한 자(피해자 등)의 보호필요성이 있는 이해관계도 고려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피해자의 이름 등 신원을 밝히는 것이 수배의 효과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이 수배의 목적을 위태화하지 않는 한은, 공개적인 수배 실시 이전에 그 피해자 등과 접촉·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 다. 출판기관지 등의 투입에 관한 결정

검사는 수사절차에 책임을 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검사가 -일반적으로는 경찰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 출판물 등을 통한 수배를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경찰은 출판물 등을 통한 수배수단의 투입을 위해서는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체할 수 없이 시급한 경우에는 경찰은 검찰의 동의없이 그러한 공적인 수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서 이제 개별적인 수배유형에 따른 특수한 내용들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있다.

#### 라. 이미 신원이 알려진 피의자에 대한 수배

이름이 알려져 있는 피의자(bekannte Tatverdächtige)를 수배하는 경우에 출판기관(공공매체)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범죄의 혐의가 확실(상당)하고 그 유형과 범위 면에서 아주 심각한 범행(중범죄, 아주 중요한 경범죄, 예를 들면 중상해, 많은 금액의 사기나 횡령, 연쇄범죄인)인 경우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구속영장이나 시설수용영장이 발부되어야만 한다. 지체할 수 없이 긴급한 경우에는 구속사유 등의 전제조건이 존재함으로써 족하다.

#### 마. 익명, 신원이 알려지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수배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수배에 있어서 공개적인 수배매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 범죄가 아주 중요한 범죄임을 전제한다. 제3자의 보호필요성이 있는 이익은

수배화면의 내용, 즉 수배요구서(Fahndungsersuchen)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통해 고려하여야 한다(달리 말해 수배화면의 내용구성을 적정하게 하여 제3자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경찰이 초동수사를 하는 경우에 그 기록이 검찰에 송부되기 전까지는 경찰도 공개수배매체를 통한 수배보조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설령 검사가 그러한 방법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가능하다. 즉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서 독자적인 공개매체를 통한 수배를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다.

#### 바. 참고인의 수배와 확정판결을 받고 도주한 자에 대한 수배

참고인(증인)수배에 있어서는 익명·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수배를 준용하고, 유죄선고를 받고 도주한 자에 대한 수배에 공개적인 수배매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적어도 1년 이상의 자유형을 집행 받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그에게 구속(구금)영장이 발부되었거나 그의 체포가 다른 원인에 의해, 예를 들면 추가적인 중요한 범죄행위의 위협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문, 출판물, 라디오, TV 등의 공개매체의 투입여부에 관해서는 형집행기관이 결정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Verurteilte) 수형시설로부터 도주하였다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형기관의 소장과 경찰이 공적인 매체를 통한 수배를 행할 수 있다.

#### 사. 형사소추목적 이외의 수배

형사소추의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특히 예방경찰적인 목적을 위해, 익명의 변사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실종자를 찾기 위하여 출판매체 등을 통한 수배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개적인 매체를 통한 수배가 형사소추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면서도 한편으로 형사소추에 기여하는 바도 있으며, 기타의 공무가 우선시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 4) 소 결

독일의 현행법 및 연방과 각주에 의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에 규정된 인터넷 수

배관련 조항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독일형사소송법은 1999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1조의c에서 비록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현행법상 수사의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제1문,<sup>86)</sup> 제163조 제1항 제2문<sup>87)</sup> 또는 특별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97조 이하의 규정에<sup>88)</sup> 근거한 형사소추를 위한 다양한 처분 외에 추가적인 수사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개정 전 제131조 규정과 연방가이드라인 제39호 내지 제43조만으로는 피의자의 수배와 참고인의 수사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9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인적수배와 물적 수배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양자는 이미 보았듯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다. 이외에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를 추가적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83조, 제485조 및 제48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종래에 허용성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수사절차에서의 공개적인 미디어 내지 의사소통의 수단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제131조 제3항 및 제131조의 b가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고, 본 연구와 관련된 인터넷을 통한 수배도 특히 제131조의 c로써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sup>89)</sup>

86) 제161조 제1항은 동법 제1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절차의 일반조항[즉 검사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수사할 의무(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실까지 조사할 의무(제2항), 범죄의 형량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의 수집의무를 규정하고(제3항), 연방법이나 주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처분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제4항)]에서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그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관청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모든 유형의 수사를 자신 스스로 또는 경찰관청 또는 경찰관을 통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7) 제163조 제1항 제2문은 경찰의 초동수사(Erster Zugriff)와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청·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야 하고, 사안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그 권한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유형의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8) 압수, 감청, 수색 등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89) Meyer-Goßner, Strafprozessordnung-Mit GVG und Nebengesetzen, 48. Aufl., 2005, 9 a. Abschnitt, Rn. 4-5; Pfeiffer, Strafprozeßordnung-Gerichtsverfassungsgesetz, 3. Aufl., 2001, § 131b, Rn. 4; Kühne, Strafprozessrecht-Eine systematische

피의자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공개(지명)수배의 요건은 제13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체류지·소재지에 대한 수사가 이러한 공개수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법관 또는 검사의 공개수배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공개수배의 보충성이라는 이러한 요구는 공개수배가 가지는 중요한 인격침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황임에도 검사나 판사의 명령을 즉시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관에 의한 긴급명령권이 인정되며, 물론 이러한 처분은 24시간 이내에 검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한편 공개수배에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에 있어서도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모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의 첨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가능하고, 범죄의 내용, 범죄지나 범죄 시간 및 범죄와 관련된 부수상황도 필요하다면 재량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명수배유형의 공개수배 외에도 지명통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개수사가 허용되며, 중요한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지명수배와 같이 확실한 혐의가 있고, 소재지수사가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 예상되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수배, 즉 공개지명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결정에서 핵심적인 잣대는 소위 형사소송절차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비례성의 원칙이며, 이는 모든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형사소추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 또는 다른 해당 관련자

---

Darstellung des deutschen und europäischen Strafverfahrensrechts, 6. Aufl., 2003, Rn. 550ff; Seitz, Strafverfolgungsmaßnahmen im Internet, 2004, S. 379ff; Volk, Grundkurs StPO, 4. Aufl., 2005, § 10 Rn. 64; Pätzelt, Probleme des Datenschutzes bei Staatsanwaltschaft und Gericht in Gegenwart und Zukunft, DRiZ, 2001, S. 24f., 31; Störzer, Vertrauen durch Information-PR-Aktivitäten der niederländischen Polizei und Nutzung des Internet, Kriminalistik, 1996, S. 811ff., 814; Soiné, Die Fahndungsvorschriften nach dem Strafverfahrensänderungsgesetz 1999, JR, 2002, S. 137ff; Ranft, Fahndung nach Beschuldigten und Zeugen gemäß dem StVÄG 1999, StV, 2002, S. 38ff; Brodersen, Das Strafverfahrensänderungsgesetz 1999, NJW 2000, S. 2536ff. 등.



들의 보호필요성이 있는 이익을 상호 주의 깊게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 즉 공개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범행의 신속한 해결과 범인의 체포, 이를 통한 추가 범행의 방지, 범죄인의 신속한 체포와 처벌을 통한 일반 예방효과의 고양, 시민의 안전보호와 효과적인 범죄투쟁의 기여 및 실현 등이다. 이에 대립하는 개인의 이익으로는 당사자의 명예훼손, 추후의 당해 범죄인의 재사회화의 어려움,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의 명예실추 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터넷 공개수배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즉 무엇보다 기존의 수사기관 내부의 정보에 불과했던 지명수배·통보의 자료를 해제하는 방법의 특이성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다. 이미 공공에 접근가능하게 열람 내지 배포된 자료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나아가 인터넷 전산망에 대한 해커의 공격이나 바이러스의 침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도 현재의 기술상황으로 100%의 방어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공개수배의 정보에 대한 조작가능성은 기존의 라디오나 TV 및 출판물을 통한 공개수배와는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sup>90)</sup> 아래에서는 이제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와 관련한 법적인 중요 논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이러한 수사처분의 허용성과 전제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접근해보기로 하자.

90) 이에 대해서는 Pätzel, Probleme des Datenschutzes bei Staatsanwaltschaft und Gericht in Gegenwart und Zukunft, DRiZ, 2001, S. 31; Pätzel, Das Internet als Fahndungshilfsmittel der Strafverfolgungsbehörden, NJW 3131ff., 3132; Störzer, Vertrauen durch Information, Kriminalistik 1996, S. 814; Soiné, Fahndung via Internet-1.Teil, NSTZ 1997, S. 166f.; Seitz, Strafverfolgungsmaßnahmen im Internet, S. 385.

## IV.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법적 논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 검토된 국가들 중에도 현재 이미 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를 포함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공개수배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와, 영장을 근거로 한 피의자 등의 체포방법의 하나로 공개수배 자체에 관한 법률의 명문규정 없이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적정한 수사활동과 체포제도운영에 위임하고 있는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허용·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비례성의 원칙’ 내지 ‘문제되는 이익사이의 형량’이라는 점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도 보여 진다. 달리 말해 법관 또는 검사에 의해 명령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도 중국적으로 동 처분의 허용성 여부는 비례성의 원칙(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도입 내지 운영되기 시작한 과정에서 법적인 논점으로 등장한 문제점들에 관한 논의를 따라 가 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점들은 대부분 공개수배에 마스크를 활용하는 것이나,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것<sup>91)</sup> 및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관한 논의에서 대부분 다루어져 왔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공개성이 가지는 논점들과 함께, 인터넷이 가지는 특수성이 야기하는 논점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간략하게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중요한 법적인 논점을 개관한다면, 특히 피의자 등의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 내지 자기정보통제권(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문제,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침해여부, 영장주의와 관련된 적정절차원칙의 침해문제, 범죄사실의 사전의 공개로 인한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여부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문제와 언론보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와의 충돌문제, 인터넷이 가진 국제성 내지 초국경성·범세계성에 따른 외국의 주권침해나 사법공조 및 범죄인

91) 특히 최근의 상세한 저술로는 김옥조,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그리고 범죄 보도의 함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특히 273쪽 이하.

인도 등과 관련한 법적·절차적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인 논쟁의 대상들은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 중복되어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즉 언론보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하여 무죄추정의 특권을 가진 피의자의 유죄판결 확정 전에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의자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자기정보통제권 등이 침해되며, 그 이면에 이러한 공개행위를 한 자의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며, 현행 법상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러한 기본권 침해성을 가진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상호 분리되기 어려울 정도로 착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 1. 개인의 기본권과 인터넷 공개수배<sup>92)</sup>

인터넷 공개수배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Menschenwürde), 사생활의 비밀, 명예, 초상권, 무죄추정의 권리(Unschuldvermutung), 자기정보결정권(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사회화·사회복귀의 권리(Recht auf Resozialisierung)<sup>93)</sup>, 평등권 등이다. 이러한 각각의 권리들은 상호 중복 내지 상하관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고, 동시에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논구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라는 항목으로 다루고, 다른 문제와 연관해서 등장하는 기본권의 문제는 적당한 곳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분석

#### (1) 초상권침해판결

대법원은 초상권침해와 관련된 판결에서 형사소추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개인

92) 국내의 헌법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정보보호나 정보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71쪽 이하, 99쪽 이하, 147쪽 이하 참조.

93) 재사회화 내지 사회복귀권의 개념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Lebach판결에 대해서는 김옥조, 앞의 책, 278쪽, 289쪽 이하 참조.

의 기본권침해가 어떠한 잣대를 통해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라는 측면에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보장이라는 원칙이 도출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침해가 있는가의 결정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인격권, 초상권 등)을 비교 형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sup>94)</sup>

## (2)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결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의 여러 유형 중에서 특히 개인의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 공개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되기위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를 밝힌 바 있다.<sup>95)</sup> 요약하자면 법률에 명백한 근거조항(지문날인자료를 범죄수사 등에 사용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확성·간편성·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sup>96)</sup> 즉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내지 정보적 자기결정권도, 비록 법률에서 그러한 정보를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정·필요한 (범죄수사)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94)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사의 동의에 비중을 두었고, 당사자의 동의 하에 취득된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취지였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95) 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주민등록법제17조의 8등 위헌확인 등].

96) 물론 이러한 다수의 입장에 대해서 1. 경찰이 정보를 수집·보관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다, 2.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즉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정보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범죄수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예방이나, 범죄정보수집 내지는 범죄예방을 빙자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 4.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위헌확인을 선언함이 마땅하다는 반대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러한 정보수집권한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개괄적으로 요약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문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수권조항 하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로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라면, 법익균형성 내지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법익의 균형성의 관점에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공익의 실현사이에 후자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내지 수사형성의 재량권이 형사소송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때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수사방법이라고 할 설득력 있는 논거의 제시는 어려워 보인다.

### (3) 지문날인관련 결정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의 지문의 강제날인과 관련하여 영장주의의 의미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중요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sup>97)</sup> 그 중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법률이 피의자에게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으나, 여하튼 이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는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으로 전제되므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손을 강제로 끌어 당겨 지문채취를 하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문채취의 강요는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물리적인 강요가 있는 경우만이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관점을 인터넷을 통한 공개지명수배에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지명수배는 우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체포하는 수사처분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강제력 내지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영장주의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가 없다는 것이 사실상 현대형의 수배방법, 즉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

97) 헌법재판소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전원재판부.

용하는 수사처분의 고유한 모습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종래의 수사 방법과는 다른 치명적인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영장주의의 대상이 되는 강제수사(처분)가 아니라고 본다면 결국은 수사 일반을 주도하는 원칙인 수사비례의 원칙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98)</sup> 한편 지문날인을 사실상 간접 강제하는 위와 같은 행위도 형사사법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은 정당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경제적이고 간편하면서도 확실성이 높은 적절한 방법이고,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제하고 그것도 보충적으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를 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의 침해되는 법익보다는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절차에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균형성이나 최소성을 일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결국 위에서 언급된 (1)과 (2)의 판결취지와 동일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 (4)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결정

한편 성범죄자신상공개와 관련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발췌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 . . .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 . .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 . .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것을...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헌법 제13조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청소년 성매수 등 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98) 아래의 영장주의에 관한 논의를 참고할 것.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범죄인들은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인하여 해당 기본권의 제한 여지를 일반인보다는 더 넓게 받고 있다...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 정도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차이를 들 수밖에 없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 청소년 정보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 밖의 일반 범죄는 서로 비교집단을 이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공개제도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상의 차별을 초래하나, 그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려는 수단간에 비례성을 벗어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청법원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나, 앞서 보았듯이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이고(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2조등 참조),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99)</sup>

이러한 합헌취지의 재판관들의 입장에 대해 위헌의견의 논거는 우선 인격권과 관련해

99) 헌법재판소 2003.6.26. 2002헌가14 전원재판부.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위헌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다수였다.

서 신상공개관련 법률은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헤겔의 ‘개의 비유’처럼, 개인의 사회적 인격상이 침해되는 신상공개를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즉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는 위헌법률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다양한 수단(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종합적인 시행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상공개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상공개는 형벌과 다른 목적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도 아니면서,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는 것으로 국가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피해자의 침해되는 기본권에 비해 그 범죄억제의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거나 불확실한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상공개는 정보적 자기결정권, 최소침해성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의 상실로 인격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것이다. 당혹스럽지만 자명한 것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소위 과잉금지, 최소침해, 법익균형 등등의 비례성의 원칙에 함유된 모든 척도들을 동일하게 적용한 법관들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견해의 위헌주장의 이유를 종합해 보면, 극단적으로는 범죄퇴치수단으로 그리 효과가 없는 수단을 사용한 점, 다른 처분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는 처분을 허용함으로써 보충성 내지는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다. 그렇다면 다른 처분으로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그리고 그 처분이 확실한 효과를 보장한다면 인격권의 침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달리 말해 이러한 입장을 인터넷을 통한 지명수배에 적용한다면, 다른 수배방법으로 중요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예를 들어 독일의 법규정에서 전제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과 같이)에는 동 처분이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위 결정에서 보여준 찬·반론 모두에 따를 때 이러한 해석에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형벌보다 더 가혹한 처분이라는 잣대는 유죄인의 신상공개와 인터넷을 통한 혐의자 내지 피의자의 정보공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표지로 보이나, 단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수배내용이 전제된다면<sup>100)</sup> 이러한

100) 좋은 예로 김옥조, 앞의 책, 283쪽에서는 범죄보도에 있어서, ‘범인검거’ 또는 ‘범인은 선생님이었다’는 식의 표현은 피하고, “경찰은 000을 口口 혐의로 체포했다”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하



찾대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반대견해의 평등원칙위반이라는 논거에 따르더라도 일반범죄인 중에서 중한 범죄, 즉 죄질이나 법정형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서 신속한 수배 내지는 일반인에게의 위험경고가 필요한 유형의 피의자에 제한한 인터넷 공개수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 (5) 소 결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처분이 야기하는 개인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합헌성 문제를 염두에 두고, 내용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대법원의 관련 판례의 검토결과를 요약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보장, 인격권, 초상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침해가 있는가의 결정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 등 위에서 언급한 기본권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인터넷을 통한 중요한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공개수배가 법익의 균형성적도 내지 개인이 기본권의 침해와 공익간의 형량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때, 후자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한다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사무 내지 수사형성의 재량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 헌법적인 관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에 의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공개지명수배는 임의수사의 한 유형이며, 공개수배는 임의수사의 한계인 수사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적법한 수사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 공개가 가지는 (강력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라는) 특징이 기존의 강제·임의처분의 구별기준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01)</sup>

한편 문제되는 처분이 보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피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피의자의 침해되는 법익보다는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절차에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자고 제안하고 있다.

101)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및 영장주의와 관련한 논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라는 점에서 균형성이나 최소성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타의 다른 처분으로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그리고 그 처분이 확실한 효과를 보장한다면 인격권의 침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을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즉 인터넷을 통한 지명수배는 다른 수배방법으로 중요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에 행해진다. 엄격한 기준 하에 이루어진다면 현행법 하에서도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수사처분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반범죄인 중에서 중한 범죄, 즉 죄질이나 법정형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서 신속한 수배 내지는 일반인에게의 위험경고에 필요한 유형의 피의자에 대한 인터넷 공개수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면, 현재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 하에서도 허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필자의 판단으로는 현행법 하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법익균형성과 피해최소성 및 보충성 등의 헌법적인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진다면 전혀 불법·위법한 혹은 법률에 근거없는·영장없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2)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연방정보보호위원회(회)·연방의회 의 입장

아래에서는 독일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선구자적 판결로 소개되는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센서스 관련 법률의 헌법소원에 관한 판결례를 보면서, 국내의 판결례에서 도출된 잠정적인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를 비교법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 (1)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센서스법 관련 결정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983년 소위 ‘인구센서스법’(Volkszählungsgesetz)<sup>102)</sup>

102) 독일연방대법원판결집 65권 1페이지 이하, 1983년 인구조사법·인구센서스법(약어로 Volkszählungsgesetz 1983: 원래의 법령은 das Gesetz über eine Volks-, Berufs-, Wohnungs- und Arbeitsstättenzählung, 1982년 3월 25일 발효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1983년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문(Urteil)에서<sup>103)</sup> 개인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①현대의 (발달한) 정보처리의 조건하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집, 저장, 사용 그리고 배포에 대항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할 때, 일반적인 인격권에 의해 도출된다. 이러한 기본권은 따라서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인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②이러한 ‘정보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의 제한은 단지 공공의 이익이 우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sup>104)</sup> 개인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합치적인 법적인 기초를 필요로 하고, 그 기초란 규범명확성(Normenklarheit)이라고 하는 법치국가적인 요구에 상응해야만 한다. 그러한 규정을 만들 때 입법자는 비례성의 원칙(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을 지켜야 한다. 또한 입법자는 인격권 침해에 대해 조직적이고 소송법적인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개인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제한에 대한 헌법적인 요구조건들은, 개별화되어 익명이 아닌 형태로 수집되고 처리되어지는 개인적인 정보와, 통계적인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통계적인 목적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에 있어서는 데이터에 대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목적구속성은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수집과 정보처리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제한이 설정되어야 법익균형성이 실현되는 것이다. ④1983년 인구센서스법의 조사프로그램은 인간의 존엄성과 조화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인 내용을 기록하거나 목록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규범명확성의 요구에도 상응하고 비례성에도 합치되나, 향후에 정보(자료)조사의 시행과 조직을 위해서, 특히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서 보충적이고 절차법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⑤ 1983년 인구센서스법 제9조 제1항 내지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전송·배포규정

12월 15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부에서, 1983년10월18일에서 19일에 걸친 구두심리에 근거하여 내린 판결(결정)문 참조.

103) BVerfGE 65, 1 - Volkszählung: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15. Dezember 1983 auf die mündliche Verhandlung vom 18. und 19. Oktober 1983 - 1 BvR 209, 269, 362, 420, 440, 484/83 in den Verfahren über die Verfassungsbeschwerden

104) 물론 우월하다는 것이 단순한 양적으로 근소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어의 의미대로 이해한다면 ‘아주 우월한’, ‘우세한 이익’이라고 해야 하겠다.

(Übermittlungsregelungen)은 일반적인 인격권에 충돌한다. 학문적 목적을 위해 배포하는 것은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제9조 제4항).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익이 우월하고(비례성 내지 균형성) 관련규범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규범명확성), 개인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도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이끌었고, 1996년 ‘연방과 주의 위임을 받은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 헌법재판소의 사고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형사수사절차에서의 공개수배에 관해 합의·권고함으로써 현행 형사소송법의 근간이 형성된 것이다.

## (2) 독일의 연방과 주들의 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독일의 연방과 주들의 위임을 받은 정보보호관련위원들(Die Konferenz der Datenschutzbeauftragten des Bundes und der Länder)<sup>105)</sup>은 무엇보다 형사절차에서 공개적인 수배에 대한 필수적인 법적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무엇보다 피의자, 기결수(형집행대기자)나 참고인(증인) 등에 대한 공개적인 수배에서는 항상 당사자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인적인 대상에 대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개수배처분에 대해서는 규범적으로 명확하고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의 원칙에 상응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현행법에서는<sup>106)</sup> 결여되어있는 이러한 요구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법자는 공개수배를 인정할 만한 유형을 미리 법률에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형설정에는 당연히 법익형량이 기준이 된다. ② 공개적인 수배는 입법자가 명시한 특정의 형벌구성요건의 침해에 대해서만 그리고 범행의 종류 또는 야기된 손해에 근거하여 비교적 중대성을 가지는 그러한 범죄행위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③ 공개적인 수배는 그

105) <http://www.datenschutz-berlin.de/jahresbe/96/anlage/anlage2.htm>(2006.8.1.방문).

106) 1999년 개정이전에도 제131조에서는 지명수배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을 두고 있었다.

보다도 약한 형태의 수배처분이 어떠한 충분한 효과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보충성, 최후수단성), ④ 배포영역의 제한과 매체(Medium)의 선택에 있어서 필요성여부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⑤ 익명의 혐의자,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경우와 증인의 공개적인 수배에 있어서, 과연 공개적인 수배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법관에게 유보하여야 한다. ⑥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긴급처분(명령)권이 인정되어질 수 있으나, 참고인(증인)에 대한 공개수배의 경우에는 그러한 긴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즉시 판사에게서 그러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sup>107)</sup> ⑦ 피의자에 대한 공개수배는 우선 구속명령(영장)이나 시설수용영장·감정유치장이 발부될 것이 전제되거나 영장의 발부가 수배결과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기대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⑧ 특히 참고인(증인)에 대한 수배에 있어서는 보다 더 비례성의 원칙의 심사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⑨ 참고인(증인)에 대한 공개수배는 그 수배의 유형과 범위가 그 증인이 형사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가지는(증인진술의) 의미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특히 참고인(증인)이 이미 이전의 신문에서 그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증인 및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면 공개수배 처분을 허용할 수 없다. ⑩ 감정유치·치료감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서 공개수배는 비례성의 원칙을 그 목적에 맞게 고려하여야 한다. ⑪ 형집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공개수배는 (a)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이 이루어지고, (b) 유죄선고를 받았음에도 형집행을 면탈하고 있는 자가 적어도 1년 이상의 잔여형을 살아야 하거나, (c) 특히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 즉 예를 들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착안점이 존재하여 즉시 그 유죄선고를 받은 자를 체포하여야 할 공공의 이익이 존재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⑫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개수

107) 이러한 요구조건은 참고인을 긴급체포·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하면 당연한 사실이다. 여기서 소위 구속·시설수용영장과 다른 체포장 내지 공개(지명)수배장의 존재가치 내지는 필요성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구속의 사유에는 도망하거나 죄적을 인멸하는 등의 사유가 포함되어있음에도, 소재불명 내지는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지명수배장을 발부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한번 더 확인한다는 의미를 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참고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출석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지명수배하는 것은 분명한 법률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 의해 지명수배장을 발부 받는 것은 마치 피의자에 대한 구속·시설수용영장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배, 즉 외국에서 수배를 위하여 독일이 (공조)요청하는 경우나 독일내의 수배를 위해 외국에서 (공조)요청해 오는 수배는 모두 자제되어야만 한다. ⑬ 미디어를 사용하는 공개수배는 형사보상법(StrEG)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기타의 다른 보상의무를 지는 형사소추처분유형에 포함되어야 한다. 형사보상법에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의무를 지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보상의무에 관한 결정을 공식·공개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는 중국적으로 연방의회의 개정형사소송법의 논의에서 반영되었고, 1999년 개정형사소송법의 각 조항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연방과 주의 정보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공개수배가 헌법의 기본권침해의 법률유보 내지는 기본권 보장의 내재적인 한계라는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갖추어 져야 할 조건을 제시한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결국 비례성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3)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어서 연방의회의 기본입장

#### 가. 독일 형사소송법 개정연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1983년의 연방대법원의 결정과<sup>108)</sup> 1996년 연방정보위원회의 권고안을 배경으로 하여, 독일의 입법자는 독일의 형사소송법을 1999년 개정함으로써<sup>109)</sup> 소위 수사처분의 현대화에 따른 공개수배에 대한 명문의 법적인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sup>110)</sup>

108) BVerfGE 65,1 = NJW 1984, 419; Pfeiffer, StPO, § 131 Einleitung.

109) 독일형사소송법은 현재(2006년 10월 1일) 1987년 4월 7일 공포된 법률이 2005년 8월 12일 DNA관련 법률을 형사소송법으로 도입하는 개정법률을 통해 제83차에 걸쳐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제131조 이하의 규정은 제44차 개정법률인 (2000.8.2.공포, 11.1.시행) '1999년 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법개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충에 관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Strafverfahrensrechts-Strafverfahrensänderungsgesetz 1999)'에 의해 새로이 추가된 규정들이다. 동 규정은 그 이후 제76차 개정법률인 2004년8월24일의 제1차 사법현대화법(Justizmodernisierungsgesetz) 제3조에 따라 또 다시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1999년 개정법률에 대한 세부내용은 BGI I, S. 1253 참조). 본 연구와 관계있는 9a 장은 2000년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형사절차상의 수사처분·수사활동’, ‘형사절차에서 획득된 인적 관련정보의 사용’ 및 ‘인적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처리하는 것과 이를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헌법에서 요구된, 법적 안정성과 법률명확성 및 형사소송법적·체계적인 이유에서 필수적인 상세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 이를 검찰 혹은 연방범죄수사국 등에 DNA확인을 위해 교부하는 등에 관한 법적인 권한을 분명히 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의회의 입법이유였다.<sup>111)</sup>

#### 나. 2000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내용

독일형사소송법에서 공개수배에 대한 규정의 체계적인 구조와 각 조항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① 수배, 특히 공개수배 및 인쇄 내지 공중매체를 사용하는 수배는 형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131의c조에서 분명한 법적인 근거·기초를 가지게 한다. ② 제160조는 이러한 수배 등에 관한 연방 내지 주의 규정과 소송의 기본원칙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보충한다(예를 들어 제160조 제4항). ③ 제161조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변경하고, 163조는 이에 맞추어 개정한다. 특히 경찰법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정보의 사용은, 특히 경찰법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투입된 경찰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확보한 주거 감청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형사소송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좁게 규정한다. ④ 장기간에 걸친 감시의 허용성은 제163조 이하에서 규정한다. ⑤ 제474조 내지 제480조에서는 서류의 정보를 배포하는 것 내지 법원, 검찰, 관청, 개인에게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인 목적으로 전송·전달하는 것이 규정된다. 제147조의 문서·소송서류열람은 새로운 규정에 맞게 손질한다. ⑥ 제481조는 어떠한 전제조건하에서 경찰관청이, 애당초 형사소추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적인 정보를 예방경

110) 하지만 이러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라는 특징을 가진 광범위한 수배처분에 대해 너무나 일반적인 조항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관, 즉 사법경찰관에게 까지 긴급처분권을 인정한 것은 의심스러운 입법자의 결단이라는 비판까지도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특정한 수사기관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수배가 과연 헌법질서하에서 허용되는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111) 이에 대해서는 특히 BT-Drucks 14/1484; Pfeiffer, StPO, § 131 Einleitung.

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그 밖에 제482조에서는 형사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검사가) 경찰에게 고지하는 규정을 둔다. ⑦ 제483조 내지 제491조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어떠한 한계 내에서 형사소송에서 획득된 개인의 정보가 데이터로 처리되고 어떻게 그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규정한다. ⑧ 제492조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데이터화된 자의 정보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sup>112)</sup> 이러한 기본취지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현행법조항의 의도와 그러한 각 조항들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 다. 중요 개별조문의 목적과 내용

##### 가) 제131조의 목적과 내용<sup>113)</sup>

이 조항은 근본적으로 개정 전 제131조 제1항의 규정과 일치하는데, 단지 지명수배장(Steckbrief)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에 대한 권한부여를 규정하고 있고, 구속영장 또는 시설수용영장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 외에 추가적인 전제조건, 즉 도주 또는 잠적·은신이라는 조건들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새로이 사용한 Ausschreibung zur Festnahme, 즉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수배·현상수배)’라는 법문은 특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던 개념인 Steckbrief(지명수배전단)은 오늘날 아주 다양하고 상이한 수배방식들은 더 이상 적정하게 표시할 수 없다는 점과 보충성(Subsidiarität)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정법에서 사용된 표현은 지금까지 부정적인 의미의 Steckbrief가 가진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그 보다 더 약한 형태의 수배처분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또는 시설수용영장의 존재라는 전제조건 외에 추가적인 전제조건, 피의자의 도주 또는 은신과 같은 조건들은 폐기되었다. 왜냐하면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는 단지 이미 존재하는 구속영장 또는 시설수용영장에 근거하여서 이미 이러한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구

112) BT-Drucksache 14/1484, S. 2.

113) 동조의 제1항, 제2항 제1문, 제3항 제2문은 2004년 8월 24일 개정으로 다시 내용이 바뀌었고, 2000년 당시 3개 항으로 된 조문이 2004년 4개항으로 늘어났다. 아래의 입법이유의 주요내용은 2000년 개정시의 조문번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속영장이나 시설수용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구속 내지 수용사유가 충족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도주나 기타 잠적한다는 행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인에게 향해진 공개수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 즉 중대한 범죄인 경우에, 이 보다는 더 침해의 정도가 약한 수배방법을 취했을 때는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거나 본질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에 관한 지시·명령은 기본적으로 법관 혹은 검사에게 유보되어있다. 양자는 동시에 제36조 제1항 제1문과는 달리 이 영역에서는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긴급성이 있는, 즉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보조공무원·수사관(Hilfsbeamte; Ermittlungspersonen)도 이러한 지시를 할 권한을 가진다.<sup>114)</sup> 이러한 긴급(체포)시의 특별권한·긴급권(Eilkompetenz)은 사실상 실무의 요구에 맞춘 것이다. 이러한 긴급권은 예를 들어 구속영장으로 찾고 있는 피의자가 도주할 준비를 한다는 착안점이 경찰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리고 즉각적인 처분이 이루어져야만 할 경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구속영장이나 시설수용영장이 발부되기 전 단계에 특수한 긴급사례에 있어서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의 가능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실무적인 필요성이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거의 체포직전의 범죄혐의자가 갑자기 도주하는 경우에 현대의 교통수단 내지 교통편의 연결이 너무 쉽고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지체 없이 초지역적인 수배조치가 이루어져야만함에도, 어떠한 이유로 영장담당판사를 즉시 내지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 없는 경우가 한 예이다.

구속영장 또는 시설수용영장의 발부에 관해 법관의 사후결정을 받아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만약 구속 또는 시설수용영장이 일주일내에 발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를 위한 공고의 전제조건이 결여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공모) 및 이러한 지명수배(공모)에 근거하여 야기된 모든 수배처분들은 즉시 종료되어야만 하는 것이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구속영장 또는 시설수용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 검사를 통한 또는 검찰수사관·사법경찰관을 통해 이루어진 체포를 위한 지명수배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정해진 법정 기간 내에 구속영장 또는 시설수

114) 2004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Ermittlungsbeamte로 개정되었다. 수사경찰·사법경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내용적으로 관할구역 내에서 검사의 명령을 받는 수사관이라는 의미이다.

용영장의 발부에 관한 결정만이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속영장이나 시설수용영장이 법정 기간 내에 발부되지 아니하면, 그러한 처분의 전제조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체포를 위한 공모와 이러한 공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모든 수배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지체 없이 중단되어야만 한다. 혼동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한 시민의 부담을 배제시키기 위해, 수배대상자에 대한 가능한 정확하고 상세한 인적정보의 게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인적 정보를 넘어서 수배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단지 인적인 정보에 제시만으로도 혼동의 염려가 배제될 수 없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만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이다. 첨부되어질 수 있는 사진들은 공개수배를 위하여 적합한 사진자료들이며, 소위 몽타주사진(Phantombilder)도 동향의 사진 속에 포함된다. 제2문에서 표현된 범죄사실, 장소, 시간 그 밖의 범죄관련 상황도 체포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한 공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제131조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수배의 대상을 구속영장 등이 발부된 자로 함으로써 기본권침해와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인 것이며, 법관만이 아니라 검사도 지명수배장(명령)을 발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관에 의한 유일한 통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시설수용영장과 별도의 지명수배영장에 대한 영장주의를 원칙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긴급체포상황에서는 사전의 구속영장 등이 없이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사후 1주일 이내에 판사의 구속영장·시설수용영장심사를 받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달리 말해 사후영장의 발부가 거절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지명수배명령은 유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법관에 의한 통제 내지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라는 의미는 많이 상실되어버린다. 마치 지명수배장이라는 어감이 영장처럼 들리고, 이러한 지명수배가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법률화되었다고 평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도 당연히 수사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임의수사라고 해서 (예를 들면 본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어도) 당사자의 기본권침해가 항상 근소하거나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나) 제131조의 a의 목적과 내용

이 조항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증인)의 체류지·소재지 수사를 위해 지명수배(통보)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면허증의 압류·압수(Sicherstellung)를 위한 피의자의 수배공고,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경우 및 공개수배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의 체류지 조사를 위한 지명수배공고의 허용성을 단지 피의자 또는 증인의 체류지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이유로 들고 있다. 좀더 부담이 적은 처분을 우선하라는 문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곧 체류지수사를 위한 수배공고에서는 일반적인 비례성의 원칙이 고려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별적인 사례마다 피의자 또는 증인의 체류지수사라는 목적이 지명통보보다 더 경미한 침해적 성격을 가지는 수사처분을 통해서, 즉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신고관청에 대한 사실조회로 혹은 그 밖에 형사소송법 제160조 이하에 따른 정보취득을 통해 도달될 수 있는지 여부가 신중하게 고려·형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량에 있어서는 체류지수사목적에 위한 지명통보를 통해서 야기되는 피의자의 처지, 즉 일반대중에게 일방적이고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불이익을 형사절차의 피의자로서 그의 사회적인 영역(이웃에게 물어본다거나 직장동료에게 물어보는 등)에서 입게 될 손해와 비교해 보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sup>115)</sup> 달리 말해 공개의 범위를 좁혀 접근하는 방법부터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체류지수사를 목적으로 한 공개수배의 처분의 허용성을 결국 보충성이라는 아주 엄격한 전제조건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체류지를 수사하기 위한 지명통보를 공개수사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지 수배 자체가 다른 방법으로는 결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라야 한다. 공개수배를 사용하는 것은 나아가 피의자가 중요한 범죄에 대해 확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 제한된다. 이와 같은 지명통보유형의 공개수배를 위한 규정은 특히 비례성의 원칙을 특별히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한 수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동조 3항은 인터넷을 통한 수배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도로 도입된 것이며, 보다 더 신중하게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결국 동조의 도입과정에서 입법자의 의사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차이 및 피의자지

115) BT-Drucksache 14/1484, S. 21.

명통보와 참고인지명통보가 가지는 내용의 차이를 비례성의 원칙(보충성의 원칙)의 고려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라는 요구였다. 따라서 동 조항의 실질적인 의미는 공개수배는 가능한 최후수단으로, 중요한 범죄에 제한하여, 수배의 내용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추상적인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주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당사자의 법익침해의 최소성이라는 관점과 수사활동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이다.

#### 다) 제131조의b의 목적과 내용

동조는 (미제)사건의 실마리(Aufklärungsfahndung)와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배(Identitätsfahndung)의 허용성, 즉 형사범죄의 사실 내지 실체를 밝히거나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처분의 허용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개적인 수배를 위해 적합한 사진자료, 특히 피의자의 몽타췌사진을 이용한 공개적인 수배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은 우선 중요한 의미를 가진 범행의 혐의를 전제하고, 보충성조항, 즉 다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 거의 효과를 약속할 수 없고, 사건의 해명이라는 결과를 본질적으로 어렵게 할 것인가라는 보충성판단에 따라 허용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CC-TV에서 발췌한 사진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몽타췌사진 등이 제시되고 제보자를 구하는 형태의 공개수배가 이러한 유형에 속할 것이다. 참고인을 찾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처분의 허용성판단은 해당된 참고인의 보호를 위해서 아주 엄격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즉 다른 수배처분이 가망성이 없거나 본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요건을 설정한 것이다. 여기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확실한 혐의가 있다는 조건이 결여되어있는 것은 사실을 완전하게 밝히는 것에 대해 가지는 피의자의 이익이 (참고인의 보호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해 수배의 종류 중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수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억울한 피의자에 대해 목격자를 찾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길거리에 걸린 사고목격자를 찾는 프래카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금 수배의 대상이 되는 자가 피의자가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밝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진을 게시하여 참

고인을 수배할 경우에 이를 보는 일반인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를 피의자로 착각하거나 피의자와 유사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16)</sup>

#### 라) 131조의c의<sup>117)</sup> 목적과 내용

동조는 기술한 개정형사소송법 제131조의a 및 제131조의b에 규정된 처분의 명령권자에 대한 규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위에서 각각 언급하였다.<sup>118)</sup>

### 3) 소 결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sup>119)</sup> 우선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그 근거조항이 법률에 명시되어있는가라는 관점에서의 ‘규범명확성의 원칙’을 일단 논외로 하다면 기본권침해의 헌법적·기본적인 전제인 소위 ‘비례성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규범의 존부와 무관하게 내용적인 기본권침해의 적정성이 관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갖추어지기 이전에도 지명수배에 관한 근거조항인 제131조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공개수배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가능성은 위에서 언급한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논의되었고,<sup>120)</sup> 본질적으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조항을 두었다는 것 외에 실질적인

116) BT-Drucksache 14/1484, S. 21.

117) 2004.8.24. 개정으로 제1항과 제2항은 다시 개정되었다.

118) BT-Drucksache 14/1484, S. 21.

119) 물론 독일의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이 명문화된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검사이외에 수사관(여기에는 국내의 사법경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까지 지명수배명령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법치국가적으로 문제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으며, 무엇보다 기본권의 침해가 중대한 수사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조항으로 접근한 점 등에 대해 심각한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이에 대해서는 특히 Ranft, Fahndung nach Beschuldigten und Zeugen gemäß dem StVÄG 1999, StV, 2002, S. 38ff. 참조).

120) 특히 Soiné, Fahndung via Internet-1. Teil, NStZ 1997, S. 166ff; Soiné, Fahndung via Internet-2. Teil, NStZ 1997, 321f; Jung, Personenfahndung im Internet-Ein

차이는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지명수배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법관만이 아니라 검사도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감독이라는 관점은 유지되기 어렵다. 하지만 지명수배장(Steckbrief)이라는 제도가 법률적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었던 당시의 입법과 현재 지명수배에 관한 규정을 검찰과 경찰이 지침이나 예규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공개수배의 법적인 근거에서 현저한 차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면, 인터넷(매스미디어를 포함)을 통한 공개수배가 수사의 일반 조항을 근거로 인정·운영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강제처분으로 법적인 근거, 특히 영장을 필요로 하는 처분이므로 영장없이 위법한 수사처분인가 하는 점에 논의가 옮겨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없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처분이라고 한다면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유형의 공개수배는 위헌·위법적인 수사방법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구속 및 기타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적지 않은 피의사실공포죄의 (민사)판결에서 보여주듯이 이미 일정한 부분에서 공개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공익과 당사자의 피해법익의 형량에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구속영장이나 (치료감호) 시설수용영장이 발부가 없는 상태에서도 긴급명령권을 검사나 수사관에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엄격한 영장주의를 지킬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구속영장에서 피의자의 도주가능성 및 잠적가능성이 영장의 발부사유로 규정되어있음에도 체포·소재지수사를 위한 (공개·비공개)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를 위한 추가적인 명령(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후자의 기본권침해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점은 검사(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관)에 의해서도 지명수배·통보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속·시설수용영장과 독립된 체포·소재지수사를 위한 지명수배(장)명령의 의미는 상당부분 상실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Verstoß geg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http://www.namiso.de/pub02, htm](http://www.namiso.de/pub02.htm); Pätzelt, Das Internet als Fahndungshilfsmittel der Strafverfolgungsbehörden, NJW 1997, S. 3131f; Wentz, Persönlichkeitsschutz und Informationsrecht der Öffentlichkeit im Strafverfahren, StV, 1988, 216ff. 및 그곳에서 소개된 다수의 문헌 참조.

결국 독일을 제외한 국가와 독일 현행법을 비교할 때, 공개·비공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에서 법관의 체포·구속·시설수용영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의 영장을 통해서 구속 등의 사유가 있음에 대한 법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 하다. 하지만 체포 내지 소재지 수사를 위해서 별도의 지명수배장 내지 지명통보명령(장)이 있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수사기관인 검찰에 명령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단지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가 하는 것뿐이다. 즉 독일의 경우, 법관과 검사가 동등한 권한으로 지명수배(명령)를 할 수 있고, 후자의 명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이미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재차 개입·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관건은 소위 비례성의 원칙을 어떻게 확보·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121)</sup> 이러한 판단이 타당한 것인가를 추가적인 논점의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 2. 인터넷 공개수배의 법적 성격

위에서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공개)지명수배·통보는 이미 (체포·)구속영장이나 시설수용(감정유치)영장이 발부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영장이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제 국가에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지명수배를 위한 별도의 영장 내지는 명령장이 필요한

121) 현재 우리의 법상태·실무에 비추어 볼 때, 지명수배의 전제로서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을 전제하고 있고, 지명수배·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를 검거하지 못한 경우에, 강력법, 중요폭력 및 도범, 기타 중요한 범죄에 한하여 공개수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개)지명수배의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독일법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지 검찰과 경찰이 독자적으로 지명수배·통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모습은 한편으로 일본의 지명수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6개월간 20명의 피의자를 한도로 하여 공개전단과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로 중요지명피의자의 공개수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대상자들에게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구체적인 논의의 기초가 결여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다.

가가 핵심적인 논의의 대상이 된다.

미국·일본·한국의 경우에는 체포·구속영장 등의 발부를 통해 피의자의 신병구속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사실이 입증되면, 이러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한 공개수배를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되고 있다면, 독일은 이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공개·비공개)의 지명수배·통보 자체에 대한 명령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도 경우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검찰과 경찰의 수사담당관)에게 지명수배·통보명령권이 인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관의 명령장이라는 요구가 절대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독일의 지명수배·통보가 국가·수사기관 내부의 정보망을 통한 정보의 공개라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령장이 필요하지 않으나,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경우로 나타날 때에만 이에 대한 새로운 명령장(영장)이 필요할 것인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경우 공개와 비공개를 불문하고 지명수배·통보의 경우에 법원 또는 검사의 명령을 필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가 부분적으로 중복된 요구(물론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재차의 심사가 해로울 것은 없으나)는 아닌지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지명수배 및 신문이나 TV에서의 공개 및 전단이나 신문기사화한 공개수배방법은 강제 처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sup>122)</sup> 이러한 입장들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도 도주하거나 숨은 피의자를 널리 체포 의뢰하여 이를 체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배범에 대하여 체포라는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강제 처분이 명백하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sup>123)124)</sup>

122) 지명수배자에 대해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처분의 강제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현행 경찰청의 지명수배규칙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중요지명피의자종합수배대상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지명수배 내지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자체를 강제처분·수사로 보는 경향이 짙다(대표적으로 이상대, 앞의 글, 143쪽에서는 지명수배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법률적인 근거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23)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0, 134쪽에 따르면 지명수배는 그 자체가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임의수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신문, 방송, TV, 노상프레카드



## 1) 인터넷 공개수배의 강제처분성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기존의 강제처분이라는 개념이 함유하고 있는 속성들로 새로운 유형의 수사방법이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를 판단·구별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달리 말해 폭행이나 협박, 고문이나 강요 등의 물리적인 강제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경우에도 이러한 처분이 용의자나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적 자기결정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면, 전형적으로 전통적인 불법행위가 사용되지 않으면서도 용의자나 피의자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침해하는 수단이다. 우선 인터넷 공개수배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공개수배대상자가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현행범체포의 형식으로 체포되는 경우에 체포와 구속 자체가 가지는 강제처분적 성격을 일단 별론으로 하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피의자로 공개되는 자체가 강제수사·처분에 속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sup>125)</sup>

#### 가. 형식설

이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강제처분의 유형만을 강제수사로 분류한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소개된다.<sup>126)</sup> 이러

---

나아가서 인터넷 등을 사용하여 지명수배를 일반인에게 유포시킬 수 있지만 공개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고, 강제수사로서의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한다. 즉 지명수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기본권침해의 정도) 임의수사가 되기도 하고 강제수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124) 조대환, 앞의 글, 73쪽; 이상대, 앞의 글, 제145쪽에서는 1997년 이전의 실무상 영장없이 지명수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지명수배를 운영하는 것은 강제처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다.

125) 이에 관한 논의는 일본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長沼範良/田中 開/寺崎 嘉博(著),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5, 61頁 以下.

126)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1982, 108쪽; 김기두, 형사소송법, 전정신판, 1987, 204쪽; 차용석,

한 입장에 따른다면 수배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형사소송법하에서 공개수배는 강제수사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하에서 세부적인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물리적 강제력없는 수사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자리매김을 해 줘야 할지는 미지수다. 법률에 근거없는 강제수사이므로 금지할 것인지, 법적인 근거마련이 입법자에 의해 이루어질 때까지 수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겸억적이거나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 나. 실질설

이러한 구별기준에 따르면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는 수사방법에서 행해지는 물리적 강제력행사유무<sup>127)</sup>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sup>128)</sup> 이러한 견해들 중 후자의 입장에 따른다면, 동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일방의 동의에 의한 도청, 임의동행, 승낙유치, 거짓말 탐지기사용 등도 모두 임의수사로 된다는 비판이 있지만,<sup>129)</sup> 여하튼 인터넷 공개수배는 본질적으로 잠적 내지 도망한 피의자 등 소재파악이 어려운 자에 대한 수배라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강제수사가 될 것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물리적 강제력행사가 없다는 점에서 임의수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영장주의 등 강제처분에 적합한 법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에서 본 형식설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신체 등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만이 국가공권력을 통한 개인의 권리침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새로운 수사방법을 법적인 통제 밖으로 방치하게 되는 점에 비판이 가해질 것이다.

#### 다. 적법절차기준설

이 입장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이 정한 적법절차원칙(영장주의 또는 법률에

형사소송법, 1997, 106쪽.

127) 정영석, 형사소송법, 1982, 244쪽.

128) 김일수,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한계, 치안논총 제9집, 1992, 6쪽에서 당사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129) 신양균, 형사소송법, 113쪽.

의한 기본권침해)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처분이 법공동체가 공유하는 최저한도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수사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의수사라는 것이다.<sup>130)</sup> 기본권 침해시에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입장 중에는 소위 영장의 요부라는 목적론적 관점을 도입하여, 강제의 유무, 법적 의무부과의 여부, 법익침해의 유무를 기준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별하지는 절충적인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는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에도 요구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구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거나 구별기준이 다양하여 어느 기준에 따르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구별기준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sup>131)</sup> 이러한 입장에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를 평가한다면 수배대상자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초상권, 정보적 자기결정권,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로 분류될 것이다. 물론 최저한도의 기본권인권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현행법상 어떠한 영장을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sup>132)</sup>

#### 라. 기본권(침해)기준설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구별기준은 새로이 개발되는 수사방법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강제수사의 범위를 가능하다면 넓게 잡으면서 그 적용이 간명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수사활동에 의한 기본권침해유무로 임의·강제수사를 구별하지는 입장이 있다.<sup>133)</sup>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수사처분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임의수사가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의 수사방법이 기본권의 헌법상 한계나 범

130) 송광섭, 형사소송법, 354쪽.

131) 신양균, 형사소송법, 113-114쪽.

132) 물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시에 동 영장의 집행이 피의자의 도주나 잠적 등 소재파악의 불능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지명수배 내지 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는 유형의 영장집행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함으로써 현실적인 지명(공개)수배영장의 역할을 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133)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처분(Zwangsmäßnahme)은 기본권의 침해성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Volk, Grundkurs der StPO., 4. Aufl., § 10 Rn. 5ff.

물에 의한 제한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134)</sup> 이에 대해서는 수사활동 자체가 근본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모든 수사활동은 강제수사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 학설의 가장 난점은 기본권침해의 여부나 정도에 따라 하나의 새로운 수사활동이 임의수사가 되기도 하고 강제수사가 되기도 하는 특성을 보임으로서, 결국은 후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지배함으로써 영장없이 그러한 수사활동은 모두 위법한 수사가 된다는 것이고, 특히 그러한 수사 활동 자체에 대해 영장발부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활동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하는 난점이 생긴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따를 때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본다면 강제수사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 2) 소 결

현행법상 특별한 영장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수사처분이 임의수사인지,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인지의 구별기준에 관한 현재까지의 논의에 따를 때, 결론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강제처분에 속한다는 것이 학설의 다수이자 실무적인 관점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 주요 논거는 우선 공개수배보다는 내부적인 정보공개에 그치는 지명수배도 이미 도주하거나 숨은 피의자를 널리 체포 의뢰하여 이를 체포라는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므로 강제처분이라는 것이다.<sup>135)</sup>

나아가 ‘경찰청사람들’이나 ‘사건 25시’등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범인현상수배도 용의자나 피의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매스컴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그 자체로서 이미 그들이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듦으로써 구속이나 형벌보다 더 중대한 기본권침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독일의 수배장(Steckbrief) 같은 법원의 영장에 의하고, 특히 매스컴을 이용한

134)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7판, 2006, 218-219쪽; 경향적으로 신양균, 형사소송법, 114쪽.

135) 이상대, 앞의 글, 145쪽; 조대환, 앞의 글, 681쪽. 황정익, 지명수배 등에 의한 체포의 합법성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8호(1996), 222쪽.

공개수배는, ① 중대한 범죄에 국한하고, ② 구속영장이나 수배장이 발부될 것을 전제로, ③ 다른 수사방법에 의한 체포가 불가능할 때만, ④ 그것도 검사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36)</sup>

한편 지명수배자체는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수사지만, 공개수배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로 보아야 하고,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주장도 보인다.<sup>137)</sup> 이러한 입장은 수사기관내부의 지명수배·통보처분과 공개수배를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공개수배는 기본권침해가 중대하므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마스크를 통한 공개수배와 관련하여 지명수배 및 공개수배의 대상자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자라는 점에서 지명수배는 영장집행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지명수배 및 공개수배는 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강제처분으로 분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주장도 발견된다.<sup>138)</sup>

이상의 (인터넷·매스미디어를 통한) 공개수배가 강제처분·수사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주장들을 종합하면 우선적으로 지명수배 자체는 임의수사이거나, 기본권침해가 중한 공개수배는 강제수사라는 입장과, 지명수배 (및 공개수배) 자체가 이미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수사라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후자의 주장은 우선 지명수배에 체포나 구속영장을 전제한다는 것은 현행 경찰청 및 대검찰청의 예규나 지침에서 규정한 것이지 형사소송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영장없이 지명수배를 하는 경우는 결국 임의수사가 된다는 수용하기 힘든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논리적인 흠결이 보인다. 지명수배(나 공개수배)는 최종적으로 체포와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강제수사라는 것도 지명수배나 공개수배와 그에 따른 성공한 후속조치로 체포나 구속을 구별하지 않은 점에서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를 지명수배한다고 할 때, 체포나 구속의 강제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개’ 자체가 가지는 강제처분성, 즉 인권침해성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 인터넷 수배가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혹은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면 강

136)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270쪽.

137) 신양균, 형사소송법, 134쪽.

138) 하태훈, 마스크를 이용한 피의자 공개수배, 안암법학, 11권, 2000, 8., 177쪽.

제처분에 속하는 수사처분이 되고, 그렇다면 영장이 필요한 수사활동이지만, 현행법은 예를 들어 독일·대만·중국법과 같은<sup>139)</sup> 지명수배장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방적인 기본권 침해성만을 부각시켜 영장없는 수사라고 주장한다면 현행 지명수배제도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경찰청의 중요피의자지명수배는 모두 위법수사가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관건은 지명수배 내지 공개수배 자체에 그 전제가 되는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것인가와,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현재의 법상 태에서는 소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아닌 수배 자체를 위한 (지명·공개)수배영장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어떠한 형태이건 (인터넷) 공개수배는 위법한 수사처분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해석론적인 해결책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미국, 일본,<sup>140)</sup> 영국 등에서<sup>141)</sup> 법률적인 명백한 수배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이도,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을 통한 체포의 방법의 한 유형으로 사용되는 수배제도는 현행 법적으로 전혀 정당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강제수사로서의 인터넷 공개수배의 근거를 법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공개수배를 임의수사(기본권침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의미)<sup>142)</sup>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내지 기준은 없는가라는 점, 즉 현행의 인터넷 수배를 적법절차의

139) 조대환,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3., 75쪽 참조.

140) 일본은 비록 형사소송법에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1998년 10월 1일 警察廳丁 刑企發 第136號에서 새로운 범죄현상에 따른 피의자의 공개수사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고, 공개수사의 방법으로 사진 등의 화상기록과 그 밖의 일러스터, 몽타주 음성기록을 활용할 수 있고, 보도기관, 인터넷, 포스터, 전단 등 각종의 공공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피의자의 명예 등 공개수사의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141)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수배제도에 대해서는 오경식,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배제도에 관한 일고찰, 치안정책연구 8호(1997), 10쪽 이하.

142) 사실상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불문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수사방법은 없다고 해야 한다. 단지 강제수사는 기본권침해가 중대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법원)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영장주의)는 의미에서 임의수사와 구별될 뿐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미리 예상치 못한 중대한 기본권침해가능한 수사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와 그러한 효율적인 수사기법을 투입하여 효과적인 형사소추를 가능케 하는 공익사이의 갈등은 시대를 불문하고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외시키는 것은 문명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야 한다.

요구와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수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법한 수사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를 임의수사로 보게 되는 입장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제도가 특별히 법률에 강제수사로 규정된 바 없다는 것과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는다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본권 침해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입장에 따를 때에도 일반인의 알권리, 재범방지를 통한 일반인의 기본권보호라는 관점 및 엄격하게 중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도주·잠적 등의 조건과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에 제한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를 운용한다고 할 때에도 그것이 수사비례의 원칙을 넘어선 수배대상자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초상권, 정보적 자기결정권, 무죄추정의 권리 등)의 본질적인 침해인지도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사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강제수사보다는 임의수사가 당사자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약할 것이라는 점에서 임의수사가 우선이라는 것과,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불문하고 수사활동으로 침해될 피의자 등의 이익과 수사활동을 통해 획득되는 일반인 내지 국가·사회의 이익은 비교 형량되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은 임의수사나 강제수사나를 불문한다는 점을 혼돈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적으로 특정한 요구조건이 제시되지 아니한(새로운) 수사방법은 수사절차의 자유로운 형성권이라고 하는 원칙에 비추어 범죄의 해명과 수사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하면서도 필요한 처분이고, 그 수사처분이 가져올 당사자들의 법익침해와 균형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강제수사인지 임의수사인지를 불문하고 헌법적인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달리 말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를 강제수사라고 하건, 임의수사라고 하건, 중국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사방법인가 하는 점은 소위 헌법상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일정한 요건을 전제한 상태에서 당해 처분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파악한다면 영장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비례성의 심사는 필수적인 영장발부의 요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존의 논의는 주로 용의·혐의·피의자에 대한 지명·공개수배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참고인·증인, 수형자, 실종자, 변사자, 장물, 증거물 등에 대한 수배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이 모든 대상에 대한 지명·공개수배는 동일한 척도로 접근할 문제인지, 즉 모두 강제수사인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실명과 사진을 게시하여 수배하는 피의자수배와 단순한 사건을 게시하면서 용의자의 제보를 촉구하는 수배의 형태에서<sup>143)</sup>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는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상태 하에서도 기본권침해설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제한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144)</sup> 하지만 참고인에 대해 공개수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함유하고 있다.

### 3. 무죄추정의 법리와 공개수배의 관계

인터넷 공개수배가 허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한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sup>145)</sup>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단지 피의자에 불과한 자를 공개적으로 수배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에<sup>146)</sup> 반한다는 것이다.<sup>147)</sup>

143) 예를 들어 참고인소재수사(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사법경찰관집무규칙 제57조의2).

144) 그럼에도 오히려 경찰청의 공개수배는 피의자에 대한 것이고, 참고인, 증인, 수형자, 실종자, 변사자, 장물, 증거물 수배 등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인터넷을 통한 효과적인 형사소추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145) 국내에서는 특히 하태훈, 매스컴을 이용한 피의자(내지 용의자) 공개수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암법학, 171쪽 이하.

146) 사실상 무죄추정의 법리는 가장 모호한 원칙중의 하나이다. 유럽의 인권협약(Menschenrechtskonvention) 6조 제1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은 상호 어떤 관계인지, 각자는 어떠한 내용을 담은 원칙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대표적인 문헌으로는 Eisenberg, Beweisrecht der StPO 2. Aufl., 1996, Rn. 90ff.) 때로는 동일한 의미로 때로는 상호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그 실질적인 차이점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국내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은 김정환, 형사소송에서의 추정이론,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47) 물론 이러한 주장을 조금 더 정치하게 편다면, 무죄추정을 받는 자를 공개수배함으로써, 일면으로는 경우에 따라 법관에게 유죄의 예단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국민이 그 수배대상자를 단지 피의자로 생각하지 않고 확실한 범죄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무죄추정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수배대상자는 단지 피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개하는가에 의해 어느 정도 완



## 1)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인신구속 및 구속기간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풀고 있다.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여러 규정 중의 하나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피고인의 무죄추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죄추정권은, 공판절차에 선행하는 수사절차의 단계에 위치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인정된다. . . .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의 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 . .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구속은 예외적으로 구속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허용될 경우라도 그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sup>148)</sup>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에게도 인정되며,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즉 국민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투쟁을 위한 처분은 당해 처분이외의 방법에 의해서는 범죄의 효과적인 투쟁이 기대될 수 없을 때, 최후수단 내지는 보충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구속이라는 처분도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할 때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화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가 더욱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148) 헌법재판소 2003. 11. 27.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포승을 사용하는 등의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를 다른 판결에서,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sup>149)</sup> 동 판결에서 분명한 대법원의 입장은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특권을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대표적으로 구속사유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처분(기본권 침해)이 있어도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다 쉽게 표현한다면 결국 피의자의 혐의의 정도, 기대되는 형벌의 정도, 도주의 가능성 내지는 잠적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단지 피의자에 불과한 자를 구속하는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구속사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자체에 의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다른 기본권의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충돌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도 동일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 3) 소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진범이라고 보도되는 경우, 무죄의 선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149)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동일한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명에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며, 기결수와 미결수의 처우를 달리 하기 위하여 특히 무죄추정의 규정을 헌법에 두었다는 주장은<sup>150)</sup> 반론을 허용치 않는 당연한 주장이다.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진범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법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공개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공개지명수배가 무죄추정의 보호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진범보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공개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모든 피의자가 유죄선고를 받는 것도 아니며, 아직은 유죄가 아님이 분명히 제시된 공개수배에서 체포된 자가 추후에 무죄로 방면될 경우에 정정보도나 인터넷을 통한 무죄선고사실의 고지 등이 침해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적절한 회복책이 될 것인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형사배상 내지 보상의 길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질 논쟁거리이다.

미결수와 기결수의 구별은 인신이 구속된 자 중 기결수와 미결수를 동일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혐의에 기초하여, 증거인멸이나 주거부정 또는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조건에 의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밀행의 방법으로는 체포하여 구속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이를 공개로 수배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에서 보듯이, 공개처분에서 발생하는 피의자의 불이익이 도대체 허용될 수 있는 불이익인지, 그렇다면 그러한 불이익을 최소한에 그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인터넷 공개수배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법리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면, 공개수배가 도대체 피의자에게 행해질 수 있는 처분인지, 어떠한 피의자에게 그러한 공개수배가 허용되는 불이익이 될 것인지, 그러한 처분이 허용된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장 필요최소한의 불이익이 될 것인지에 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접근 방법일 것이다. 즉 비교하여야 할 대상은 수사기관이 비밀리에 피의자를 수배·체포·구속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피의자

150)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5, 567쪽;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 434쪽; 김기영, 헌법강의, 2002, 551쪽 등.

를 수배하고 이를 통한 시민의 제보 등을 수단으로 체포·구속하는 것의 차이이며, 어떠한 경우에 기본권의 침해가 보다 중한 수사처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답도 헌법상의 기본권침해의 법률유보 내지 공권력행사의 합헌성을 결정하는 기준인 비례성의 원칙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일반의 범죄인에게는 발부되지 않을 체포·구속영장의 발부, 이러한 체포·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 소재지파악·신병확보의 노력의 무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 다른 수배방법의 무효과성(의 예상), 추가적인 범죄의 위험 등은 위에서 판례가 언급한 구속사유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엄격한 요건이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익들이고, 이러한 공익은 피의자가 체포·구속되는 것 외에 공개적으로 수배되어 입게 될 인간의 존엄성(사생활의 비밀, 정보적 자기결정권, 명예 등)에 대한 침해와 비교 형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허용되는 수사방법인가 혹은 무죄추정의 법리에 반하지 않는가하는 것은 결국 비례성을 지킨 공개수배는 합헌·적법이라는 대답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4. 인터넷 공개수배와 피의사실 공표죄

매스미디어(TV, Radio, 신문·잡지 등 각종의 인쇄물,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수배전단 등)나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도주한 수형자를 수배하는 경우가 아닌 한 아직 유죄의 확정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배도 피의자에 대한 수배와 피고인에 대한 수배로 나눌 수 있으나, 공소제기이후의 수사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사실상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허용되는가의 논의의 주요대상은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의 인터넷 공개수배이다. 한편 피의사실공표죄도 공판청구 전에 이를 공표하는 것이므로 결국 아래의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논의는 인터넷 공개수배와 피의사실의 마스크를 통한 공개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본 연구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sup>151)</sup>

151) 언론기관의 입장에서의 범죄보도와 관련한 상세한 접근은 김옥조,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록 형사범으로서 다른 사안은 아니지만,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인정여부와 범위문제에서 간접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간략하게 검토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취지와 어떠한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자. 대법원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손해배상판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 그 한계,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기관의 비밀보지·인권존중의무, 피의자의 명예를 비롯한 기본권침해의 문제 등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 1) 대법원의 입장

우선 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의 혐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종국에는 무죄로 확정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의자의 부모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익형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의견발표가 가지는 일반국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지적은 인터넷 공개수배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고 하겠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 . . .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 . .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

---

자의 권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그리고 범죄보도의 함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273쪽 이하.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 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sup>152)</sup>

의사실의 공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사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참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비례성의 원칙의 표현이다. 나아가 언론기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보도의 대상이 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손해배상문제를 다룬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스미디어의 강력한 파급효과와 사후의 피해구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이는 인터넷을 통한 수배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한 지적이다.<sup>153)</sup>

대법원은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sup>154)</sup>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하고

15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이 판결은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찰) 등은 원고 ○○○ 등 5인의 간첩혐의사실을 검찰송치를 전후하여 언론기관에 유출시켜 보도되게 함으로서 형법 제126조를 위반하였고, 그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원고 ○○○ 등 5명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그들의 부모들인 해당 원고들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산하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부산지방경찰청 등의 원고 서봉만 등 5명에 대한 간첩혐의사실의 수사결과발표는 발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발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발표로 인한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유사한 취지로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0다68487판결; 대법원 1991.1.26. 선고 97다10215, 10222판결 등.

153)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02143판결.

154) 보도권과 관련한 세부적인 접근은 김옥조,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2006, 특

충분한 취재를 다하여야 하고, 단지 구속영장사본만을 열람한 것으로 언론사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취지에서, 결과적으로 언론기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 진실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는 한, 피의자의 명예침해라는 기본권의 침해는 수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공개수배와 관련된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공개수사가 허용되기 위해서 우선 범죄의 혐의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는 문제되는 범행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혐의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이다. 사후에 유죄판결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수배의 적법성을 의심하게 된다면 상당한(확실성에 가까운 개연성) 혐의에 의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뿐만 아니라, 실령 지명수배·공개수배(장)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100%의 확실한 혐의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한) 그러한 정도의 혐의를 넘어선 어떠한 지명수배장의 발부조건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요구가 되는 것이다.<sup>155)</sup> 그렇다면 결국 공개수배도 진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강화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사활동이며, 국민의 신뢰나 파급효과 및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상응한 강화된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 2) 소 결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사실이 언론매체에 공개되고, 그 사실이 신문, 라디오 또는 TV 등의 공중매체를 통해 공표된 경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여부나,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다룬 대법원의 판결례는 대부분 피의사실공표의 대상이 된 피의자들이 종국판결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들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오보라는 요소가 위의 모든 사안에서 민사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하고 있다. 이미 독일에서도

히 276쪽 이하 등.

155) 물론 대법원도 비록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한 언급이지만, “신문기자가 담당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그 진위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 및 확인 없이 보도했으나 위 기사가 검사의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있는 경우, 그 기사 내용이 비록 진실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대법원 1999.1.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1970년대부터 매스미디어의 수배방송을 통해 명예가 침해된 (무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에 관한 판결이 있다는 것도 이미 소개하였다.<sup>156)</sup>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것이 피의사실에 대한 단순한 공표이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공개적인 수배이건, 공표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기타 원상회복의 노력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로 수용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독일 현행법에서도 이미 이러한 사고는 자리를 잡고 있다.<sup>157)</sup>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와 관련하여 피의사실공표죄가 주는 시사점은, 아직은 유무죄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라는 것이 단순한 혐의였을 뿐 진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능한 최후수단으로, 혐의의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배문구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피의자가 유죄라는 심정이 드는 표현은 삼갈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까지의 대법원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된 입장 속에는 피의사실의 공표(매스미디어, 인터넷 등)도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사안을 구체적인 판단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 5.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터넷 공개수배

### 1) 피의사실의 공개와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유형

수사기관이 공판절차의 개시 이전에 피의자에 대한 편향적인 정보를 매스미디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배처분을 행할 경우 이러한 피의사실의 공표가 야기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되어왔다.<sup>158)</sup> 이미 위에서 살펴

156) OLG Hamm NSTZ 1993, S. 139ff.(Schmerzensgeld wegen Öffentlichkeitsfahndung).

157) 적법한 경찰활동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조태제, 적법한 경찰활동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2 참조.

158) 특히 국내에서는 하태훈, 마스크를 이용한 피의자(내지 용의자) 공개수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본 피의사실공표죄나 무죄추정의 법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 문제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침해될 수 있는가에 따라 상이한 접근이 가능하다.

여하튼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독립된 법관, 가능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증인과 감정인이 참여한 공정한 재판, 즉 법치국가적 원칙에 상응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인터넷을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피의사실에 대한 사전 공개는 법관에게 여론재판으로 몰릴 수 있는 심리적인 강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즉 현실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관은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심증을 형성해야하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해야하는 법적인 의무에 놓여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공정한 재판의 결과가 매스미디어의 피의사실공개만으로 침해될 수 있는 것인가도 쉽게 답하기 어렵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즉 위에서 살펴본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전의 피의사실공개로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인가는 일반국민에 향해진 피의자의 명예훼손이라는 측면과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행하는 법관에게 향해진 측면은 상이하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관점에서 공개수배를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법관을 비롯한 여러 소송참가자들이 선입견을 갖게 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의 개입으로 인해 결국은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방어능력이나 변호기회, 방어행위의 가능성이 혼란상태에 빠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sup>159)</sup>

나아가 당해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주체들(증인, 피해자, 감정인 등)에게도 사전의 언론 등을 통한 피의사실의 공표는 그러한 주체들에게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의 두려움, 혼돈, 선입견없는 진술을 방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유무죄판단이 증거에 의한다고 할 때, 선입견이 없는 판사에게도 진실발견의 가능성을 앗아가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현상은 형사소송자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sup>160)</sup> 물론 이러한 분석은 사전의 피의사실공표가 항상 유죄의 결과로 이

과 개선방안, 187-188쪽.

159) Hassemer, Vorverurteilung durch die Medien, NJW, 1985, S. 1921ff, 1923.

160) Hassemer, Vorverurteilung durch die Medien, NJW, 1985, S. 1923.

르지 않는다는 것을 유보한 주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의 이익 혹은 형법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중요한 범죄인이 공개적으로 수배되고, 그러한 자는 일반국민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체포·구속되고, 결국 형사소송절차가 정당한 결론으로 종결된다는 것이 공개됨으로써 규범의 안정성 내지는 일반국민의 법복종의사를 고양한다는 점에서 피의 사실의 공개가 결코 부작용만을 생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모종의 잘못된 정보가 일반에게 제공될 때는 일반인 스스로 피해자가 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피의사실의 공개는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공개수배형식을 통한 피의사실의 사전공개는 형사재판제도라는 사법제도자체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161)</sup> 언론기관이 가지는 보도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순기능의 배후에는 언론기관 스스로 자신의 보도로 인해 치명적인 신뢰성의 상실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역기능에 대해 현재 형사소송법은 적절한 방어기제를 갖고 있는가를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 2) 소 결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한 피의자에 대한 정보의 사전공개에서 이로 인한 피해자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한 법익이 상호 충돌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반공중의 알권리 내지 정보접근권,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무죄추정의 권리,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은 권리 등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법익으로 파악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법익의 충돌을 어떠한 잣대로 형량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161) 미국의 경우 contempt of court, contempt by publication 이라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배심제도와 plea bargaining 및 언론에 의한 배심원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등으로 대륙법적인 소송구조에서 보다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Hassemer, aaO., S. 1924.; 하태훈, 매스컴을 이용한 피의자(내지 용의자) 공개수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87쪽).

이다. 이러한 범익형량의 잣대는 피의자가 익명인가 실명인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도 상식적인 얘기이다. 피의자, 그의 가족, 그의 친구, 법관, 명예법관(배심원), 증인, 소추기관, 관련 언론 내지 매스미디어, 사법의 공개성 등 피의사실의 공표와 재판과정의 공개 등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내지는 권리 등의 침해될 대상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도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나아가 판결의 주체인 법관에 대해서도 제척, 기피 및 회피제도와 각종의 고지 및 피고인의 진술권의 부여 및 증거재판주의와 양심에 따른 자유심증이라는 제도로 법관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소장의 범죄사실의 기재를 중심으로 심리와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제적 진실의 발견은 선입견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형사입법자의 의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는, 위에서 살펴본 무죄추정의 원리에서와 같이, 오히려 여론재판을 전제하지 않는 한 건전한 법관의 양심 하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6. 인터넷 공개수배와 수사의 밀행성원칙의 침해

### 1) 의 의

매스컴에 피의사실을 공개하게 되는 공개수사는 수사비공개 내지 수사밀행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인격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일견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sup>162)</sup> 주지하다시피 수사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활동과 피의자의 인권이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수사는 무엇보다 범죄로부터 침해된 공공의 질서를 조기에 회복하여 유지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의 진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활동은 신속하고도 능률적

162) 하태훈, 매스컴을 이용한 피의자(내지 용의자) 공개수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88쪽.

인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의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명예 등도 존중하면서 증거의 인멸이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행하여져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sup>163)</sup> 이러한 소위 수사의 밀행성 내지 비공개성은 결국 수사의 그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피의자의 인격보호라는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로 귀결한다.<sup>164)</sup> 하지만 수사의 공개성과 밀행성은 위와 정반대의 의미, 즉 양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과학적인 수사방법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수사는 거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밀행성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수사의 공개가 인권보호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sup>165)</sup> 공개냐 비밀이냐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일률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2) 소 결

수사의 효율성·능률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사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으로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공개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수사의 합목적성에 따른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투입된다고 전제할 때, 과연 해당 피의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이며, 종국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살펴 본 위에서의 언급이 그대로 타당할 것이다.

163) 森圭司, 司法試験 Basic Note 刑事訴訟法, 第2版, 早稻田經營出版, 1998.

164) 하지만 이러한 수사밀행성의 원칙이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원칙인지는 분명치 않은 점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수사의 공개는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 내지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투명한 수사활동을 비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5) 실美東洋, 刑事訴訟法, 新版補訂, 2005, 20頁.

## 7. 인터넷 공개수배의 대상에 따른 차이

### 1) 인적 수배와 물적 수배

각국의 인터넷 수배현황과 법적 근거 등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적인 수배와 물적인 수배는 인터넷 공개수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당사자의 기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률적으로 (인터넷 공개수배의 허용성이)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실명·가명 및 사진 등이 열람 가능한 피의자의 공개수배와 신원을 알지 못하지만 몽타주 정도의 신원자료나 가명 등이 제공되는 경우 및 사진과 실명이 전혀 제공되지 못하는 피의자의 공개수배는 그 처분이 가지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의 측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불가능한 참고인에 대한 수배는 보다 더 분명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기본권침해를 내재하고 있다. 기본권침해의 유무, 정도가 각각의 수배유형에 따라 상이한 만큼 모든 유형의 공개(지명)수배(통보)가 강제처분으로 취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피의자가 아니면서 특정의 범죄와 관련한 참고인으로서 수배되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 참고인이 피의자로 둔갑하게 되는 것도 적지 않지만) 사실상 피의자가 아니면서도 피의자로 오해될 소지가 많을 수 있고, 범죄와 관련하여 단지 무엇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분이 공개된다는 것은 피의자보다 더 중한 불이익 내지 인권을 침해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개수배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참고인에 대한 수배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인지 등도 동일한 척도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다.

### 2) 소 결

인터넷 공개수배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공익과 사익, 일반의 이익과 피의자의 이익이 형량 되어야 할 경우는 사실상 공개되는 정보내용에 따를 때, 피의자·참고인의 신원이 확실하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유형의 인적·

물적 수배는 현행법 하에서도 어떠한 타인의 기본권도 침해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실종자수배,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관계인수배·제보요청, 도품·장물의 수배 등<sup>166)</sup>은 현재의 법상태로도 발달한 인터넷 공간을 이용에 충분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법상태 하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혹은 마스크를 통한 공개수배는 많은 부분 임의수사로서 허용되는 수사처분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8. 인터넷 공개수배의 새로운 경향

### 1)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의 인터넷 수배

올해 초 국정브리핑(2006.2.8)에서 정보통신부는 참여정부 3년간 추진해 온 '정보통신 일등국가' 건설로 다져진 IT강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올해는 유비쿼터스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기치 아래, '다이나믹 u-코리아'를 슬로건으로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올해부터 지방에서도 서비스하고, 차세대 무선서비스로 손꼽히는 와이브로와 3.5세대 이동전화서비스인 'HSDPA'를 상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나아가 신규 통신·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와이브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WCDMA망을 84개시로 확대해 전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DTV, DMB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내 DMB 기술의 국제표준(ITU) 채택을 추진해 국산 DMB기술의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달리 말하면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이미 2007년 혹은 2008년에는 이미 우리 사회는 도처에서(ubiquitous, omnipresent) 인터넷접속이 가능하고,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도 자신의 눈 앞의 행인이 현재 세상 어느 곳의 수사기관에 의해서건 수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의 함의에 충실한 유비쿼터스 사회

166) 도품 등의 장물을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자들에게 일종의 공개수배전산망을 경찰청의 도품, 장물 등의 관련 사이트로 연결시켜 운영하는 것은 범죄수사와 범인체포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기 때문에, 전당포, 금은방 등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컴퓨터설비 1대 정도를 갖추고 있으리라는 기대가 비현실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에 휴대폰으로 수사기관의 홈페이지의 접속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현재 무선인터넷은 임의의 장소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미 이러한 현상은 시작된 지 오래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휴대성이 좀 더 강화되고, 보편화됨으로 인해 기존의 데스크 · 매스미디어의 효과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가진 정보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림 10>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 사회구현을 위한 개념도<sup>167)</sup>



2) 소 결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피할 수 없는 발전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의 효율성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한다면, 이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허

167) 출처, 국정브리핑 1006.2.8.

용 되는가 혹은 불허해야 하는가의 원칙론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파급효과에 상응한 공개수배의 방법, 공개수배대상자의 보호대책, 공개수배대상(범죄)자의 범위설정 등 보다 현실적·합리적인 기준마련이라는 문제로 논의의 중심은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 9. 인터넷 공개수배와 국제사법공조·범죄인인도 등

인터넷은 국경을 초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공개수배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수배내용은 외국인·관청이 열람할 수 있고, 외국에서의 공개수배도 국내에서 열람 및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국경을 초월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하고 있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국에서 행해지는 외국인(피의자나 유죄 및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수배도 인터넷의 국경초월성에 따라 국제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sup>168)</sup>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와 관련하여 특히 국제법적인 충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외국의 국가고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일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컴퓨터의 위치가 내국인가 혹은 외국인가라는 위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저장된 정보를 읽는 위치가 바로 컴퓨터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인터넷 사용자가 내국의 수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국의 주권침해인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내국인이 외국의 서버에 접근하여 수배정보를 읽는 것이 국제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나아가 외국인의 수배정보가 국내에서 읽혀짐으로 인해 내국인이 외국의 수사당국에 제보를 하는 것과 내국의 수사기관이 수배대상자에 대해 체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가

168) 이러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 및 독일법상태에서 (유럽연합의 특성 등에 따른) 가능한 해석론 등에 대해서는 Jung, *Personenfahndung im Internet-Ein Verstoß geg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Strafrecht, Beitragsübersicht* 24.03.98 in: [www.namiso.de/pub02.htm\(2006.6.28.방문\)](http://www.namiso.de/pub02.htm(2006.6.28.방문)); Soiné, *Fahndung via Internet-1.Teil*, *NStZ*, 1997, S. 167ff; Soiné, *Fahndung via Internet-2.Teil*, *NStZ*, 1997, S. 321ff.



도 문제된다. 특히 외국의 특정 웹사이트에는 수배대상자의 인종적 특성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게시하기도 하고, 특정의 피의자를 마치 전 세계적으로 수배하는 형태, 즉 다양한 언어로 수배정보를 공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인터넷 공개수배자료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허용성,<sup>169)</sup> 국내의 수사기관의 인터넷 공개수배자료를 통한 외국인의 수배의 가능성, 외국의 사법공조요청에 의한 내국의 인터넷 공개수배의 허용성, 외국인인 (탈주·잠적한) 유죄확정자·수형자 등에 대한 인터넷 수배와 공조요청의 가능성, 외국에서의 물건에 대한 수배, 외국의 요청에 의한 국내에서의 공개수배 등의 전형적인 문제들은 지금까지 전혀 현실적인 과제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법적인 기초의 마련과 합리적·국제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sup>170)</sup>

#### 1)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국가간의 공조로서 지명수배와 인터넷 공개수배 등

동법 제4조에서는 상호주의를 규정하면서, ‘공조조약이 체결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제13조에서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요청국이 요청한 공조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

169) 국내의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의 수배정보를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자국에서 접근하는 것이 국제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가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법적인 특별한 문제, 즉 내국의 국가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국이 외국에 대해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외국인이나 관청이 공개자료에 접근했다고 하여 양국 수사기관간의 접촉이라거나, 내국의 수사기관과 외국인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170) 김주덕, 국제형법, 육서당, 1998, 129쪽 이하; 조대환,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3 (통권 462호), 113쪽에서는 내국인이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에 국내의 수사관청이 외국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의뢰하는 종래의 전통적인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요청국의 범죄인의 수배 내지 인도요청을 받은 피요청국에 인터넷 공개수배가 허용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소위 인터넷을 초국경성으로 인해, 주권의 침해라는 요소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주의, 범죄인인도조약이나 사법공조조약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에 어떠한 형태로 적용될 것인가도 하나의 중요한 논제가 되는 것이다.

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외국에서 국내의 수사당국에 외국인에 대한 인터넷을 통한 공개 지명수배·공개수배를 요청했을 때, 현재 법상태 하에서도 동 처분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법률에는 지명수배 등이 규정된 바 없고,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적극적으로 논구된 바도 없기 때문이다.

## 2) 범죄인인도법

동법 제4조에서도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가 동종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국제적인 협력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인도구속영장을 통해 구속하는 것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주거를 알지 못하는 인도요청된 범죄인에 대한 지명수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이러한 범죄인의 인도를 위해 국내의 수사당국의 홈페이지에 공개수배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어떠한 조건하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구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 3) 소 결

특히 위와 같은 국가간의 형사사법공조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보다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요청국의 수사당국에 공개된 피의자 정보는 피요청국의 국민과 수사기관이 언제라도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다는 것도 보다 더 간단한 절차로 사법공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법과 실무에서는 지명수배·통보자체의 근거규정의 법률화는 물론,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수사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외면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위에서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국가들의 법상황과 인터넷의 활용상황을 직시하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는 자명

해 질 것이다.

## 10. 소 결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를 둘러싼 가능한 법적 논점에 대해 살펴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개인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다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허용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잣대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 등(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보장, 인격권, 초상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상호 비교형량이다.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사는 그 처분이 가지고 올 당사자의 기본권의 침해를 법익 균형성과 최소침해성이라는 관점에서 형량하여 이러한 헌법적 요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공개지명수배·통보를 이미 법률화한 독일의 입법연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이유를 검토해 볼 때에도 법원의 지명수배명령만으로 동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검사와 수사관에게도 공개지명수배명령권 내지 긴급공개수배명령권이 인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헌법적·형사소송법적 기본 잣대에 의해 처분의 적정성과 허용성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공개수배가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 강제처분인가에 관한 논의에서도, 결론적으로 동 처분을 강제수사라고 하건, 임의수사라고 하건, 종국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사방법인가 하는 점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가라는 판단에 좌우된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그 대상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률적으로 허·불허를 논할 수도 없는 것이며, 피의자나 참고인의 실명 등을 공개하여 특정 가능한 인물을 수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현재의 법상태 하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리와 관련해서도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확정된 유죄판결이 아니라 혐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개수배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한, 피의자의 침해가능한 범위내

에서의 기본권이 문제될 수는 있을 뿐,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도, 미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논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사가 가져올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해서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내용을 대상범죄(자)와 관계하여 구체적으로, 공표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과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이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해 침해될 이익의 성질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지 않는 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수사밀행성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논의결과도 수사밀행성이 수사의 효율성과 대상자의 인권보호라는 양 측면에 대해 가지는 의미자체가 양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듯이, 인터넷을 통해 혐의사실이 공개되었다는 것만으로 수사밀행성의 원칙이 침해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는 소위 유비쿼터스 사회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지 이미 오래되었고, 멀지 않아 도처에서 수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될 것임은 자명하다. 법적 근거마련을 외면하고 실질적인 적용기준의 도출에 무관심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다가올 사회에 형사사법과 국민의 인권을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사법공조 내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활발한 인터넷 공개수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범죄투쟁의 방법을 하루 빨리 따라잡아야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상과 같은 여러 국가의 인터넷 수배현황의 사실적 비교분석과 다양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법제의 비교와, 법규정의 존부문제와 무관하게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인정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법적 원칙 내지 법적 근거에 대한 분석을 기초

로, 현행법에 대한 해석론의 한 유형이자 입법론적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개수배의 요건과 내용 등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간략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 V. 결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허용성과 요건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논의를 기초로 하여 현행법 상태하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인지를 해석론과 입법론을 아울러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 1.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필요성 및 효과와 부작용

#### 1) 인터넷 공개수배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여러 국가의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공개수배의 현황을 개관하는 것만으로 이미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기존에 매스컴 혹은 일반적인 의사소통수단이 가지는 정보교환의 유형과 양, 시간과 장소적인 제약이라는 측면을 뛰어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또 다시 차세대의 통신 내지 의사소통의 수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기존의 사고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유형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일본의 경찰청에서 휴대전화 등을 통한 지명수배자 확인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에서도 모든 사람은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이 지명수배대상자인지를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경찰청의 인터넷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청은 20명 이하의 중요지명수배피의자를 경찰청의 각 관서나 지방의 중요 건축물의 내·외벽에 게시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단을 경찰청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수배자제보란에 게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를

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최근까지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끌며 방영되는 각 방송사의 TV공개수배 관련 프로그램이 수배대상자에 의해 제소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11년 전 지명수배를 다룬 글에서, “텔레비전, 신문, 잡지, 전단 등의 공고방식의 지명수배를 통하여 전 국민의 협조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 . . “현대는 이른바 인권 전성시대로서 특히 공고의 방법으로 지명수배를 하려면 강제처분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시행에 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라는<sup>171)</sup> 제언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현실이다. 단지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인터넷, 휴대전화, DMB 폰, GPS를 통한 .... 과 같은 현대의 정보화·소통기술이 추가되는 정도일 것이다. 달리 말해 현재의 국내의 법상태나 수사기관의 실무적인 수사활동이나 11년전의 상황과 달라진 바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상으로 접하는 TV뉴스나 신문기사,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중요범죄의 용의자를 공개적으로 수배하면서 CC-TV의 영상을 방영하거나 일부를 사진으로 게시하는 등의 공개수배를 적지 않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가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국가들이 인터넷을 공개수사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한 지 이미 10여년이 넘어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전히 국내의 수사기관은 수사밀행의 원칙으로 표현되는 비밀스러운 수사방식으로 현대형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세계화된 범죄환경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라는 중요하지만 추상적인 모토에 얽매어 국지적인 일상범죄의 해결에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에 관한 명문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불문하고, 현대사회에서 수사의 효율성과 형사사법의 적정한 기능을 폐

171) 조대환,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4, 94쪽.

기하지 않는 한 헌법적·형사소송법적 제한 속에서 가능한 효과적인 수사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새로운 사회에 적절한 범죄투쟁의 방법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사는 비단 피의자의 수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배대상의 유형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추상적이지만 최후의 척도를 근거로 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에 입법자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이미 오래 전에 도래한 것이다.

## 2) 인터넷 공개수배의 효과와 부작용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국내를 넘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의해서도 수배피의자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즉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신매체와 연결됨으로써, 수사기관 내부의 지명수배·통보 등의 공조체계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상의 효과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유형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국민에 대한 홍보 내지는 경고효과의 충족, 이를 통한 범죄자의 추가범죄의 예방·방지에의 기여, 범죄인은 체포하고 처벌한다는 강력한 일반예방적 효과, 형사소추기관과 국민과의 이해와 신뢰고양, 적정한 법집행의 구현 등과 국가에 대해 순기능적 기여를 하게 됨은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참고인의 수배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수배되는 경우에는 비단 일반국민만이 아니라 억울한 피의자에 대한 해명의 기회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실종자나 변사자수배, 장물이나 도품, 유실물 등의 수배 등은 형사소송절차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고양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효과에 반해 부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기본권목록에 포함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



해 외에도, 수배대상자가 받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불이익은 그 피의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까지 미치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공개수배 자체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수배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모방범죄를 넘어 범죄자체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능력부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사회에 대해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한편 인터넷 수배가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통한 수배보다 기본권침해성이나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도 발견된다. 짧은 시간 내에 외국과 내국을 불문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전체에 대해 수배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매스미디어보다는 더욱 더 파급효과가 크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접속하는 자의 현실적인 숫자라는 관점에서 아직은 신문·잡지, 라디오나 뉴스보다는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다.<sup>172)</sup>

나아가 공개수배는 기본적으로 범죄혐의자나 잠재적인 범죄인에게 불안감 내지 안정감을 박탈하는 효과, 증인이나 정보제공자의 동기화 등의 형사절차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능도 가지지만, 범죄피의자에게 경고기능을 하고, 범죄인과 그 가족들간의 결속력(kompromittierende Wirkung)도 가져오는 (형사사법을 위해서 혹은 수배의 성공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sup>173)</sup>

이러한 인터넷 공개수배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 국가에서 이러한 인터넷 공개수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나라들의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는 한, 아마도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단점 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172) Seitz, Strafverfolgungsmaßnahmen im Internet, 2004, S. 384.

173) Soiné, Fahndung via Internet-2. Teil, NStZ, 1997, S. 166-167.

예를 들어 미국의 FBI의 수배유형 중 Ten Most Wanted에 지금까지 게재된 484명의 피의자 중 체포된 454인의 피의자 검거의 단서 중, 시민의 제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147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특성 내지는 피의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인터넷 공개수배가 일정한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사처분의 유형이라고 인정할 때, 어떠한 전제조건을 설정하여 위와 같은 작용과 부작용이 가장 바람직한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현행법 상태를 기준으로 한 공개수배의 허용성과 수배처분의 허용·전제조건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허용성

### 1) 실정법적 명문규정의 의미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실정법적 근거와 관련 법적 논점의 분석을 종합할 때, 이러한 공개수사를 법률상의 명문으로 규정한 국가에서도, 법관의 지배수배명령은 소재불명인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일반에게 개방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장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달리 말해 공개수배의 전제조건인 범죄혐의의 중대성이나, 피의자의 소재불명, 증거인멸의 위험 등은 사실상 공개수배(명령)의 전제조건인 구속·시설수용영장(체포·구속영장)의 발부과정에서 이미 심사된 것이고, 이러한 영장을 기초로 한 체포의 방법 중 당해 피의자의 기본권침해가 중대한 공개수배까지도 허가할 것인가를 객관적인 법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체포나 구속의 사유보다는 더 중한 사유가 존재해야한다는 것은 명문의 규정을 불문하고 헌법적·형사소송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그러한 사유로 독일의 경우에는 최후수단성 내지 보충성, 즉 다른 방법으로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는 사유를 추가하고, 대상 범죄를 체포 내지 구속영장의 발부대상보다는 더 좁혀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로 제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기본권침해성에 비추어 어쩌면 체포와 구속보다 더 중대한 사유를 요구하는 처분인 만큼, 당연히 법관의 영장 내지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특징은 법률에 의한 통제대상으로 실정법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정법적인 근거조항을 갖고 있다고 하여 허용되는 수사방법이 되고, 실정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허용되지 않는 수사방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결정·명령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도 사실상 중요한 범죄, 소재지의 파악의 곤란성, 다른 수단으로 체포할 가능성의 희박성 등으로, 결국은 법률의 명문규정을 통한 규율을 떠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다. 피의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어도 피의자를 체포해야 할 것인가라는 판단에는 헌법상 허용된 기본권침해의 한계를 가늠하는 비례성의 원칙이 작용해야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한 수사활동이라면 현행 헌법질서 하에서 허용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 2) 수사비례의 원칙의 실질적인 의미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불문하고 피의자 내지 수사대상자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는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그 정도의 차이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도 피의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도 임의수사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수사비례의 원칙은 임의수사나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수사에서 가지는 의미보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규정이 결여되어있는 영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자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못한 수사방법 또는 새로이 발전된 수사방법이 법적 테두리 속으로 편입되기 전에 동 처분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바로 헌법적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적절한 형사소추기관의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 3) 소 결

논쟁의 여지를 줄이고, 실무적인 수사활동에도 명백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독일의 입법이 보여 주듯이<sup>174)</sup> 인터넷이나 공공매체를 통한 지명수배의 방법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과 필자의 판단에 따를 때 현재의 법상태 하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일정한 전제조건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사방법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괄적이거나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요건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기로 한다.

## 3.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의 전제조건

### 1) 현행법상태하에서의 운영

#### (1) 법관의 체포·구속영장의 발부

독일형사소송법 제131조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공개)수배의 대상을 구속영장 등이 발부된 자로 함으로써 이중의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관

174)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역사는 수사실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법적인 테두리내로 포섭하여, 법적 통제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익명의 정보원을 사용하는 수사실무가 이미 형사소송법에 반영되었고, 미국사회에서나 있음직한 형사소송에서의 Deal이라는 사고도 이미 2004년 형사소송법의 개혁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되고 있다는 점은 대륙법전통의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하다.

의 체포·구속영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공개)지명수배명령권은 법관만이 아니라 검사(긴급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하에 사법경찰관)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지명수배여부가 실질적으로 법관에 의한 유일한 통제는 아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공개수사처분에 법관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구속영장·시설수용영장과 별도의 지명수배영장에 대한 영장주의를 원칙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독일법에 있어서도 긴급체포상황에서는 사전의 구속영장 등이 없이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사후 1주일 이내에 판사의 구속영장·시설수용영장심사를 받는 것만을 요구할 뿐, 사후영장의 발부가 거절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지명수배명령은 유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법관에 의한 통제 내지 강제처분에 대한 영장주의라는 의미는 대부분 희석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를 인정할 경우, 현행 영장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을 최초 발부하는 시점에서는 공개수사에 관한 부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이유로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발부하는 때에는 아래에서 언급할 공개수배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해당 영장에 공개수배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75)</sup>

대검예규인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에 따르면 지명수배대상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시 동 영장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만료일까지로 기재하고, 영장청구서의 영장유효기간란에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란에 ‘지명수배’라는 붉은 색 고무인을 찍어 제출한다는 점에서 이미 일정부분 법원이 지명수배에 개입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sup>176)</sup>

175) 기존의 연구 중에는 체포영장에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집행불능이 될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명할 수 있게 하고, 그 유효기간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하도록 보완하거나 구속영장을 같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보완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조대환,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4, 463호, 90쪽).

176) 2003.8.23. 개정. 물론 참고인에 대한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는 것이

단지 실질적인 차이는 법원이 지명수배 자체에 대해 체포영장과는 별도의 명시적인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사기관내부의 지명수배나 공개수배에 대해서 법문의 명시적인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법관의 체포영장 발부행위를 지명수배 내지 공개수배허가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뿐 일 것이다.

## (2) 검사에 의한 공개지명수배명령

검사에 의한 지명수배는 현행 실무상대하에서는 단지 경찰과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명통보입력요구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검예규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sup>177)</sup> 따르면 검사가 직수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거나 송치사건의 의견과 달리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영장을 청구할 때는 영장업무 담당직원이 체포영장청구부 또는 구속영장청구부의 비고란에 ‘지명수배’라는 붉은 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있고, 당해 피의자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를 기초로 기소중지결정과 동시에 지명수배(통보)입력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명수배사실을 전산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아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지명수배대상자임을 밝힌 경우에 이러한 영장신청을 받아들여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검사에 의한 지명수배 동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검사에 의한 수배명령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관내부의 지명수배가 아닌 공개수배에 대한 내용은 검찰의 내부규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공개수배에 대한 검사의 명령을 유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검찰의 기소중지관련지침을 개정하여 지명수배와 공개지명수배를 세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므로 이와 다르다.

177) 대검예규 기획 제389호, 2006.1.25. 현재.

### (3) 경찰의 긴급공개지명수배권

경찰의 긴급공개지명수배권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지명수배규칙중 중요지명피의자공개수배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지 이러한 처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사 등의 추인을 받는 절차가 없다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긴급공개지명수배대상자에 대한 아래에서의 언급된 내용을 고려하고, 검찰에 의한 통제라는 형태의 경찰 외부의 견제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법 상태에서 가장 시급하고 바람직한 운영방법이라고 하겠다.

### (4) 보충성, 최후수단성

현행 공개수배의 근거규범인 지명수배규칙에 따르면 중요지명피의자공개수배는 최초의 지명수배·통보로부터 6개월간 검거하지 못했다는 시간적인 제약이 마련되어있다. 최초의 수사기관내부의 지명수배·통보부터 법원이나 검찰의 명령을 필요로 하는 독일과 비교해서 국내와 일본의 경우에는 지명수배자체에 대해서는 법관의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는 점에서는 전자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경우 지명수배의 시기는 제한이 없는 것에 비교할 때, 나름대로 국내의 지명수배규칙은 일정한 시간적인 제약을 통해 보충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독일과 비교하여 조금 더 보충성 내지는 최후수단성이 부각될 수 있는 시간적·상황적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5) 대상범죄의 제한

현행 대검예규인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이나 경찰청의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및 예규인 ‘지명수배취급규칙’에서는 이미 지명수배의 대상과 지명통보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고, 인터넷 공개수배의 대상이 되는 중요지명피의자는 ‘범죄수사규칙’ 제129조와 ‘지명수배취급규칙’ 제 9조에서 6개월 이상 지명수배통보가 효과 없는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수배의 유형인 중요지명피의자공개수배는 경찰청의 훈령과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sup>178)</sup>

이러한 수사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를 때, 현재 중요지명피의자종합수배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속·체포·긴급체포의 유형 중 가장 중대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체포대상범죄와 동일한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조건이나 긴급체포의 전제조건에 이러한 형량을 중심으로 한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수배의 대상범죄도 단지 ‘중요한 범죄’라는 조건만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나, 일본의 경우에<sup>179)</sup> 흉악범죄,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사회적 반향이 아주 큰 중요한 범죄(유괴, 체포, 감금, 도주, 총포도검류, 화약류, 마약류, 경제범죄,

178) **범죄수사규칙 제129조** (공개수배)

- ① 지명수배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할 수 있다.
- ② 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수배할 수 있다.
- ③ 공개수배는 사진, 현상, 전단,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지명수배취급규칙 제9조**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 ① 지방경찰청은 지명수배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피의자의 최근 촬영한 사진을 수집하여 매년 5월 20일과 11월 20일 연 2회에 걸쳐 경찰청장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강력범
    2. 중요폭력 및 도범
    3. 기타 중요범죄
  - ②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종합수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배를 요하는 피의자를 선정하여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현상부 종합수배서를 작성하여 전국에 공개수배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자체 종합수배를 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종합공개수배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많은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한다.
    2. 관할지역내의 군·검·교도소, 읍·면·동사무소, 병무관계관서등과 협조하여 군입대자·수형자 중 수배자를 색출한다.
    3. 검거하여 수배해제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란에 검거표시를 한다.
    4. 수배서를 새로 붙일 때는 전회분을 철거한다.
- 179) 일본형사소송법 제210조의 긴급체포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과 거의 일치하나, 단지 현행 형사소송법의 경우 제70조 제1항 제2호(증거를 인멸한 염려) 및 제3호(도망하거나 도망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요구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도망할 우려만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하이테크범죄, 교통범죄 등), 재산범죄 중에서는 악질적이고 중요한 범죄(절도범도 범행 수법이나 방법이 악질적이고 피해액도 상당히 다액인 경우에는 이에 속함), 극좌파의 폭력집단 등 반사회성이 아주 강한 집단의 범죄를 조기에 검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극히 경미한 범죄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범죄의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지명수배된 경우(물론 사후지명수배도 인정함) 등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대상을 추상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 비해, 현재 검찰과 경찰의 지명수배기준은 비교적 아주 중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비례성에 보다 충실하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이러한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수배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범죄유형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형량의 제한으로 인해 공개수배대상이 될 수 없는 범죄유형 중에도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처럼,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도범이나 사기범, 경제범과 같은 경우)에서, 조금더 세부적인 대상범죄의 선정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명통보대상으로 구분된 자의 경우에도 강력범, 중요폭력 및 도범, 기타 중요범죄에 해당하면서, 지명통보 후 6개월 이상 검거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중요지명피의자공개수배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결국은 지명통보대상이 공개수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명통보 대상범죄가 비교법적으로 그리고 현행 체포·구속사유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물론 현행 체포·구속영장의 발부사유에 비추어 지명수배·지명통보의 대상은 제한적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인터넷 공개수배가 가지는 역기능을 고려하여 현재의 규칙이나 지침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6) 공개정보의 적정화

현재 경찰청의 인터넷을 통한 중요지명피의자 공개수배 사이트에서 공개되는 피의자 정보는 사진, 이름, 연령, 게시기간, 수배관서(경찰청으로 통일), 죄명, 본적, 주소, 특징(신장, 체격, 언어 등), 신고처(112로 통일)로 구성되어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나, 추가적으로 확보된 현상태에 관한 정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지 혐의자·피의자라는 사실에 대한 정보, 범인의 위험성에 따른 경고정보, 변장 등의 경우에 가능한 인상정보, 범죄와 관련하여 주로 등장가능성이 있

는 지역정보 등도 이러한 정보의 공개로 인해 특별히 추가적으로 침해되는 관련자의 이해관계가 없는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CC-TV의 동영상화면과 같은 정보의 제공도 수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의 경찰청의 수배화면은 특정 관공서 등의 건물벽면에 게시된 화보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배가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7) 인적 수배와 물적 수배의 구별

비교된 외국의 예를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공개수배, 참고인에 대한 공개수배, 탈주한 수형자에 대한 공개수배, 중요한 증인에 대한 공개수배 등은 당해 피의사건 내지 유죄확정자에 대한 수배로서 인적 수배의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종자, 변사자, 피유괴자 등에 대한 수배는 직접적인 범죄피의자 수배는 아니지만 독립된 인적 수배의 유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도품(장물)이나 중요한 증거물에 대한 수배는 물적 수배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제사건이나 범죄의 초동수사단계에서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건자체에 대한 수배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수배에 있어서 외국의 현실이다.

현재 경찰청이나 다양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일정부분 통합된 체계 속으로 묶어 운영하는 효율성 증대의 측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청의 수배메뉴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8) 경찰청과 지방청의 적극적인 인터넷 공개수배의 활용

현재 사이버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인터넷공개수배는 전국 각 지방청의 신청을 받아 20명을 발취하여 경찰청에 전속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방청은 독립적인 수배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경찰청의 관련 사이트를 링크하여 일원적인 자료만이 제시될 뿐이다.

법적인 근거부재라는 상황이 수배활동에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었겠지만,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인터넷 공개수배의 허용성을 받아 들인다면, 보다 풍부한 유형의 수배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전국에 유일한 경찰청의 수

배인원이 20명 이하로 제한되어있고, 지방경찰청은 독자적인 인터넷 수배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 (9) 통합적이면서 분권적인 정보망의 구축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공개수배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지방청은 지방청관할지역내의 중요 범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배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전국적인 수배와 지역적인 수배를 아울러 시행하는 것도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인터넷은 전국성 뿐만 아니라 국제성을 띄고 있는 것이므로 통합적으로 하나의 사이트를 이용하되, 전국단위의 중요피의자에 대한 수배와 지방청 단위나 범죄유형별 수배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비교된 국가들의 제도나 운영실태에서 알 수 있었듯이,<sup>180)</sup> 일정부분 전국적으로 통합·공통된 범죄인 수배정보를 게시·공유하면서, 지역마다의 고유한 수배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향후의 인터넷 수배제도 활용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0) 보안 및 해제 등의 문제

인터넷 수배가 가지는 단점 내지는 문제점 중에 가장 심각한 유형의 하나가 인터넷 수배의 해제 및 인터넷 수배정보의 보안문제이다. 전형적인 수사기관내부의 수배정보는 기관내부의 철저한 관리와 입력된 정보의 삭제로 조작이나 삭제후에도 활용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나, 인터넷상에 올려진 정보는 이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의해 변조되거나, 수배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떠돌 수도 있는 것이며, 고의적인 배포행위(외국의 예에서는 수배전단의 PDF파일로 다운, 프린트, 타인에게 전송까지 허용됨)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나아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의 침범으로 피의자의 정보 등의 악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대책마련이 그리 쉽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180) 아쉽게도 독일연방범죄수사국이나 지방검찰·경찰에서는 인터넷수배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통계 자료가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6개월에 한번씩 자료를 갱신하는 것은 국내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이 현행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는 외국의 예는 우선적으로 당해 행위의 위법성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일정부분의 범죄행위를 줄여보겠다는 의도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입법론적 재고

### (1) 공개·비공개지명수배장제도의 신설필요성

매스컴을 통한 공개수사(수배)와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이미 국내에서도 이용되어 왔고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활동이 관련자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입법자가 움직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독일의 제도를 기초로 하여, 독일법조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매스 미디어를 통한 공개수배, 인터넷과 향후의 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수배방법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제가 형사소송법안으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2) 지명수배·지명통보자체의 법률화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명수배·통보를 법률이나 규칙에도 규정하지 않고, 수사당국의 예규·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명수배·지명통보가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은 이미 충분히 제기되어왔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명수배·통보에 대한 명확한 법률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형사소추기관의 적절한 수사권행사와 효율적인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

### (3) 국제사법공조와 관련한 발전적 입법의 필요성

현대는 국제화와 더불어 지역의 블록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

고 있다. EU의 제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통합수배전산망(SIS)과 전 세계의 지부와 연결된 미국의 수사기관의 정보망이 시사해 주듯이, 상호주의나 조약의 유형으로 실현되고 있는 국제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국제적인 표준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제 중의 하나이다. 관련 법제의 현실적인 개선작업도 시급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 (4) 새로운 유형의 통신·의사소통수단의 발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의 필요성

우리가 아직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없이 미온적인 자세로 현실을 대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전 세계는 도처에서 언제나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 조작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수사의 효율성이 강한 힘을 발휘할 때에는 이러한 변화된 사회의 정보·통신적 인프라는 언제라도 수사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강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법이 현실을 앞서 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새로이 발전하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규제적 입법이라는 전망적인 입법의 형태로 대응해야하고, 법률의 방향제시적인 성격을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내년 봄에 ubiquitous사회가 완성되었다는 정보통신부의 발표를 들을지도 모르는 첨단 정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입법자의 지혜와 행동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 강길주, 소재불명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지명수배 방안, 법조, 1996.4., 67쪽 이하.
-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5.
- 권재진, 현행 지명수배 및 소재수사의 미비점과 보완대책,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 (3), 1988. 6. 342쪽 이하.
- 김기두, 형사소송법, 전정신판, 박영사, 1987.
- 김기영, 헌법강의, 박영사, 2002.
- 김배원, 「'정보'관련 기본권」의 독자적·통합적 보장을 위한 시론, 헌법학연구 제7권 2호, 한국헌법학회, 2001.8., 79쪽 이하.
- 김옥조,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 초상권침해 그리고 범죄 보도의 함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김일수,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한계, 치안논총 제9집, 1992, 1쪽 이하.
-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4.
- 김정환, 형사소송에서의 무죄추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주덕, 국제형법, 육서당, 1998.
- 김준규, 지명수배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3호(통권 19권), 1994, 131쪽 이하.
-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7전정신판, 박영사, 2005.
- 문성도,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한계-피의사실공표죄를 중심으로-, 치안논단, 2004, 39쪽 이하.
- 방철수, 체포제도시행에 따른 지명수배 개선방안, 검사세미나 연수자료집(제22기)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신명확보절차, 법무연수원, 1997, 195쪽 이하.

- 배종대, 형법각론, 제6판, 홍문사, 2006.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4.
- 백성일, 체포제도시행에 따른 지명수배 개선방안, 검사세미나 연수자료집(제22기)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신명확보절차, 법무연수원, 1997, 169쪽 이하.
- 송광섭, 형사소송법, 유스티니아누스, 1997.
-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 오경식, 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11, 1998.12., 39쪽 이하.
- 오경식, 우리 나라와 외국의 수배제도에 관한 일고찰, 치안정책연구 제8호, 1997, 10쪽 이하.
- 이상대, 체포제도시행에 따른 지명수배 개선방안, 검사세미나 연수자료집(제22기) -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신명확보절차, 법무연수원, 1997, 137쪽 이하.
-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4.
- 정영석, 형사소송법, 법문사, 1982.
-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4
- 정익우, 지명수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찰, 106, 대검찰청, 1995.6., 1쪽 이하.
- 조대환, 대만의 통집제도(한국 지명수배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제10집, 법무부, 1994, 607쪽 이하.
- 조대환,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3.(통권 462호), 72쪽 이하.
- 조대환,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1995.4.(통권 463호), 48쪽 이하.
-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1997.
- 표창원, 경찰인터넷 방송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치안논총 18집, 2002, 511쪽 이하.
- 하태훈, 마스크를 이용한 피의자(내지 용의자) 공개수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안암법학, 11권, 안암법학회, 2000.8., 165쪽 이하.
- 황정익, 지명수배 등에 의한 체포의 합법성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권 제8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96. 219쪽 이하.

東條伸一郎, 註釋 刑事訴訟法, 新版, 第3卷, 立花書房, 1996.

福井 厚, 刑事訴訟法, 第4版, 有斐閣双書, 2005.

森圭司, 司法試験 Basic Note 刑事訴訟法, 第2版, 早稻田經營出版, 1998.

上山 裕/後藤 昭/安富 潔/渡辺 修(著), 刑事訴訟法, 第3版, 有斐閣Sseries, 2005.

渥美東洋, 刑事訴訟法, 新版補訂, 有斐閣, 2005.

長沼範良/田中 開/寺崎 嘉博(著),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5.

Achenbach, Hans, u.a.(Hrsg.), Kommentar zur Strafprozeßordnung, 1992.

Bennett, Wayne W./Hess, Kären M., Criminal Investigation, 7. Ed.,  
Wadsworth, 2004.

Brodersen, Kilian, Das Strafverfahrensänderungsgesetz 1999, NJW 2000, S.  
2536ff.

Dempsey, John S., Introduction to Investigation, 2. Ed., Wadsworth, 2003.

Eoghan Casey,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Forensic Science,  
Computer and the Internet, 2. Ed., Academic Press, 2004

Eoghan Casey,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Forensic Science,  
Computer and the Internet, 2. Ed., Academic Press, 2004.

Franzke, Bettina, Kriminologie des Holocaust? Konzentrationslager und  
andere NS-Gedenkstätten als Lernorte, Kriminalistik, 2000, S. 457ff.

Gaffney, Nicholas & Schaefer, David, Your Side of the Story: Representing  
High-Profile Defendants Requires a Serious Strategy, in: Web-Site  
Recorder, Feb. 25. 2004, at. 4.

Häfner, Jürgen, eGovernment in der Justiz-Sachstand und Ausblick, DRiZ  
2005, S. 151ff.

Hassemer, Winfried, Vorverurteilung durch die Medien, NJW 1985, S.  
1921ff.

Hegmanns, Michael, Das Arbeitsgebiet des Staatsanwalts, 3. Aufl., 2003.



- Jung, Sandra, Personenfahndung im Internet–Ein Verstoß geg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http://www.namislo.de/pub02.htm>
- Kotz, Peter, Strafrecht und Medien, NStZ 1982, S. 14ff.
- Kühl, Kristian, Neue Gesetz gegen terroristische Straftaten, NJW 1987, S. 737ff.
- Kühne, Hans-Heine, Strafprozessrecht–Eine systematische Darstellung des deutschen und europäischen Strafverfahrensrechts, 6. Aufl., 2003.
- Land, Janet, The Limits of Reconciliation: The Story of a Perpetrator, Katherine Ann Power, in Social Justice Research, Vol. 14, No. 2, June 2001. pp. 171.
- Mayer, Franz C., Recht und Cyberspace, NJW 1996, S. 1782ff.
- Meyer-Goßner, Lutz, Strafprozessordnung Mit GVG und Nebengesetz, 48. Aufl., 2005.
- Miles, Thomas, J., Estimating the effect of america's most wanted: A duration analysis of wanted fugitiv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XLVIII, April, 2005, pp. 281.
- Pätzel, Claus, Das Internet als Fahndungshilfsmittler der Strafverfolgungsbehörden, NJW 1997, S. 3131ff.
- Pätzel, Claus, Probleme des Datenschutzes bei Staatsanwaltschaft und Gericht in Gegenwart und Zukunft, DRiZ 2001, S. 24ff.
- Peter, Karl, Strafprozeß–Ein Lehrbuch, 4. Aufl., 1985.
- Pfeiffer, Gerd, Strafprozeßordnung–Gerichtsverfassungsgesetz, 3. Aufl., 2001.
- Ranft, Otfried, Fahndung nach Beschuldigten und Zeugen gemäß dem StVÄG 1999, StV, 2002, S. 38ff.
- Rieß, Peter(Hrsg.), Löwe-Rosenberg–Die Strafprozeßordnung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 Großkommentar, 24. Aufl., 1989.
- Seitz, Nicolai, Strafverfolgungsmaßnahmen im Internet, 2004.
- Simitis, Spiros,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 Grundbedingung

einer verfassungskonformen Informatiosordnung, NJW 1984, S. 394ff.

Soiné, Michael, Die Fahndungsvorschriften nach dem Strafverfahrensänderungsgesetz 1999, JR 2002, S. 137ff.

Soiné, Michael, Fahndung via Internet-1. Teil, NStZ 1997, S. 166ff.

Soiné, Michael, Fahndung via Internet-2. Teil, NStZ 1997, S. 321ff.

Störzer, Hans Udo, Vertrauen durch Information, PR-Aktivitäten der niederländischen Polizei und Nutzung des Internet, Kriminalistik, 1996, S. 811ff.

The Department of Justice, FY 2004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p. II-21; FY 2005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pp. II-22.

Volk, Klaus, Grundkurs StPO, 4. Aufl., 2005.

Wente, Jürgen K., Persönlichkeitsschutz und Informationsrecht der Öffentlichkeit im Strafverfahren, StV 1988, S. 216ff.

Yampolsky, Jenny R., Wanted Posters on the Internet: United States v. Carmichael and New Criminal Defense Tools to Level the Playing Field,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summer, 2006, pp. 279.

[관련 주요 Web-Site]

<http://www.keishicho.metro.tokyo.jp>(동경경시청)

<http://www.npa.go.jp>(일본경찰청)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http://www.usdoj.gov>(미국법무부)

<http://www.zdf.de>(독일국영방송국)

<http://www.bka.de>(독일연방범죄수사국)

<http://www.fbi.gov>(미국연방수사국)

<http://www.police.go.kr>(대한민국경찰청)

<http://www.amw.com>(미국Fox사의 수배프로그램홈페이지)

<http://www.guardiacivil.org>(스페인내무부수배관련사이트)

<http://www.mostwanted.org>(미국수배관련상업체)

<http://www.swisspolice.ch>(스위스경찰청)

<http://www.usmarshals.gov>(미연방보안국)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사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기초로 한 국내의 인터넷을 통한 수배의 가능성 및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일본, 미국, 독일, 스위스 등 몇 개국의 인터넷을 통한 수배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일본과 독일의 법제들을 비교하면서, 현행 법상태하에서의 국내의 수사기관의 인터넷 수배의 가능성과 허용성을 분석해보고, 그 세부적인 허용조건을 제시하면서, 종국적으로 인터넷 수배의 근거조항의 마련과, 인터넷 수배의 보다 효율적이고 적법한 운영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구성은 우선 II에서 현재 국내의 사이버경찰청의 인터넷 수배현황을 분석하고, 비교사회·법적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및 스위스 형사소추기관들의 인터넷 공개수배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각국의 인터넷 수배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국내의 현실과 비교하는 작업을 하였다.

III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의 수사기관이 인터넷 수배를 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비교연구하였다. 무엇보다 일본과 독일은 영미법국가와 달리 현행 국내 형사소송법과 유사한 소송·수사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일본은 특히 국내의 법상태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고, 독일의 경우 수배자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법적 근거규정을 고찰하였다.

IV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와 관련하여 법률에 명문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가 여부와는 사실상 무관하게,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를 수사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한 논점들을 추적하면서, 그러한 논의의 결과가 무엇

을 말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개인이 권리(사생활비밀, 명예, 초상권, 정보적 자기결정권), 무죄추정의 원리, 적법절차(영장주의)와의 관계, 피의사실공표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수사밀행성의 원칙, 수배대상의 유형에 따른 기본권침해, 소위 u-Society에서의 공개수배, 국제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등과 관련한 논점들을 기존의 국내외의 논의를 기초로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V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사·수배의 현행법하에서의 허용가능성과 공개수배의 전제조건에 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제안과 함께, 인터넷 공개수사에 있어서 고려될 다양한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Zusammenfassung]

## Die öffentliche Fahndung durch Internet

Diese Untersuchung befaßt sich mit der Problematik der öffentliche Fahndung via Internet in koreanischen Strafverfolgungsbehörden. Vor allem geht diese Arbeit davon aus, dass die öffentliche Fahndung durch Internet in Korea nicht nur möglich, sondern auch aktiv gesetzt werden soll, sogar unter der jetzigen Gesetzeslagen. Im Ergebnis hat diese auf die Rechtsvergleichung gegründete Untersuchung vorgeschlagen, dass die Internetfahndung unter strengen Voraussetzung im Hinblick auf den Grundrechtseingriff landesweit effektiv und aktiv vollgezogen werden soll. Vor allem wird die folgende Situation berücksichtigt.

Strafverfolgungsorgane im In- und Ausland nutzen zwischenzeitlich, seit ungefähr 10 Jahren, die neuen Möglichkeit der Datenverbreitung durch Internet, um insbesondere unter Zuhilfenahme des World-Wide-Web effektiv und innerhalb kürzester Zeit nach bekannten und unbekanntem Straftatverdächtigen oder gar nach dem Verbleib wichtiger Zeugen zu fahnen.

Allerdings sind weder in der koreanischen StPO noch in anderen Gesetzen oder Rechtsverordnung die Voraussetzungen der Personenfahndung durch Internet bislang geregelt worden. In staatsanwaltschaftlichen und polizeilichen Richtlinien sind wenige Regeln über die Ausschreibung zur Festnahme oder zur Aufenthaltsermittlung von Beschuldigten als

Fahndungshilfsmittel innerhalb der Strafverfolgungsorganen geregelt worden.

Es stellt sich immer wieder die Frage, ob diese Fahndungsmethode überhaupt erlaubt ist, weil es an den gesetzlichen Regelungen fehlt. Diesbezügliche verfassungsrechtliche und strafprozessrechtlich Fragestellung wartet vergeblich die vernünftigen Antworten. Inzwischen beginnt die koreanische Polizeibehörde das World-Wide-Web als Fahndungsmethode zu nutzen, sogar sehr zurückhaltend.

Im Vergleich zur heutigen Lage in Korea nutzen die japanischen, deutschen und amerikanischen Strafverfolgungsbehörden, nicht nur im Bund, sondern auch in Ländern, das Internet als Personen- und Sachfahndungsmethode sehr aktiv und umfangreich. Wenige Staaten haben die gesetzliche Grundlage für die Fahndung, und sogar die öffentliche Fahndung durch Internet. Die übrigen Staaten haben keinen gesetzlichen Regelungen im Bezug auf die Fahndung überhaupt. Dennoch wird die Fahndung durch Internet als ein wesenswichtiges Mittel für die Fahndung zur Festnahme, Aufenthaltsermittlung, Zeugen, Vermisste, Sachen usw., usf..

Diese Arbeit behandelt im 2 Kapitel ausführlich die Lage der Internetfahndung vor allem in Korea, Japan, U.S.A, und BDR. Im 3. Kapitel hat sie die Gesetzeslage in oben genannten Nationen, also insbesondere in Korea, Japan und BDR. Im 4 Kapitel versucht diese Untersuchung die Argumente gegen Internetfahndung und für die öffentliche Fahndung zu analysieren, zu kritisieren und die wesentlichen Maßstäben für die Internetfahndung unter Rechtsstaatsprinzip herauszufinden.

Im 5. Kapitel hat sie vorgeschlagen,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die öffentliche Fahndung vor allem durch Internet, *de lege ferenda* und *de lege lata*, zur Straftatsermittlung angesetzt werden kann.